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들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해환경 규제나 청소년비행·아동학대 예방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담당할 시설이나 단체 등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여건을 보면, 질적인 측면의 평가는 미루더라도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취약한 이유는 그 동안 분화와 통합의 역사를 거쳐 온 청소년정책의 변천사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청소년정책은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인프라 또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1998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존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된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이원화되면서, 각 정책 영역 간 협력의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후발 주자인 청소년보호정책은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고, 게다가 기존의 청소년정책과 분화됨으로써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의 연계 협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이분화 되어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은 지난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가족·청소년기능 조정계획에 따라 이들을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이 통합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

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환경 변화는 청소년분야의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설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일부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정책의 실천적 장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가 사회 환경과 정책 방향의 변화에 부응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관한 법률과 현황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든가 청소년시설·단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주제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제어를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시설·단체’로 세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 후에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보호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는 거의 없지만, 대체로 청소년보호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의 개념은 청소년보호에 관한 대표적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가 무엇인지 청소년을 무엇으로

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인 의미는 명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의 개념은 그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정책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보호의 의미를 축소해 정의하게 된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질적 의미를 축소한 청소년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 시설·단체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시설은 일정한 규모의 수련활동터전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정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며 주로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를 통하여 운영된다. 청소년단체는 일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가입회원의 회비 중심으로 운영된다(박성희, 1995 : 2-4). 이러한 청소년시설·단체의 개념은 청소년정책이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기에 정의된 것으로서 최근 들어 변화된 정책 기조와는 다소 괴리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한편 2004년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시설·단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3조 6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법 제3조 8호).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보호의 법적 개념과 청소년시설·단체의 개념을 종합하여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 시설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기위해 제공되는 시설 중심의 조직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단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기위해 구성된 회원과 사업 중심의 조직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로는 현재 청소년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단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개념은 좀 더 본질적 의미에 가깝게 광의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는 이러한 청소년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단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보호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청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호단체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한다기보다는 청소년업무 전반을 담당하거나 일반 시민단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중 일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제어인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보호 시설, 청소년보호단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유형

과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전체적인 실태와 기관 유형·성격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유형에 따라 분석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현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으로부터 바람직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청소년보호 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청소년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관련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조사연구로서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먼저 사례조사로서 국내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과 직접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은 의견조사로서 바람직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종류를 제한한 점이다. 청소년보호시설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정된 시설과 단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조사대상 시설·단체와 조사대상자의 수가 소수로 제한된 점이다. 면접조사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많은 시설·단체와 전문가,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는 양적 조사연구에서 밝히기 어려운 시설·단체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질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제반 현황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2.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현황
3.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

II.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제반 현황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1) 개관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은 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률의 분석을 위해 먼저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해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법 중에는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5호에서는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6호에서는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보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법 3조 2호) 청소년보호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중에서 어떤 곳이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

호의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이때의 청소년보호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나 청소년 접촉·접근 제한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단체 뿐 아니라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법적 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청소년보호시설 관련 법률과 청소년보호단체 관련 법률을 나누어 기술한다. 먼저 청소년보호시설 관련 법률로는 청소년시설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보고, 대표적인 청소년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보호시설, 그룹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전용 보호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에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단체 관련 법률 역시 청소년단체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본 후에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17조부터 19조, 55조, 58조, 59조에 걸쳐 청소년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17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이라 칭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을 이와 같이 활동, 보호, 복지

로 구분한 것은 청소년에 관한 법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을 하위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이 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보호시설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러한 기준에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설의 핵심적인 역할은 가출청소년이 숙식해결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비행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시설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성매매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중에도 청소년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법 18-19조).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법 55조 ① 2호), 청소년시설은 조세감면과 소득계산의 특례,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법 5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감독할 수 있다(법 59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청소년쉼터의 설치와 예산지원, 활동내용, 시설·인력 기준, 보험가입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교육적 선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경우 법과 영, 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적 선도시설에 관해서는 법(제16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하위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쉼터에 관한 규정만 분석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법 14조 ①),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14조 ③).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쉼터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를 완화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영 13조 ①).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숙식 시설(침실·식당 및 욕실 포함), 단체 활동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이다(규칙 13조 ①). 청소년쉼터에 배치되어야 할 전문 인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법 14조 ②).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13조 ②)의 규정을 준용하여(영 14조), 다음 각각의 경우에서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등급 1급(1천5백만원)~14급(6십만원)에 따라 정해진 금액,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장해등급 1급(8천만원)~14급(5백만원)에 따라 정해진 금액,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과 장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 후유장해로 인해 장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 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의 설치와 예산보조, 시설종류, 보호기간, 활동내용, 입소자와 시설장의 의무,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청소년지원시설을 포함한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3조 ① 2호). 이와 같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장치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청소년쉼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법 6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신고절차와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법 6조 ②-③, 규칙 3조-4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15조, 영 3조)

이러한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에는 다음 네 종류가 있다(법 5조 ①). 이 중에서 청소년지원시설이 청소년보호시설에 해당한다.

①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②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④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청소년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지만 시설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법 5조 ③, 규칙 2조 ②).

청소년 지원시설의 업무는 일반지원시설과 공통적으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등이고,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특히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가 추가된다(법 7조).

법에서는 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법 8조 ①-④,

규칙 5조-7조).

법에서는 또한 지원시설의 운영에 따른 시설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 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법 9조 ①-④). 시행규칙에는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규칙 8조).

이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조부터 12조에 걸쳐 성매매피해상당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소의 업무 중에는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와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법11조 2호). 또한 13조부터 21조에 걸쳐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의료비 지원, 비용보조, 지도·감독, 지원시설의 폐지·휴지 등의 신고,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비밀엄수 의무, 시설의 폐쇄, 권한위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으로써 시행규칙 9조부터 13조에서는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의료비의 지원범위, 운영실적 등의 보고, (지원시설 또는 상당소의 폐지 등 신고,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2조부터 24조에서는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비밀엄수 의무·폐쇄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22조)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규칙 14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상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는 소위 ‘그룹홈’이라 불리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시설에 관한 규정은 공동생활가정 뿐 아니라 모든 시설에 공통되는데, 시설종류, 활동내용, 인력기준, 아동학대예방 기관, 비용보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법 1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16조 ①).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⑩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⑪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법 16조 ③).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⑥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법 19조), 자격조건과 배

치기준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법 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법 25조). 한편 학대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3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1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법 25조 ①), 보호시설의 업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공통으로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이 있고, 보호시설 고유의 업무로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

귀를 돕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다(법 26조). 이 밖에도 27조부터 34조에 걸쳐 시설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35조부터 37조에 걸쳐 벌칙과 과태료, 양벌규정이 있다.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상담소와 함께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법 7조 ①), 보호시설의 업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공통으로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고, 보호시설 고유의 업무로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다(법 8조). 이 밖에도 9조부터 19조에 걸쳐 시설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20조부터 22조에 걸쳐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7)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 법에 의한

모부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 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시설은 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시설의 특성상 이 연구의 보호시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법 20조 ①),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 19조).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⑦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⑧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20조부터 24조의 2에 걸쳐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9조와 30조에 벌칙과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한 법률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8조부터 30조, 40조, 41조, 55조, 58조, 59조, 61조, 64조부터 66조에 걸쳐 청소년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은 학교교육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이다(법 28조 ①). 이에 따르면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단체는 청소년보호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8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29조). 지원과 보조의 범위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영 27조). 또한 청소년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법 30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청소년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관련 장비·기자재·물품의 제작 및 판매,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영 28조 ①).

이 외에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40-41조).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법 55조 ① 4호), 청소년시설은 조세감면과 소득계산의 특례,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법 5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감독할 수 있다(법 59조).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보호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성격상 청소년보호단체에 해당하는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센터에 관한 규정으로는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고, 이곳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법 33조의 2 ①-③). 이들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33조의 2 ④) 현재까지는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에 의해 부과되어 납부된 과징금의 용도 중 하나로써 과징금을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영 41조의 3).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청소

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43조 ①, 영 32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규칙 10조 ①). 이러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법 43조 ②). 또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다(법 43조 ③, 규칙 10조 ②).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 할 수 있다(법 37조)고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아무런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청소년보호시설·단체 현황

1)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1)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보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출 초기에 가출이 비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청소년문제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사업내용은 각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숙식제공, 상담, 아웃리치프로그램(outreach program), 교육, 의료서비스, 문제예방, 홍보, 사후지도, 연계협력 등이다. 시설 내 보호기간은 1~2주간의 일시보호, 1~2개월간의 단기보호, 6개월 내의 중기보호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1개월 정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기보호를 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나면 그룹홈과 같은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하룻밤 이상 집 이외의 장소에 머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연간 경찰청에 신고되는 가출청소년의 수가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후 숙식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어른들의 착취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써 ‘청소년쉼터’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1992년에 서울YMCA 청소년쉼터를 개소한 것이 시작이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쉼터 16개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인적·물적 투입요인에 관해서는 법적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다. 시설의 설치기준은 숙식시설(침실·식당 및 욕실 포함), 선도·교육을 위한 단체활동실(1개 이상), 상담실 또는 사무실(1개 이상)을 갖추는 것이다.

청소년쉼터의 인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와 실무조직,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실무조직의 인원은 개별 쉼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4~5명으로 구성되는데, 책임자 1명과 상담원 2~3명, 잡무담당 1명 정도이다.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의 재원은 국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방비이며, 민간쉼터의 경우는 사적인 재원이나 후원금 등 차이가 있다.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추세인데 18개 쉼터에 지원되고 있는 총예산이 2001년도에 2억4천만원에서 2004년에는 7억7천5백만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9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도에 각 쉼터에 지원한 예산은 연간 운영비 3천5백만원과 의료비 2천만원이다.

청소년쉼터는 현재 전국에 4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¹⁾. 이 중 청소년위원회(국비)의 지원만 받고 있는 곳이 1개소(서울YMCA쉼터)이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곳이 32개소, 지방비만 지원받고 있는 곳이 7개소, 자부담 또는 예산구조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8개소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쉼터는 총 18개소인데, 이 경우는 특별히 행정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쉼터의 지역분포는 서울시에 7개소와 인천에 4개소, 경기도에 11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의 시도에는 1개~3개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만 1개의 쉼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표 II -1> 청소년쉼터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전체		47	100.0
성별	남성	12	25.5
	여성	20	42.6
	혼성	15	31.9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이 12개소 여성이

1) 이하에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통계는 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전화를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청소년쉼터의 시설별 특성은 부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개소, 혼성이 15개소이다. 보호연령의 하한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2개소, 중학교 1학년인 경우가 3개소, 9세인 경우가 28개소, 13세인 경우가 5개소 등이고, 상한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가 4개소, 19세인 경우가 16개소, 24세인 경우가 22개소 등이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원수는 평균 13.4명이고, 직원 수는 4.8명이다.

<표 II -2> 청소년쉼터 보호청소년 · 직원수(평균)

구분	인원수(명)
청소년	13.4
직원	4.8

<표 II -3> 청소년쉼터 보호연령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하 한 연 령	하한 없음	2	4.3
	중학교 1학년	3	6.4
	6세	1	2.1
	9세	28	59.6
	10세	4	8.5
	12세	3	6.4
	13세	5	10.6
	14세	1	2.1
상 한 연 령	고등학교 3학년	4	8.5
	18세	1	2.1
	19세	16	34.1
	20세	4	8.5
	24세	22	46.8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의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청소년쉼터는 다

음과 같은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청소년쉼터의 상담원이 지역사회 내의 학교에 방문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캠프프로그램도 실시한다.

② 지역사회 심야거리상담 : 쉼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와 함께 청소년쉼터에 관한 홍보활동과 청소년선도에 관한 캠페인활동을 전개한다.

③ 경찰과의 연계협력 : 경찰이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면 지역사회 내의 쉼터로 연계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이 비행으로 인해 경찰에 소환될 경우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쉼터가 개입해 돕고 있다.

④ 유관단체 연계망 구축 :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청소년쉼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형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⑤ 유관기관 의뢰체제 구축 : 가출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원, 검정고시학원, 그룹홈과 같은 중장기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자립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길거리 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병·의원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조기 개입함으로써 청소년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역사회 심야거리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귀가를 돕고 청소년쉼터를 홍보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조기에 예방하고 있다. 유관단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쉼터의 인적 자원 개발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관기관 의뢰체제 구축을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사후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2) 드롭인센터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긴급보호시설인 ‘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했는데, 앞으로 모든 광역시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을 신설한 이유는 전철역 부근에 잠깐 들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출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이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기관에 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함으로써 청소년과 기관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드롭인센터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나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부담 없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드롭인센터는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있다²⁾.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드롭인센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긴급보호소로서 설립초기에는 드롭인센터의 기능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1~2일 정도 생활하는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대신할 서울특별시 드롭인센터를 서울시에서 설립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에 개소할 예정이다.

드롭인센터의 보호성별은 긴급보호소의 경우 여성청소년만을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드롭인센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표 II -4> 드롭인센터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전체		5	100.0
성별	여성	1	20.0
	혼성	4	80.0

2) 이하에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 드롭인센터 통계는 연구진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드롭인센터의 시설별 특성은 부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직원 수는 2명에서 4명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평균은 3명이다.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하한연령의 경우 초등학교 또는 9세인 곳이 2개소, 중학생 또는 13~14세인 곳이 3개소이다. 상한연령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19~20세인 곳이 4개소, 24세인 곳도 1개소가 있다. 드롭인센터의 개소시간은 대체로 24시간인데,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여건상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이 1개소 있고, 1~2일 정도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곳도 2개소가 있다.

〈표 II -5〉 드롭인센터 보호연령 · 직원수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보호연령	하한	9세(초등학교)	2	40.0
		13-14세(중학생)	3	60.0
	상한	19-20세(고등학교)	4	80.0
		24세	1	20.0
직원수(평균)	3명			

(3)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부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인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에는 일반지원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중 청소년지원시설만이 청소년 전용시설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이 6개월 이내인 것과 비교하여 기간이 길고 취학·교육 지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여성부에 집계된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은 36개소인데, 그 중 청소년지원시설은 17개소이다³⁾. 서울이 5개소(29.4%)로 가장 많고, 부산 2개소,

3) 이하에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통계는 여성부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협의회에서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

대구 2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강원 2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 등이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협의회에서 제공한 자료(2005년 시설현황)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재구성한 바에 의하면 17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평균 15.6명이고 이들을 돌보는 직원의 수는 평균 5.6명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 보호연령은 하한연령의 경우 제한이 없는 곳과 13세인 곳이 각 5개소(29.4%)로 가장 많고, 중학교 1학년으로 학령구분을 하고 있는 곳이 3개소, 12세가 1개소, 14세가 1개소, 15세가 2개소이다. 상한연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19세인 경우가 10개소(58.8%)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령구분을 하고 있는 곳이 3개소, 18세가 1개소, 20세가 3개소이다.

2004년도에 여성부에서 시설운영비 예산을 지원한 시설은 총 30개소였다. 2004년도에 이들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총 1천6백7십4명이었는데, 그중 20세미만자가 9백1십7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입소자 중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62.7%이고, 나머지는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이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의 성매매 유형은 산업형이 47.7%, 자영형이 26.6%, 출장형이 11.8%, 전통형이 11.4%, 기타 2.5%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형 성매매란 인터넷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출장형 성매매란 업소 또는 업주에 고용된 상태에서 여관과 같은 특정장소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의 구분이 없던 2004년도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보호대상자는 대부분(64.7%) 3개월 이내에 퇴소하였고 4개월에서 6개월은 22.9%였다. 2003년도에 비해 입소기간이 길어졌다. 퇴소사유는 귀가가 42.3%로 가장 많고, 보호기간 만료가 18.9%, 무단이탈 14%, 관련기관 연계가 9.9% 등이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와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

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전화를 통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청소년지원시설의 시설별 특성은 부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였다.

2005년부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설로 성매매여성지원시설의 운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왔다. 가장 큰 변화는 성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의 구분이다. 2004년도에는 입소기간이 대부분 단기였던 것에 반해 법 신설 이후인 2005년도에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대부분 장기시설로 전환되었다. 왜냐하면 법률에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19세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여성지원시설의 업무는 숙식의 제공과 함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등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은 이상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 -6>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개)	구성비(%)
전 체	17	100.0

<표 II -7>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보호청소년 · 직원수

구 분	인원수(명)
청소년	15.6
직 원	5.6

<표 II -8>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보호연령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하 한 연 령	하한없음	5	29.4
	중학교 1학년	3	17.6
	12세	1	5.9
	13세	5	29.4
	14세	1	5.9
	15세	2	11.8
상 한 연 령	고등학교 3학년	3	17.6
	18세	1	5.9
	19세	10	58.8
	20세	3	17.6

(4) 그룹홈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상의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성에서 처음 그룹홈 도입이 논의된 이후 1996년 12월에 도입을 결정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이하 보건복지부, 2005 : 60-64).

그룹홈의 유형은 단기·장기·치료 보호 그룹홈으로 나뉜다. 단기보호 그룹홈은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을 1년 단위(연장 가능)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장기보호 그룹홈은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18세 미만까지(연장 가능) 보호하는 시설이다. 치료보호 그룹홈은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을 1년 단위(연장 가능)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룹홈의 보호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으로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

이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보호아동의 인원은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명 이내여야 한다.

주거형태는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간판은 붙이지 않으며, 그룹홈이 한곳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사자는 시설장 1인과 보육사 1인을 배치해야 한다(2006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에 32세대의 그룹홈에 2억1천5백4십8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대상을 60세대로 늘리고 예산도 4억2천4백2십5만4천원으로 증액했다. 이 중에서 보호자 인건비가 연간 1인당 1천5백3십7만3천원이고, 관리운영비가 월단위 세대당 1십9만2천원이다.

그룹홈은 현재 전국에 200개가 있다⁴⁾. 서울이 52개소(26.4%), 경기도가 49개소(24.4%)로 절반 정도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청소년 전용 그룹홈이 51개소, 여성 전용이 59개소, 혼성이 80개소이다.

<표 II -9> 그룹홈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전체		200	100.0
성별	남성	51	26.8
	여성	59	31.1
	혼성	80	42.1

※성별의 경우 무응답 시설 10건 제외

그룹홈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의 인원수는 평균 9.6명이고 직원수는 2.4명이다. 이들 시설의 보호연령은 하한연령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인 곳이 66개

4) 이하에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 그룹홈시설 통계는 그룹홈협의회에서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전화를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그룹홈의 시설별 특성은 부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33.8%)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인 곳이 61개소(31.3%), 중학생인 곳이 31개소(15.9%), 고등학생인 곳이 7개소(3.6%)이다. 하한연령이 없는 곳은 28개소이고, 19~20세인 곳은 2개소이다. 하한연령이 19~20세인 곳은 일반 그룹홈을 퇴소하고 자활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곳이다. 상한연령은 19세~26세 또는 자립하거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인 곳이 89개소(45.5%)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인 곳이 63개소(32.3%), 중학생인 곳이 22개소(11.3%), 초등학생인 곳이 10개소(5.1%) 등이다. 상한연령이 없는 곳은 10개소이다.

<표 II -10> 그룹홈 보호청소년 · 직원수(평균)

구분	인원수(명)
청소년	9.6
직원	2.4

※무응답 시설(보호청소년 1건 및 직원 3건) 제외

<표 II -11> 그룹홈 보호연령

구분		시설수(개)	구성비(%)
하 한 연 령	하한연령 없음	28	14.4
	1세~6세(취학전)	66	33.8
	7세~12세(초등학생)	61	31.3
	13세~15세(중학생)	31	15.9
	16세~18세(고등학생)	7	3.6
	19세~20세	2	1.0
상 한 연 령	상한연령 없음	10	5.1
	1세~6세(취학전)	1	0.5
	7세~12세(초등학생)	10	5.1
	13세~15세(중학생)	22	11.3
	16세~18세(고등학생)	63	32.3
	19세~26세(자립/대졸)	89	45.5

※무응답 시설 5건 제외

(5) 기타 관련시설

이 밖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⁵⁾.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사회복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의 시설이 여성가족부에 신고가 되어 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가정복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44개의 시설이 여성가족부에 신고가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도에 이들 시설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미혼모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 또한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을 돕는 그룹홈 형식의 미혼모 중간의 집도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시설 11개소와 미혼모 중간의 집 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단체 현황⁶⁾

(1) 개관

흔히 청소년단체라 하면 협의적으로 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광역적으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모든 조직이나 집단을 포함한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소속

5) www.mogef.go.kr

6) 이 부분은 김진화(동의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타 청소년단체도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의미 있는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역할 중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보호 혹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의 기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여 왔다. 청소년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자신의 개인적 본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긴장이 시작되고, 급작스러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기성세대의 자성의 목소리가 일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운동이 공감을 얻고 있다. 청소년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만을 축적하려는 기성세대의 그릇된 가치관과 도덕성의 결핍으로 인한 잘못된 반사회적인 일탈행동과 문화양식이 청소년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보호라는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글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 중에서 청소년보호

혹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 앞으로 청소년단체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할 과제 중에 하나임을 전제하고,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당위성과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단체 현황과 보호업무의 비중

한국에서 청소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에 소속된 청소년단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청소년단체는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청소년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965년 15개 청소년단체가 협의기구인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발족시켜 범사회적인 청소년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가의 청소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단체협의회 발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과 1988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단법인화, 1990년 ‘청소년헌장’의 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1992년 ‘청소년의 해’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 1998년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 2005년 통합 정책부서인 청소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2004년 현재 이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59개 회원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 237여개의 청소년단체

가 활동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4⁷⁾).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활동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청소년백서(2004)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소년단체가 전개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연수활동, 연구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등 여가활동, 장학 및 포상,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 활동을 비롯하여 부모, 지역사회인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수련시설중심의 단체도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약한 단체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활발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지원 속에 각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협의회 기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수업)제의 도입·시행과 더불어 체험학습 중심의 새로운 요구 등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는 오히려 증대하고 추세이다.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기본법(2004)에 명시된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시키고, 둘째는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청소년단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의 목적 중에 하나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활동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소년단체의 활동 영역에서 청소년보호 업무의 비

7) 주)부록표 참고

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1998년 이후 2005년 초까지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육성이 행정적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의 소속단체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현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법적인 존립근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감시고발 단체를 말한다(김진화·김진호·조정하, 2004).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4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제5조 3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3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한다(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2항).

이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과 관련된 법률에는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보건증진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유형은 학교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으로 구분된다.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구분되며,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주로 전국이나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중앙형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정부기관과 연계된 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서비스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편, 2004: 9).

첫째, 검찰 및 경찰 등 정부기관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경우이다. 한국청소년육성회는 민법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하

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찰청의 허가를 받는다.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지역 모든 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개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들도 있다.

둘째, 종교단체를 들 수 있다. 전국에 조직을 두고 있는 YMCA와 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청소년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의 단체를 들 수 있으며, 매체감시 및 교육과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단체들이 있다. 한국스카우트, 한국걸스카우트, BBS, 한국청소년마을,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청소년화랑육성회,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예단,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

넷째, 주로 사회복지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서비스단체와 해병전우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년회의소 등과 같은 지역단체들이 있다.

다섯째, 시민운동단체들로 흥사단, 내일여성센터, 경실련과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수와 감시단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를 포함하여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283개로 조사·분석되었다(김진화, 2003).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5개 26.5%, 경기도가 41개 15.5%로 수도권에 42.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도시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시·군 단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수

지역별	감시단수	백분율	지역별	감시단수	백분율
서울특별시	75	26.5	강원도	12	4.2
부산광역시	19	6.7	충청북도	10	3.5
대구광역시	10	3.5	충청남도	16	5.7
인천광역시	10	3.5	전라북도	12	4.2
광주광역시	10	3.5	전라남도	15	5.3
대전광역시	8	2.8	경상북도	13	4.6
울산광역시	9	3.2	경상남도	16	5.7
경기도	41	14.5	제주도	7	2.5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둘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02년 현재 1만6천2백9십7명이며, 이들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감시단원수가 5천5백5십2명으로 34.0%, 경기도가 2천1백1십4명으로 12.9%로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타 지역은 10%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수

지역별	인원	백분율	지역별	인원	백분율
서울특별시	5,552	34.0	강원도	701	4.3
부산광역시	1,026	6.2	충청북도	613	3.7
대구광역시	653	4.0	충청남도	775	4.7
인천광역시	462	2.8	전라북도	411	2.5
광주광역시	604	3.7	전라남도	400	2.4
대전광역시	986	6.0	경상북도	546	3.3
울산광역시	617	3.7	경상남도	469	2.8
경기도	2,114	12.9	제주도	368	2.2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이상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998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면서 초기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58개, 학교 감시단 642개로 시작되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동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변화를 분석해 볼 때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2003년 이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전체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단체 숫자의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숫자의 커다란 감소는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며, 청소년 YP시범학교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2003)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444개의 청소년보호 YP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셋째,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숫자는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단체의 운동 아젠다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운동적 가치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고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법적 근거에 의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이며,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영역과 실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영역을 관련 문헌과 사례를 통해 범주화시켜 분석하는 것이 요청된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영역은 청소년보호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보호운동의 추진 주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①청소년보호 기본계획 수립, ②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규제, ③청소

년 유해약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④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 ⑤ 폭력·학대 등 각종 청소년유해행위로부터의 청소년보호, ⑥ 청소년 성매매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성 탈선 방지, ⑦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⑧ 청소년유익환경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⑨ 청소년보호·조사 연구, ⑩청소년보호 대국민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시민운동 지원 등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영역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의 주요 임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는 ①합동단속반(검찰,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등) 운영 및 민간단체와 합동단속 실시, ②지역사회 협조방안 협의 및 홍보, ③단속정보의 기관 간 공유체제 구축, ④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착 공무원 적발 및 처벌, ⑤청소년보호운동 홍보 및 단속결과 언론보도, ⑥학부모 교육 등 지역사회 협조방안 강구, ⑦탈선예방 및 청소년상담교육실시 등이다.

셋째, 실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몇몇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 보고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영역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①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센터 설치·운영, ②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현장순찰활동, ③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반 구성·활동, ④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교육, ⑤조사활동, 캠페인 등을 계획·운영, ⑥각종 단체, 학교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⑦개정 청소년보호법 홍보사업 추진 등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자)에 대한 감시·고발 및 단속 참여, ②청소년보호 선도 및 건전지도, ③청소년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대국민 계도, ④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시정·건의·고발활동, ⑤청소년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각종 보호활동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영역은 ①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②청소년유해환경 적발 및 고발활동, ③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 및 계몽활동, ④청소년유해구역 및 업소 현장순찰활동, ⑤청소년보호위반 상설 고발창구 운영, ⑥청소년유해환경 시정·조치활동, ⑦청소년유해환경 실태 파악 및 조사활동, ⑧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보호 홍보활동 등이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고발 활동 횟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한 해 동안 총 6,795회로 나타났다. 특별히 서울특별시가 44.2%로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감시고발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1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횟수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3,007	44.2	38	강원도	395	5.8	32
부산광역시	318	4.6	16	충청북도	70	1.0	7
대구광역시	218	3.2	22	충청남도	656	9.6	41
인천광역시	145	2.1	14	전라북도	126	1.8	10
광주광역시	122	1.7	20	전라남도	96	1.4	6
대전광역시	301	4.4	37	경상북도	103	1.5	7
울산광역시	270	3.9	30	경상남도	183	2.6	12
경기도	728	10.7	44	제주도	57	0.8	8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둘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신고적발시정 조치 건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한 해 동안 총 12,981건이었다. 서울특별시가 과반수 이상인 5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별 신고적발시정조치의 단체별 평균 건수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141건과 117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 -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신고고발건수

지역별	건수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건수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6,993	53.8	92	강원도	121	0.9	10
부산광역시	365	2.8	19	충청북도	53	0.4	5
대구광역시	913	7.0	91	충청남도	435	3.3	27
인천광역시	1,169	9.0	117	전라북도	84	0.6	7
광주광역시	844	6.5	141	전라남도	8	0.06	0.5
대전광역시	181	1.3	23	경상북도	60	0.4	5
울산광역시	178	1.3	20	경상남도	141	1.0	9
경기도	1,383	10.6	34	제주도	53	0.4	8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셋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활동 횟수는 2002년 한 해 동안 총 2,571회이었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가 1,121회로 43.6%를 차지했고, 개별 단체별 평균 홍보 횟수는 대구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높았다.

〈표 II -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횟수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1,121	43.6	15	강원도	121	4.7	10
부산광역시	124	4.8	7	충청북도	82	3.1	8
대구광역시	178	6.9	18	충청남도	169	6.5	11
인천광역시	39	1.5	4	전라북도	70	2.7	6
광주광역시	38	1.4	6	전라남도	62	2.4	4
대전광역시	101	3.9	13	경상북도	60	2.3	5
울산광역시	95	3.7	11	경상남도	66	2.5	4
경기도	201	7.8	5	제주도	44	1.7	6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넷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활동 참여 인원수는 2002년 한 해 동안 2십2만2천3백8십9명이었다. 서울특별시가 5만3천7백5십2명(24.4%)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개별 단체별 평균 참여 인원은 울산광역시, 강

원도, 대구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인원

지역별	인원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인원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53,452	24.4	707	강원도	33,903	15.4	2,825
부산광역시	10,923	5.0	575	충청북도	5,517	2.5	552
대구광역시	21,926	9.9	2,193	충청남도	8,605	3.9	538
인천광역시	2,302	1.0	230	전라북도	8,598	3.9	717
광주광역시	3,961	1.8	660	전라남도	3,119	0.9	128
대전광역시	6,965	3.2	871	경상북도	1,003	0.5	77
울산광역시	44,175	20.0	4,908	경상남도	2,412	1.1	161
경기도	8,158	3.7	199	제주도	6,370	2.9	910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활동 횟수는 1,886회로 확인되었으며, 총량적으로 서울특별시가 519회(27.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가 264회(14.0%)로 확인되었다. 개별단체별 평균 교육활동 횟수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이었다.

<표 II -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횟수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519	27.5	7	강원도	109	5.7	9
부산광역시	113	6.0	6	충청북도	32	1.7	3
대구광역시	264	14.0	26	충청남도	53	2.8	3
인천광역시	70	3.7	7	전라북도	43	2.2	4
광주광역시	57	3.0	10	전라남도	36	1.9	2
대전광역시	122	6.4	15	경상북도	39	2.0	3
울산광역시	76	4.0	8	경상남도	122	6.4	8
경기도	191	10.1	5	제주도	30	1.5	4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여섯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참여 인원수는 2백8십3만3백6십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구광역시가 6만4천명(22.5%)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산광역시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 -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인원

지역별	인원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인원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21,070	7.4	561	강원도	6,536	2.3	545
부산광역시	30,438	10.7	1,602	충청북도	2,093	0.7	209
대구광역시	64,000	22.5	6,400	충청남도	2,013	0.7	126
인천광역시	9,380	3.3	938	전라북도	1,042	0.3	87
광주광역시	4,567	1.6	761	전라남도	1,822	0.6	81
대전광역시	16,009	5.6	2,001	경상북도	703	0.2	54
울산광역시	2,952	1.0	328	경상남도	5,386	1.9	359
경기도	113,666	40.4	2,772	제주도	1,690	0.5	241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일곱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모니터활동 횟수는 전국적으로 총 3,652회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시특별시가 1,348회 35.9%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모니터의 평균 횟수는 울산광역시가 41회로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 -2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모니터횟수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지역별	횟수	백분율	평균값
서울특별시	1,348	35.9	17	강원도	140	4.0	12
부산광역시	164	4.6	9	충청북도	22	0.6	2
대구광역시	269	7.5	27	충청남도	147	4.1	9
인천광역시	129	3.6	13	전라북도	45	1.3	4
광주광역시	83	2.3	14	전라남도	10	0.3	0.7
대전광역시	221	6.2	28	경상북도	20	0.6	2
울산광역시	373	10.4	41	경상남도	62	1.7	4
경기도	586	16.3	14	제주도	33	0.9	5

자료출처 : 김진화 외(2003)

(5) 소결

그동안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실제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활동도 미약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 전제하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보호업무, 특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단순히 감·신고발의 활동 차원을 넘어 청소년보호운동, 청소년 권리 찾기 운동, 지역사회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의 전문성과 특성화를 지향하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의 영역을 성격별로 2대 영역(감시신고발 및 홍보활동, 교육 및 매체모니터링 활동) 혹은 4대 영역(감시단속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교육활동, 모니터활동)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 개별 단체들이 활동성격별로 특성화되고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활동성격별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지원방안을 통해 특성화와 전문화를 전략적으로 유도시켜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보호활동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각 단체의 지역별 지부를 확대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만으로는 청소년보호사업이 범국민운동으로서의 확산이 불가피하므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시·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 및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 1~2개의 감시단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보호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넘어서 권리의 주체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소년운동 차원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에 청소년의 참여가 강조되는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보호운동이 지역사회를 되살리고 재구조화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⁸⁾

1) 미국

(1) 개관

미국의 경우는 각 주와 시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시설과 단체에 관해서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와 달리 보호 시설과 단체가 청소년 시설·단체의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2) 카사청소년쉼터⁹⁾

가. 개요

8) 외국사례의 선정기준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워낙 많은 시설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일본의 경우는 정부주도의 시설과 단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9) <http://www.casayouthshelter.org/about.html>

카사청소년쉼터(Casa Youth Shelter)의 목표는 위기상태의 가출청소년에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힘을 찾아 재활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 또한 이 쉼터의 보호와 지원 목적이기도 하다.

카사는 롱비치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청소년쉼터 중 하나이다. 12개의 침상을 갖추고 연간 약 200여명의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2~17세의 가출청소년이나 노숙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들에게 2주 동안 임시 거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각종 학대로부터 시달리고 있는데, 신체적인 학대(50%), 성적인 학대 (17%), 방치나 외면(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곳의 근본적인 목표는 가족과의 결합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그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이 이곳을 떠나 2~3개월간은 가족 카운슬링이 제공된다.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인 Youth Development Program(YDP)을 운영하고 있다.

나. 기본 프로그램

가) 위기쉼터 보호

12~17세의 가출청소년이나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청소년과 가정 내 학대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수용한다. 이들은 타 사회기관에 의해서 인계되기도 하고, 법적인 조치에 의해 맡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의 목적은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이성을 찾을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길거리의 위험상태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데 있다. 이곳의 서비스는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 가정과 화해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개인상담

카사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카사의 카운슬러(자원봉사자 포함)가 개개인을 위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심리학, 카운슬링, 사회학이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한 석사과정에 참여중인 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운슬러와 거주하는 청소년 간에 일대일 관계의 카운슬링은 매주 2~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다) 가족상담

카사에 거주중인 이들의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른 가족이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개방된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슬러에 의해 운영된다. 가족 상담치료는 가족구성원이 보다 긴밀한 구조로 접촉하게 해준다. 청소년이 쉼터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쉼터의 청소년과 한 지붕아래 살아왔거나 해당 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가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소년의 퇴소 후에도 2~3개월간 상담이 지속된다.

이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이 그들의 가족과 새롭게 융합하는 것이다. 상담의 시선을 청소년에게 맞추고, 어떻게 가족의 가치를 고취시켜 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한다.

다. 그룹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① 에이즈(AIDS)에 대한 경계 : 에이즈의 전염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② 분노조절과 주장훈련 : 자기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고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지 방법을 익힌다.

- ③ 미술치료(Art Therapy) : 그림을 통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 ④ 선택(Choices) :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의 힘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정립해 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 ⑤ 결정을 위한 토의 :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의 모델들을 제공한다.
- ⑥ 약물 교육 : 알코올을 포함한 마약류 사용의 폐해에 관해 교육한다.
- ⑦ 십대를 위한 식습관 : 식이장애 문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 ⑧ 교육적인 개인지도 : 개개인의 읽기와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1:1 지도 활동이다.
- ⑨ 가족생애교육 : 성적인 행동, 임신, 성적인 질병, 피임방법, 금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⑩ 그룹치료 :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이들의 표현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 ⑪ 학대문제 : 반복되는 학대와 다양한 폭력 문제에 관해 다룬다.
- ⑫ 부모역량 강화 : 부모로서의 역할을 교육한다.
- ⑬ 학업기회제공 : 청소년은 읽기, 셈하기, 과학, 사회과학 분야와 컴퓨터 사용을 익힌다.
- ⑭ 위기상태의 특수청소년 : 성적인 학대의 희생자가 되어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스스로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생존자로 인식하게 해준다.
- ⑮ 청소년, 가족, 그리고 약물 : 다양한 세대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학대 문제와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 보호 대상이 된다.

라. 청소년개발

청소년개발프로그램(YDP : Youth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카사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원을 도와고 자기 자신과 사회, 위기에 직면해 있는 또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

간다.

12시간의 훈련 후에 카사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이 훈련은 학대 희생자와 경청 방법, 단체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다. 업무의 범위는 개인지도, 직원보조, 여가활동 지도, 행사의 조정, 광고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카사를 위한 지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이 타인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는 능력과 에너지를 키워가는 것이다.

마. 대학생 현장체험활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인간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대학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일꾼, 봉사자를 위한 것으로 그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갖도록 해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학생은 응급전화 상담이나 의뢰인에 대한 차트를 정리하기도 한다. 학생이 의뢰인을 상대함에 있어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의뢰인의 개인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을 익힌다.

바. 대학원생 현장체험활동

대학원 재학생과 전문 카운슬러가 석사학위를 목적으로 함께 일한다. 대학원생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매해 수천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카사의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뢰인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 상담가는 의뢰인이 스스로의 일상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 봉사자는 카사의 전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스로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대학원생 참여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래의 전문 상담가에게 최고 수준

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각종 인턴십이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은 개개·가족·집단 상담을 하는 일에 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기술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타인의 감정적인 위기상황을 다루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사. 시설 내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문을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 것과 어려움에 처한 십대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을 때 보다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청의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그룹 활동을 책임지고 이끌게 된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는 쉼터의 청소년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며 특별한 행사나 활동 등에 협력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쉼터의 직원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일하고 활동하며 쉼터를 돕는다.

아. 여성봉사자

여성봉사자(Ayudantes de Casa)는 1978년에 형성된 그룹으로 카사의 청소년을 돕고 있다. 이 그룹의 여성은 각각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카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인 도움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그룹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카사의 살림살이에 있는데, 카사의 거주 시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카사의 부엌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을 제공하며 종종 카사의 청소년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부활절, 카사의 창립기념일 등 특별한 명절이나 파티를 위한 준비를

맡아주기도 한다.

(3) 시티하우스¹⁰⁾

가. 개요

시티하우스(C.I.T.Y. House)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종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이다. 1988년 몇몇 교사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써 오갈 데 없이 살림 꾸러미를 챙겨주고 등교하는 노숙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어 6개의 침대를 가진 쉼터로 시작되었다. 이곳은 주로 10~17세 청소년에게 개방된다.

이 단체의 기본적인 원동력은 지역사회와의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연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제공되는 안정된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기본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데, 특히 어려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시티하우스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그들이 가진 감정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제공되는 이 단체의 서비스로는 청소년쉼터, 가족상담, 생존기술 교육 등이 있다. 이 단체의 근본적인 목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개별가정이 지역사회의 일부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 프로그램

가) 침대응급쉼터

시티하우스에서의 거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10~17세의 청소년에게 개

10) <http://www.cityhouse.org/home.htm>

방된 공간으로써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있다. 거주기간 동안 심리치료와 관계발전을 위한 학습, 생존을 위한 기술습득 훈련, 상황대처 등의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① 심리치료와 유대관계 개발 :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치료활동을 위한 그룹, 분노조절 그룹, 불행과 상실에 관한 그룹, 목적에 관한 그룹, 성적인 문제나 경계, 자신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교육을 맡은 그룹 등을 통해 도움을 준다.

② 일상생활기술 : 폭력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돌봄과 위협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청소년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요리하기, 설거지, 세탁 등의 가사 일을 직접 하게 된다. 머무는 동안 공립학교에 출석하게 되고, 각종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③ 상황 대처 : 의료적, 교육적, 일상생활을 위한 또는 감정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나) 점진적·과도기적 삶을 위한 프로그램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성공적인 변화가 필요한 15~21세 노숙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티하우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 여성, 임산부나 이미 출산을 한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2002년 10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Progressive Pathway이다. 이 집중적이고 강력한 체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에게 목표설정,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위한 기술과 방법 습득, 성공적인 독립을 돕게 된다.

① 목표에 대한 평가 : 시티하우스에 거주하는 동안 문제 해결을 돕는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목표로 일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는 교육과 취업, 생활방법, 또는 부모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해 훈련하게 된다.

② 생활방식의 습득 :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뤄져야할 생존의 문제로 숙식, 의료적인 필요, 상담, 교통수단, 취업을 위한 준비, 정규교육을 위한 취학, 탁아와 보육, 재정적인 문제해결 등 일반적이고 다양한 도움이 18개월간 이뤄지게 된다.

③ 성공적인 독립 : 적절한 저축과 살림살이를 갖춘 성공적인 독립생활의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기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탁아 등의 문제도 해결한다. 이 마지막 단계는 지역사회, 협력적인 가족구성원, 친구,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자 등의 지원을 통해 미래 지역사회에 생산적인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접촉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위기학생을 위한 그룹 : 학교 카운슬러의 요청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위해 운영된다. 시티하우스의 상담자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직업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 카운슬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을 그들의 결석여부, 정학 등의 처벌내용, 대안학교(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임시로 교육하기 위해 수용하는 곳) 등으로 보내도록 결정된 내용 등에 의해 선별하게 된다.

② 선택 : 선택(Choice)은 여러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된 하나의 그룹 이름으로 이 그룹의 목적은 가출, 무단결석, 학교문제 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가족을 도와주고, 그들이 새로운 기반과 목적아래 버텨내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택은 1999년 11월에 처음 발족되었다. 그룹상담은 매주 한번 씩 저녁시간에 개최된다. 첫 번째 상담에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각자 따로따로 상담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두 번째 만남에서 청소년과 보호자는 함께 자리를 하여 상담을 통해 그들의 문제에 접근할 협력

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은 6주에 걸쳐서 이뤄진다. 상담의 주요 주제는 1주-문제해결, 2주-선택, 3주-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4주-의사소통·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5주-갈등 해결방안 찾기, 6주-분노조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각 가족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③ 가족상담 :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갈등의 이유는 청소년의 무단결석이나, 비행, 가족과의 불화 등이다. 가족 간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이 상담 서비스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식을 택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상담자에 의해 가족과 가정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를 지닌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2년 한 해 동안 664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이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또한 이 한해 동안 1,185번의 전화상담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294개 가족과 상담전화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④ 역량강화 : CITY의 가장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주 대상은 13~17세의 소녀와 그녀들의 어머니이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십대소녀의 임신과 무단결석, 가출, 우울 등의 문제로부터 자신에게 가하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룹은 4분기로 나누어 이뤄지고 있는데 상황대처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4) 여성청소년개발센터¹¹⁾

가. 개요

여성청소년개발센터(CYWD : The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는 1993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여성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11) <http://www.cywd.org/index.html>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는 젊은 여성이 직면한 문제는 똑같이 젊은 여성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청소년 또는 젊은 연배의 여성을 위한 것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받고 상처받은 여성 청소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단체의 치료 대상은 젊은 여성으로써 노숙자 출신이거나, 구금되어 형을 받은 사람, 청소년범죄에 연루되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체의 프로그램은 전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존재에게나 강력한 지도자로 거듭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제공된다.

1997년 이 단체의 설립자가 이 단체를 떠난 후, 남아있던 다른 젊은 여성 멤버들은 CYWD를 미국에서 청소년기의 여성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중 가장 큰 단체의 하나로 성장시켰다.

이 성과 뒤에 CYWD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특히 자신들 스스로가 거리의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했던 갈등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설 수 있는 리더가 되거나, 법률정책가, 연구자, 고용주, 운동선수가 되고, 이 사회의 오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여성은 자신의 과거속의 경험을 치료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5년 후에 CYWD는 이미 두 배의 규모로 급성장했고, 이러한 성과는 국내 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도약은 모두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들은 본래 CYWD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CYWD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의 새로운 모델로써, 이 단체를 거친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나. 주요활동

가) 건강과 위생

건강과 위생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곳에 오게 되는 여성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 강간, 추행, 감정적인 학대, 중독, 전반적으로 건강을 해하는 행위들을 경험한 이들이다. 이 단체는 젊은 여성이 그들의 삶과 건강 자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돕는데 이것은 건강한 성교육, 자기보호를 위한 훈련, 치료를 위한 마사지, 침술, 요가, 허브치료,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등의 치료, 종교적인 행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 비판적 사고

비판적인 사고는 젊은 여성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해답의 책임감에 대해 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비판적 사고의 이용을 통해 젊은 여성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주의 깊게 짚어 볼 수 있고, 이것은 자신들이 지역사회나 세상에 대해 원하는 변화의 유형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사회적인 서술의 전기, 문화적인 접촉 활동,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 참석, 정치적인 교육, 정책적인 활동과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 공동체 형성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이 단체의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이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절대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신 여성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으로는 거리로 직접 나서는 복지활동, 캠페인 조직, 회의 조직, 훈련, 사회활동 참여,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젝트가 있다.

라) 기술개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여성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사람들이다.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습득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읽고 쓰기의 훈련과 산술, 취업생활을 위한 에티켓, 개인 재정의 조정력, 이력서 작성법, 면접을 위한 기술, 자기표현을 위한 방법, 자기주장 표현, 그리고 갈등 해소 훈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성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교육과 훈련의 토대로 삼는다. 이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가서는 것이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젊은 여성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슷한 예로,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훈련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훈련을 시도했을 때, 여성은 이로 인해 혼란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보고 배워온 것과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의 접근에서 오는 이질감과 혼돈 때문이었다.

최선의 방법은 이 프로그램내의 다양한 시도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각각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여성 개개인이 가진 문제와 상황 해결에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해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소녀, 거리의 여성을 위해 일한다. 거리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거리의 법칙을 위한 훈련을 습득한다. 동시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소녀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이 단체의 모임과 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교육을 위한 훈련에서는 소녀들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아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철

저한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자기표현방법, 치료를 위한 방법과 공간, 강력한 자매애 등을 제공해 주게 된다.

다. 프로그램

가) 구금상태의 소녀 변호프로젝트(GDAP : Girls' Detention Advocacy Project)

여성청소년개발센터의 특징은 소녀들이 소녀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구금상태의 소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이 단체는 이 상황에서 그 소녀들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기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구금상태의 소녀 변호프로젝트(GDAP : Girls' Detention Advocacy Project)의 젊은 지도자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미래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GDAP는 구속·구금 상태의 소녀들을 집단으로, 개개인으로 돕는다. 이러한 청소년 구금기관에 속해있는 소녀들은 대부분 폭력으로부터의 생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은 그들을 위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게 된다. 「Lift Us Up, Don't Look Us Down(우리를 보다 향상시키고, 우리를 가두어 낮추지 말자)」라는 의미의 커리큘럼의 이용을 통해 자기변호 훈련과 리더십의 개발·고취, 상담자의 협조, 지원그룹의 제공, 법률 교육,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기술 습득,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훈련 등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 소녀들을 책임감 있는 캠페인에 참여시킨다. 가장 시급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다가서기 위해 GDAP는 소녀들과의 체계적이고 직선적인 변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 통로를

만들어 간다.

CYWD의 도움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GDAP는 이미 석방된 어린 소녀들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의 연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GDAP는 이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Sister-Circle이라는 명칭의 그룹을 지원한다. 이것은 구속·구금의 상황에 처해본 소녀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GDAP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지속적으로 이 단체의 컴퓨터랩, 자료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단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 취업교육 및 훈련 : 자신감의 충전, 기술습득, 자매애를 이용한 훈련

초창기부터 취업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 소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선된다. 무소득 또는 저소득의 소녀들에게 그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각종의 훈련을 받으며 서비스들에 참여하는 동안에 CYWD는 그들에게 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 준다. 이 소녀들은 한 팀으로 뭉쳐 함께 일하고, 협력하여 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여성과 함께 하나로 뭉쳐 일하게 된다. 한번 CYWD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을 위해서도 이 단체는 그녀들이 추후에 제대로 된 교육과 의미 있는 취업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과정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녀들은 직업 교육과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훈련, 자신을 돌보기 위한 훈련 등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200여 시간동안 컴퓨터 기술습득, 생활기술습득,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 학대의 실체에 대한 교육, 취업준비, 글쓰기, 교육적인 계획의 설계,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하는 방법의 습득, 정치적인 교육, 그리고 갈등의

해소와 극복을 위한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직접 봉사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훈련을 이끌고,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각종 활동을 위해 투입되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의 정돈된 상황처리 기술과 지도자로서의 능력배양,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업무를 수행 능력은 소녀들의 미래를 돕게 된다.

다) 공동체와 지도자 양성

1996년 사망한 직원 넬리 벨라스코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The Nelly Velasco Project)이다. 그녀는 유색인종의 동성애 성향 여성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삶을 배워갈 공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 무소득 또는 저소득의 유색인종 동성애 여성이 이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의 이벤트를 주최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제공하며 매달 토론을 위한 모임을 주도한다. 바베큐 파티와 영화감상, 여행,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 치료모임, 정치적 교육 등이 제공된다.

라) 사법정보안내서

사법정보안내서는 법적인 전문용어, 청소년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그 의 청소년과 그 가족이 연루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안내서는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그림과 글을 신기도 한다. 매년 1만5천부의 안내서가 인쇄되고, 캘리포니아 일대 청소년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체포되었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② 청소년과 성인법정의 차이점, ③ 청소년 범죄 시스템

의 구성원, ④ 변호방법, ⑤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5) 허클베리청소년프로그램¹²⁾

가. 개요

허클베리청소년프로그램(Huckleberry Youth Program)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 일대의 청소년과 그들 가족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방과 건강증진, 위기 중재, 안정과 성장 등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어린 청소년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며, 다양한 아이디어, 리더십과 건강을 가꾸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삶속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각종 약물, 알코올, 학대, 정신적인 건강 문제, 십대 임신, 성병 감염, 폭력,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육체적·성적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치료를 포함하며, 복잡한 구조의 복지혜택을 위한 신청과 교육, 소년사법체제 등의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곳의 서비스들은 각종 의뢰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젊은 청소년이 지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가진 잠재력의 인정을 통해 그들이 보다 건강하고 책임감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에 대한 인정은 그들이 보다 건강하고 창조적·생산적인 성인으로 자라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활동한다.

최근의 Huckleberry Youth Program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청소년을 위한 단체로써 크게 성장해왔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프로그램은 노숙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각종 피해에 시달리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와 마린 카운티 일대의 청소년을 돕고 있다.

12) <http://www.huckleberryyouth.org>

나. 프로그램

가) 허클베리의 집

허클베리의 집(Huckleberry House)은 위급한 상황의 피해 청소년을 위해 24시간으로 가동되는 위기 센터와 비상쉼터를 구비하고 있다. 이곳은 또한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을 위한 쉼터로서의 명성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4시간으로 제공되는 위기 중재나 해결 등의 도움을 통해 가출·노숙 청소년의 문제를 좀 더 완화시켜 주자는데 있다. 또한 그 청소년이 자신들의 가족과 다시 결합하고, 건강한 생활을 되찾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샌프란시스코 근교 거주 청소년으로써, 이것은 그들의 가족에게도 광범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개인, 가족구성원, 부모, 그룹 등의 치료와 가족명상, 위기상담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가족유지를 위한 카운슬링과 가족명상프로그램 등은 가족의 현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습관적인 가출이나, 부모·자녀 간의 갈등, 감정·육체적인 학대,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 스트레스·우울증·자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청소년이나 그들의 가족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쉼터를 떠나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이러한 치료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가족 명상은 이를 위해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 명상의 첫 번째 과정은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나) Nine Grove Lane

Nine Grove Lane은 각각 2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3개동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건물로 캘리포니아 San Aselmo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Huckleberry House의 그것과 많은 유사점들이 있으나 가족 상담서비스가 강화되어 있는 점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학대받고 방치되는 청소년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수용, 평가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청소년 보호관찰관이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을 위해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1984년부터 Nine Grove Lane은 카운티의 공식 지정기관으로써 청소년 수용기관의 역할도 맡고 있다. 경찰로부터 적발된 어떠한 십대 청소년이나 보호자·부모로부터 보호 없이 방치된 아이들, 범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이 이 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 콜스트리트 허클베리청소년서비스

콜스트리트 허클베리청소년서비스(HYSCS : Huckleberry Youth Service at Cole Street)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1992년에 설립된 곳으로, 포괄적·연령적·문화적인 감수성 문제로 갈등하는 청소년을 위한 협력기관의 역할로 청소년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HIV예방 교육이나 카운슬링, 복지혜택 등을 기관의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HYSCS는 청소년 건강을 위한 기관으로써 국가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심각한 피해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접근 방법을 택해온 것과 그들의 심리적·육체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 허클베리십대건강프로그램

허클베리십대건강프로그램(HTHP : Huckleberry Teen Health Program)은 1988년에 설립된 곳으로 청소년 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이곳의 대상은 12~21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지역사회의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HTHP는 무료로 건강프로그램, 카운슬링,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직접 위기상태의 청소년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데, 청소년이 주로 어울리거나 배회하는 지역사회의 거리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학교와 청소년이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HTHP는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청소년이 방문 할 수 있는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청소년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포함 내용은 건강 교육과 임신 진단, 카운슬링, HIV와 특정질병들에 대한 테스트, 단기 카운슬링, 상황대처법 등의 서비스들이다. HTHP는 또한 남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이는 원치 않는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과 리더십을 고취해 주는 것, 건강 교육, 문화적인 인식과 자각, 그리고 교육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역사회연계센터

지역사회연계센터(CARC : The Community Assessment and Referral Center)는 위기상황의 중재와 조정, 평가 등을 다루는 곳이다. 체포된 청소년의 조정과 위탁을 맡고 있다. 청소년 보호기관, 공공 건강·위생국, 지역경찰서, 일반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사회규범의 위반으로 체포에 이르게 된 청소년을 함께 돕고자 한다.

CARC는 아주 특별한 감성으로 협력하는 기관이다. 현실적인 공공·민간의 협력기관들과의 공조로써 인생의 실수를 만들어온 청소년이 새로운 삶을 위한 과정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CARC는 11~17세 청소년으로서 중범죄와 경범죄 등의 공격적인 이유로 체포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경찰의 보호 감독 하에 CARC로 보내진다. CARC로 보내진 청소년은 전문적인 심리치료사, 상황조정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은 CARC를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지원과 희망을 위한 기회를 안게 된다. CARC의 도움을 받은 다수의 청소년은 성공적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되거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거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긍정적인 사회참여와 창조활동, 청소년개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바) 폭력예방-소녀프로젝트

199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VIP : The Violence Is Preventable-Girls Project)는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젊은 여성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단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VIP Girls Project는 11~18세 사이의 소녀들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거주하는 다양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 서비스는 카운슬링, 상황 대처법, 물리·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는 개개인의 자기발전, 취업교육, 쉼터, 가족치료, 부모역할교육, 그리고 각종의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들로 어린 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반복되는 폭력의 습관과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 단체들은 젊은 여성을 위한 필요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초기 2년間に 600명 이상의 소녀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6) 청소년보호협회¹³⁾

가. 개요

13) <http://www.juvenile.org>

청소년보호협회(JPA : Juvenile protective association)는 사설 비영리 단체로써 청소년 보호, 치료와 학대·방치로부터의 회복,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돕는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세대 간에 일어나는 학대, 갈등과 아이들에게 자행되는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선다.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폭력과 학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주된 관심사이다. 또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된 목적이다.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는 단체로써 JPA는 청소년이 사회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거나, 가정이나 해로운 충동을 가진 이웃환경으로 인해 학대받고 방치되어 있거나, 가족구성원의 기능 회복이 청소년을 위해 필요로 될 때 도움을 제공한다.

나. 프로그램

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학대와 치료를 필요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이를 줄이고자 한다. JPA의 대상자들은 시카고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가족으로써 주로 극빈층과 소수민족 층의 어린이들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첫 아이를 갖게 된 부모들과 파트너 없이 혼자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부모도 대상이 된다. JPA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가족과 커플, 개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제공한다. 그 누구도 재정적인 문제, 경비문제로 거절당하지 않는다. JPA의 치료, 상담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가족치료와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섬세하고 장기적인 도움을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의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JPA의 치료·상담 서비스는 아동학대와 방치의 근본적인 저변의 문제들을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신 병력이나 학대하는 부모 자신들이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 가정폭력, 발달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PA는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문제의 해소나 부모로서의 역할 교육을 위해 종합적인 방법의 접근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출산, 취학, 이혼등과 같은 혼돈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돕는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불러오는, 결과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감정적인 문제행동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도 한다. JPA의 치료·상담 프로그램은 또한 긍정적인 방향의 성과를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관계회복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아동과 보호자 간의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 가정이 보다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내고,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 용감하게 맞서나가서 보다 행복한 구성원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 부모-자녀를 위한 서비스

자녀를 학대해 심각하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는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서비스는 시카고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주목적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 등을 위한 정보 제공에 있다. 제한된 정보와 가정 내 문제, 하루하루의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잦을수록 자신들의 자녀에게 성장을 위한 충분한 환경과 영양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능력은 저하되게 마련이다. 강하고 건강한 부모-자녀의 관계는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루어 인간으로써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해 나가는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어 나가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JPA의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강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꾀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돕고, 부모가 자녀에게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책임감을 길러가는 것을 돕는다.

JPA의 부모-자녀 서비스에는 아래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① 심각한 피해상태의 가정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카운슬링, ②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을 위한 집단토론, ③ 드롭인(drop-in)그룹을 형성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참여 유도.

JPA는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해 심도 있고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우울상태나 극단적인 감정 상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② 다른 부모를 만나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나눈다. ③ 자녀의 성장과 변화의 단계에 대해 보다 나은 지식을 얻는다. ④ 부모로서의 다양한 시도와 적응에 관해 보다 익숙해진다. ⑤ 아동에게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 상담·협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접근을 해주고, 심각하게 손상된 아동과 가정구성원의 문제를 공공·민간단체들과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JPA의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RIT)는 충분한 상담과 자료의 조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노력의 결과 JPA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부모와 자녀들의 가정이 보다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그들 개개인의 미래에의 희망을 주고 사회일원으로써의 생산적인 능력을 성장시켜 간다.

RIT의 컨설팅 서비스는 다른 비영리 단체들을 돕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의미 있는 기준들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각각의 도움은 모두 독특한 특색을 갖게 되는데, 이는 RIT와 JPA가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방법들을 모색, 제안해주기 때문이다.

RIT는 또한 공공·민간의 아동복지 단체들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행정적인 구조의 형성과 안전을 위한 치료적인 제안, 학대받고 방치된 아동·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라) 자료조사와 출판

아동복지와 어린 아동들의 생활, 소아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진다. JPA는 가정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향력 있는 자료조사기관의 역할로써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국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각 다른 가정과 그 속에서 성장한 각각의 아동·청소년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환경, 학대,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는가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또한 어떻게 학대와 방치의 환경에서 성장한 이가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조사도 한다. 이러한 조사들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각각의 아동·청소년과 부모, 가정, 이웃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러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아동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JPA는 자체적인 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정보의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자료를 담은 출판물을 공급하고 있다.

마)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적인 지원

RTI는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재활 훈련과 협력을 통해 피해정도가 큰 아동의 가정을 돕는다. 이 도움은 가정과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행정관계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된다. RIT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복지 등을 위한 전문가가 키워지고 협력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나간다.

바) 변호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각종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JPA의 모든 주장과 변호는 가정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사회, 시민단체 그룹과 연계하여 학대, 방치되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목소리 높인 주장을 한다. 학대와 방치 속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의료적, 법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학대와 방치 속에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증인의 입장으로써 도움을 제공한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시카고의 법적인 사항인 friend of the court에 서명하고 연계된 도움을 준다. 아동·청소년과 가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공공·민간의 각종 기관에 상담과 자료를 제공한다.

(7) 시사점

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경우 시설과 단체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하나의 단체에서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문제의 당사자였던 여성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또한 상담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가족 상담을 통해 가정의 기능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 캐나다

(1) 개관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주와 시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시설·단체에 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캐나다 역시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단체가 청소년 시설·단체의 주를 이룬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방문했던 캐나다 밴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2) 데야스¹⁴⁾

가. 개요

데야스(DEYAS : Downtown Eastside Youth Activities Society)는 밴쿠버 동쪽 지역에서 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참여자가 거리의 삶으로부터 탈출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개척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인의 선택만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이들을

14) <http://www.deyas.org>

위해 육체적인 건강과 안전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나. 프로그램

가) 아웃리치 프로그램

밴쿠버 거리의 25세 이하 청소년으로 극단의 피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직원은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 데야스의 또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독, 성적 착취, 노숙, 실업, 교육, 건강 등의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청소년과 친밀감을 키워감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최소화 해주고, 그들의 삶에 활력과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거리의 청소년을 발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관의 첫 번째 접촉 기회가 되곤 한다.

나) 청소년활동센터

41 West Cordova St 에 위치한 청소년활동센터(YAC : Youth Active Center)는 일주일 내내 개방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거리의 청소년에게 하루 두 번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제공해 주고, 세탁, 전화사용, 컴퓨터기기 이용과 교육, 생존을 위한 기술의 습득, 의복, 의료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노숙, 중독, 성매매 등으로부터 다양한 각종의 피해와 고통을 입어온 청소년을 돕고 있다. YAC직원은 보다 집중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일대일 관계의 지원과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YAC센터를 통해 4천명 이상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 청소년해독(Youth Detox)

청소년해독 프로그램은 13~21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24시간 제공되는 것인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생활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그들이 처해있는 중독의 상태로부터 극복의 의지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어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직원은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 개인을 돌보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 없이 그들을 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4백5십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거쳤으며 육체적, 사회적, 감정적인 극복을 위한 각종의 도움을 제공 받았다. Youth Detox는 청소년 개인에 따라서 각종의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치료·극복, 숙식·가정, 사회적 혜택과 수입의 창출을 위한 취업의 보조 등을 돕는다. 지난 한 해 동안 2천5백명 이상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제공 받았다.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의 직원은 청소년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생애기술 프로그램(Life Skills Program)

생애기술 프로그램은 19~29세 사이의 청년으로서 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과 취업을 위한 각종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데야스는 3백여명의 청소년을 도왔다. 이것은 주로 워크숍과 생존 방법의 습득, 취업교육, 상담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마) 바늘교환

바늘교환(Needle Exchange) 프로그램은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피해 감소·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용된 주사바늘과 콘돔 등이 교환·수거되며 이것은 HIV의 확산을 막고 각종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밴쿠버 시내의 약물 사용자와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 교환 프로그램은 주사바늘과 콘돔뿐만 아니라 표백·소독제와 알코올 솜, 깨끗하게 병 안에 포장된 물, AIDS·HIV·간염·결핵 등의 감염 관련 자료와 알코올·약물 사용자를 위한 상담,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학적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백2십만개 이상의 주사바늘이 교환되었다.

바) 바늘회수

바늘회수 프로그램은 거리, 골목, 공원, 학교마당 등 밴쿠버 시내의 공공 장소에 버려진 바늘을 회수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학교 마당에 버려진 바늘을 회수하는 일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데야스는 지역 사회 공공의 각종 공간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 의료 아웃리치(Health Outreach Van)

의료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의료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거리로 직접 나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은 보다 집중된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로 옮겨져 도움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의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응급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은 Vancouver Coastal Health Authority, Vancouver Police Department,

BC Ambulance Service의 도움으로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아) 알코올·약물상담 프로그램

알코올·약물상담 프로그램은 치료와 예방의 제공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고통을 최소화 하자는데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상담과 약물로부터의 치료, 교육의 제공, 그 외의 각종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알코올과 약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3) 페이스¹⁵⁾

가. 개요

페이스(PACE : Prostitution Alternatives Counselling Education)는 성매매 종사자 스스로 그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1994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침실 한 개의 아파트로 시작해 성매매 종사자의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싸워왔고, 성매매 종사자 당사자가 이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해 왔다. 페이스의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래와 같다.

- ① 경험을 통한 예방 교육
- ②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 ③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
- ④ 유용한 지원의 제공과 중재의 역할
- ⑤ 동료집단의 지원과 훈련

15) <http://www.pace-society.ca>

⑥ 프로그램과의 융합·결합을 위한 가이드

나. 프로그램

가) 또래지원서비스

페이스 내에서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적인 상담과 적합한 기관과의 위탁에 의한 도움과 변호
- ② 개인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목적 형성
- ③ 지원 그룹과의 연계형성
- ④ 교육, 취업, 기술교육을 위한 일대일 관계를 통한 지원
- ⑤ 포주로부터의 탈출을 원할시 경찰의 지원·협력 제공
- ⑥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성매매 사업에 의한 영향에 대한 인지

나) 아웃리치서비스

페이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정책의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1994년의 페이스의 시작과 함께 페이스는 서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성매매 종사자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동·가정국(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아동에게 필요로 되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소의 파악과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사회내의 상호 교환적인 교류와 프로그램 멤버의 삶의 향상을 돕게 된다.

거리의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는 그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주어 왔다. 보다 활성화된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구제 활동은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논제라 할

수 있다.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은 간단하고 유연하게 그 여세를 확장해 나간다. 이것은 경험과 거리에서 익혀진 지혜로써 다가서는 프로그램 운영자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실용적인 활동을 위한 지침과 같이 사용되곤 하는데 성공적인 방법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부모, 다른 기관, 정부부처 등의 참여가 이를 돕는다. 지속적인 도움의 제공과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가 필수적이다.

다)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 발전, 정리, 도움 등을 이용한다.
- ②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③ 정돈, 감독, 조언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④ 신문이나 페이스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공유 활동을 위해 기록과 자료화를 중요시 한다.
- ⑤ 페이스내에서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한다.
- ⑥ 교육, 예방 비디오의 활용을 활발히 한다.
- ⑦ 정리된 교육 자료를 위한 조사, 발전을 꾀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담당자는 과거와 현재 성매매에 연루되었거나 되어 있는 여성과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그런 이유로 교육자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같은 시각에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 교육자를 모집하게 되는 경로는 페이스 프로그램 자체의 참여자 중에서 또는 다른 기관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와 연관된 배경을 지닌 여성과 청소년 중에서 선발한다.

라) 설명회와 워크숍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 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써 청소년

년과 여성의 성매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교육팀은 피해상태에 있는 이들과 지역사회의 멤버를 위해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마) 건강을 위한 서비스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거나 연루된 이들을 위해 주사기를 사용한 약물이나 성적인 활동을 통해 전염 될 수 있는 C형 간염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들의 대부분이 전염성을 가진 질병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도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바) 기부금과 자원봉사

자금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존속을 위한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페이스는 소규모 재단의 재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각 개인으로부터의 지원을 환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실습을 원하는 학생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지닌 18세 이상 남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피어¹⁶⁾

가. 개요

피어(PEER : Prostitutes Empowerment and Education Resource Society)는 전직 성매매여성과 지역사회의 후원자에 의해 결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매매 종사자의 능력고취와 교육, 지원이다. 위 사항의 영향력을 중요시 여기고 성매매 종사자의 안전문제와 환

16) <http://www.peers.bc.ca>

경의 향상을 돕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매매 사업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개개인에 대한 후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공공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시각의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피어는 성매매관련 사업에 연루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의 시각은 보다 융통성 있으며 관대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개인을 만나는 것이다.

피어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착취당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접근인 것이다. 모든 자료와 언어적인 호칭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성적인 착취는 당사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도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적인 착취를 경험해온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성매매 사업에 여전히 관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해 왔다. 피어는 교육과 삶·취업 등의 선택에 있어 보다 다양한 개인의 선택폭을 넓혀줌으로써 이들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피어는 전직 성매매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후원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이들의 개인적인 생각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이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주시하며 성매매 등 이전의 삶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치료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핀다. 피어는 성매매 등의 상황 속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그들의 삶이 어떠해왔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조차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임을 특히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성인이 그 청소년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피어의 멤버들은 그들 삶속 개개인의 경험을 사용하여 성매매 관련 청소년이 어디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연루되어 왔는지를 알아간다.

가) 엘리먼트(Element)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등에 연루되었던 삶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으로, 가령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 등의 전반적인 전환을 꾀하는 이를 위한 과정이다. 유연한 프로그램 과정을 도입하여 삶의 장애를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해 생존을 위한 기술의 습득, 건강 증진, 부모로써 아이 돌보기, 직업교육 등을 돕는다. 각 단계마다 개별적인 도움도 가능하다.

첫째, 1단계는 5주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장 먼저 화일과 필기구, 종이와 매일 매일의 기록을 위한 수첩을 제공받게 되며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버스 정기권을 제공받는다.

① “Sold Out” 워크숍은 성매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새로운 생활·생존의 기술을 익혀나가도록 도전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약물과 알코올 남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 그룹의 도움

③ 경제적인 문제와 주거문제,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건강문제, 학대·폭력에 연루된 관계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대 개인을 위시로 한 지원의 제공

④ 피어 직원에 의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⑤ 참여자 중 아이를 가진 여성을 위한 지원활동

⑥ 육아, 취업, 교육의 기회를 위한 지원

⑦ 이 첫 번째 단계를 마친 이에게는 앞으로의 직업이나 학교생활, 봉사활동 등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나가기 위한 60불상당의 상품권 또는 레크

리에이션 패스가 제공된다.

둘째, 2단계는 9주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 ① 1단계에서의 활동이 유지되며 아래의 다른 사항이 첨가된다.
- ② 컴퓨터 이용 기술을 습득한다.
- ③ 취업을 위한 실질적 조사와 답사
- ④ 생존·생활 기술의 습득과 취업을 위한 자료조사 방법 습득
- ⑤ 지역사회와의 대화
- ⑥ 이전의 삶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다.

⑦ 이 두 번째 단계를 마친 이에게는 취업을 위한 의복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백 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레크리에이션 패스, 취업을 위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셋째, 3단계는 10주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 ① 1과 2단계에서의 과정을 반복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둔다.
- ② 일반적인 삶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통한 준비 과정
- ③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자신감의 고취
- ④ 세 번째 단계를 마치기 이전 이수증을 받게 되며 자기발전과 훈련을 위해 앞으로 필요할 수 있을 또 다른 교육을 위한 상품권과 6십달러 상당의 미용실 이용권, 레크리에이션 패스,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받는다.

나)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 : Fetal Alcohol Syndrome)¹⁷⁾

피어의 직원은 매주의 교육과 지원 그룹을 통해 FAS를 겪고 있는 산모와 아이를 돕는다. 3년간의 FAS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러 현재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다. 이것은 FAS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조사로써 피어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17)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신부의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신생아의 기형이나 기능 장애를 말한다.

다) 심야아웃리치

오후 9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사바늘, 콘돔 등의 교환과 음식물, 커피 등의 제공과 자동차 방문, 기관 위탁, 병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장학금

예산에 따라서 피어는 매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2ND CHANCE 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약물사용 경력이 없어야 하며 경제적 도움을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5) 플리¹⁸⁾

가. 개요

플리(PLEA : Pacific Legal Education Association) Community services society of BC는 양질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온 지역사회 기반의 공인된 기관이다. 플리는 일대일 관계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이들을 적극 돕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개개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플리는 Kid Start와 함께 지난 20여년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제공해 왔다. 또 보호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외의 각종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을 위한 2개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18) <http://www.plea.bc.ca>

나. 프로그램

가) 딸과 자매(Daughters and Sisters)

이 프로그램은 6개월에 걸친 치료과정이다. 대상은 12~18세의 중독에 관련된 문제를 가진 이들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숙사 생활과 같은 숙소의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과 야간프로그램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낮 시간동안의 치료프로그램은 학교수업 등의 교육과 개인, 그룹, 가정 단위로 나뉘는 상담을 포함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훈련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은 British Columbia지방의 보호관찰관과 중독 전문상담가로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매달 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치르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그들의 거주지와의 거리, 종교, 문화적 배경, 또는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거부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전문가의 적정성을 감찰하며 합당한 방법의 모색을 위한 조언을 한다. 이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함께 한 팀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해 협조한다. 보호시설로부터 인계된 청소년은 프로그램의 과정을 모두 거치기 위해 최소한 그들의 보호, 수감 기간이 일 년은 되어야 한다. 또, 그들의 판결·보호 조건에 반드시 거주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

나) 청소년해독(Youth Detox)

21세 이하의 청소년(일반적으로 19세 이하)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중독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New Westminster, Burnaby, Vancouver, Richmond, North Vancouver, West Vancouver, Sechelt, Squamish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참여자는 플리 family home에서

생활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의 중독 치료 전문가들은 관찰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한다. 최대 참여 기간은 10일이다.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관련자), 의사,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 Waypoint

4개월에 걸친 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 12~18세의 남성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는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은 British Columbia지방 내의 보호관찰관으로 구성된다. 낮 시간 동안의 치료프로그램과 숙식을 함께 하며 지내는 거주형식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이다. 낮 시간 동안은 주로 중독으로부터의 극복과 치료를 위한 훈련이 제공되고 저녁시간과 주말동안에는 각각의 분리된 교육이 제공된다.

라) Kid Start

6~12세 사이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나(가해자나 피해자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에는 아직 어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개의 참여 대상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다. 각각의 어린이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으로써 그들의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감과 자기에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성인 자원봉사자와 연계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부금과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유지된다.

다. 플리의 역할과 기능

가) 강력한 지원과 감독

강력한 손상과 도움의 필요로 법원에 의해 지시를 받게 된 청소년은 일대일 관계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것은 후견·보호자에 의해 선택 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국의 직원은 계획된 사회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 모니터링을 함께하며 담당 청소년과 관계를 맺는다. 보호관찰관과 보호자, 부모는 문제의 해결과 목표의 설정·도달을 위한 협력자가 된다.

나) Youth Agreements Support

16~19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해줄 보조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청소년·가정부서의 직원과 함께 Youth Agreement에 서명하게 된다.

다) 지역사회 능력개발

지역의 사업체, 고용주, 각종 단체, 땅주인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수용·포용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와 그 구성원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가족상담

플리는 강화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한다. 이것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격감 시키고 가족의 붕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직원은 가족 개개인을 도우며 그들이 힘을 키워가고 각자의 역할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6) 시사점

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분리되어 운영되기보다는 하나의 단체에서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청소년보호단체의 원스톱 서비스이다. 캐나다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케어기버(caregiver)라고 부르는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케어기버는 돌보는 청소년의 숫자에 따라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단체에는 쉼터와 같은 시설과 청소년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대리 가정도 소속되어 있다.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들 소속기관에 배분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그들의 위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에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3) 일본¹⁹⁾

(1) 일본의 청소년보호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보도’와 ‘보호’의 두 가지 개념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소년보도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소년 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 및 “바른 방향으로 충고하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의 개념은 각 법률에 의해 보다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소년법 제2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가정재판소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당한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도를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도’란 “소년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원조활동”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다.

19) 이 부분은 강경래(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구원)가 집필하였음.

풍속영업 등의 규칙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소년보도원은 풍속영업 및 성풍속관련특수영업 등(성풍속관련특수영업, 음식점영업, 특정성풍속물품판매 등 영업 및接客업무수탁영업을 말한다.)에 관하여 소년을 보도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외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것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보도란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소년, 가출한 소년, 그 외 보도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소년에 대하여 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고, 또는 해당소년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외의 자로 소년을 현재 간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연락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소년지도위원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실시되는 ‘가두보도’란 “도로 그 외의 공공의 장소, 역 그 외의 다수의 객이 모이는 시설 또는 풍속영업의 영업소 그 외의 소년의 비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있어서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소년1을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 그 장소에서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2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목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또한 이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兵庫県 청소년애(愛)호조례 제1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한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山口県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기본이념 및 현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이 행하는 시책을 정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埼玉県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건전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청소년은 모든 조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한연령에 대해서는 6세 이상, 또는 취학 개시기 또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또한 다른 법령(민법)에서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가정, 학교 및 직장 등의 관계자, 지역주민, 지방공공단체, 영업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福島県청소년건전육성조례(1978년 3월30일 제30호)

제3조 가정을 구성하는 자는 상호 협력하고 밝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하는 것에 의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및 직장관계자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직장의 관계자 그 외의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계되는 관계자는 그 직무 또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연계하며 자주적 적극적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민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현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국가 및 市 村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며 이것을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 茨城県청소년을 위한 환경정비조례(1962년 10월 6일 제60호)

제4조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 조례에 있어서는 가정, 학교 및 직장, 지방공공단체와 영업자 등에 대

한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도서⁴와 유해물건⁵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키기(遊技機)에 대해서는 “유키기의 구조 및 유키의 방법으로부터 현저하게 청소년의 사행심을 유발하고 또는 조장하며 그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유해한 기기로서 지정하여 판매 및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외 유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에 최면, 명정, 흥분, 환각, 마비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 작용을 가지는 약품류 등으로 그것을 남용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특정약품류 등으로 규칙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규제를 하고 있다(内山絢子, 1986: 22).

이와 같이 각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해 규제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유해성으로서는 주로 ‘성’과 ‘폭력’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찰과 시민이 연대한 청소년보호육성시책(소년지원센터)

일본에 있어서는 소년의 중대한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행동의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이 이루어지기 쉬운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인 보도활동이 실시되며, 중대한 비행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불량행위 등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인지하여 소년 및 그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원 및 소년경찰협조원을 민간 봉사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은 소년보도활동 및 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의 정화활동 등 지역에 밀착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소년상담센터’등을 설치하여 소년에 대한 직접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내용으로는 비행, 학교, 가정, 교우, 건강, 범죄피해, 폭력단관계, 가출, 외박, 자살에 관한 문

제 등 소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비행방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98년 12월 1일에 예규 제23호로 ‘소년경찰보도원활동요강(통달)6’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부인소년보도원이 폐지되고 소년경찰보도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년경찰보도원이란 대학 등에서 심리학, 교육학 등을 이수한 자로 지방공공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선고시험에 합격한 자 가운데 채용된다. 소년경찰보도원은 지방공공단체의 각 경찰서의 소년지원센터에 배치되어 경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즉 소년상담, 범 죄 및 이지메 등의 피해소년에 대한 계속지원,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의 계속보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사안의 처리, 가두보도활동, 가출소년, 요보호소년의 처리, 지역에 있어서의 홍보, 계몽활동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에 의한 비행방지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소년경찰보도원의 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한 지역의 비행방지활동에 있어서는 가정, 학교,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유해환경정화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경찰서에 있어서 소년경찰자원봉사자인 ‘소년보도원’, ‘소년경찰협조원’, ‘소년지도위원’, ‘피해소년지원인’ 등을 위촉하여 각각 세분화된 비행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근년의 소년의 문제행동의 다양화 및 심각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착안하여 개별적인 소년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경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기관에 의해 구성된 ‘지원팀’에 의한 소년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소년보호정책(소년보도센터)

경찰의 소년보도활동과는 다른 비권력적인 입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소년보도활동을 담당하는 ‘소년보도센터’(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센터, 소년센터, 청소년지도센터,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보호의 집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소년비행의 증가라고 하는 당시의 시

대적인 배경을 기초로 1952년에 京都와 大阪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또한 1964년에 총리부에서 ‘소년보호센터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보호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즉 “소년보호센터는 소년보호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민간 등이 합동으로 활동하여 문제소년 및 비행소년,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조기발견·보호 및 정보의 정비 등 소년의 비행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지향한다.”고 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각 지역에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법협회’ 및 ‘소년보호협회’ 등을 대신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지역에 소년보호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또한 소년보호센터의 설립의 주관부서도 都道府縣 또는 市の 교육위원회 및 민생부가 각 都道府縣의 청소년대책(추진)본부와 연계하여 소년의 비행방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重松一義, 1976: 983).

소년보호센터의 일반적인 활동으로서는 가두보호활동, 소년상담활동, 환경정화활동이 그 중심이다. 가두보호활동은 2인 1조로 역, 대형점포 등 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가두보호가 실시되며, 소년의 약물남용, 흡연, 가출, 부등교 등에 대한 보호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소년상담활동은 출장상담, 보호 후의 계속상담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사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정화활동으로서는 유해도서자동판매기 등 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감시 및 철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仙台市청소년지도센터의 운영개요

1963년 11월 13일 宮城縣 사회복지회관 내에 ‘청소년지도실(민생국 사회과)’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仙台市청소년지도센터는 당시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소년범죄의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비행방지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仙台市청소년지도센터의 구성은 소장1명, 주사2명, 주임3명, 전임상담원

(촉탁)4명, 전임지도원(촉탁)8명으로 총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시장이 위촉한 청소년지도원697명, Young Telephone상담원 12명, 후레아이(계속지도)지도원24명이 지역소년에 대한 가두지도, 상담, 계속지도 및 지역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지도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지도원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초·중·고교의 교사 및 중학교PTA10, 보호사, 민생위원, 소년경찰보도원 등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내용인 가두지도는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번화가, 역, 공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원이 시간대를 구분하여(아침(오전9시부터 11시30분 까지)·점심(오후 3시부터 6시까지)·저녁(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순회하는 것으로 이러한 순회는 1년간 약 600회 정도가 실시된다. 상담으로서는 소년자신의 문제, 소년의 문제행동 등에 대한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을 받아 문제에 따른 적절한 지도와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의 방법은 ‘면접상담’과 ‘전화상담(Young Telephone)’이 실시되고 있으며 상담의 내용으로는 소년비행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등교거부, 학업, 진로, 이성교제, 친구문제, 성에 관한 문제 등 소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속지도란 가두지도 및 상담활동의 결과,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호자 및 소년의 동의를 얻어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후레아이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이다. 일반적인 계속지도대상은 ‘무직소년’ 및 ‘등교거부소년’이 그 대상이 된다. 계속지도에서는 BBS 회원, 봉사학생 및 카운슬링연구회원 등 ‘후레아이 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들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계속지도의 내용으로서는 체육행사, 사회견학, 요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계속지도에 참가하는 시간 및 방법은 모두 대상소년의 자발성에 근거함으로 소년 개인의 생활형태 및 심리상태 등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무직소년에 대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원조가 이루어지며 등교거부소년에 대해서는 집단

적응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나. 豊中市청소년보호센터의 운영개요

1962년 10월 10일 규칙30호에 의해 설치된 豊中市청소년보호센터는 豊中市 사회과청소년계장, 교육위원회지도주사1명, 豊中경찰서 경찰관 1명 총 3명이 청소년지도업무를 실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2000년 현재는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지도주사 2명, 운전수 1명, 상담원(위촉)2명, 사무원(위촉)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지도원회, (유)소중학교, 후레아이지도원, 청소년건강육성회 등의 위촉된 보도원에 의한 소년보호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豊中市청소년보호센터의 활동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보도원에 의한 가두지도, 야간특별보도, 상담활동 등이 그 중심내용이다.

보도원에 의한 가두지도는 휴일 및 보호센터의 행사 등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보도원(각 소·중학교 학생지도담당자)3-5명에 의한 가두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두지도의 실시장소로는 변화가, 게임센터, 노래방시설, 완구점, 서점, 공원, 호수 및 강가, 빈집, 도서류자동판매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이 그 대상이다. 보도활동은 매일 기록되며 긴급의 연락 및 보고의 필요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연락, 학교 등에서의 정보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야간특별보도는 지역 및 학교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하여 야간에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편의점 앞, 공원, 음주, 흡연 및 신나 등의 흡입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순회하는 것이다.

상담활동으로는 청소년, 보호자, 시민 및 교사 등으로부터 소년범죄, 가출 및 무단외박, 폭행 및 반항, 성 문제, 학습, 이지메, 등교거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을 받아 그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담은 전화상담 만이 아니라 방문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보호자 및 학교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상담원에 의한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월 5일을 ‘소년을 지키는 날’로 정하여 보도원, 경찰, 인근지역소년보호센터, 가정센터, 각 학교 학생지도담당자가 참가한 대규모의 보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4) 아동자립지원시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4조에서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 그 외의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또는 보호자 하에서 다니게 하여 개개의 아동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도를 하고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으로 가정 및 학교 등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13을 입소하게 하여 생활, 교육 및 치료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에의 입원 및 퇴원의 결정은 아동상담소의 결정 및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의 지도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직업지도, 그 외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지도는 기본적 생활습관, 사회적 행동양식, 집단 내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이 상시적으로 함께 기숙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습지도는 기초학력의 향상, 개별지도의 중시, 진로상담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진로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지도는 노동의 어려움, 수확의 기쁨, 협동의 즐거움 등을 체험하게 하여 책임감 및 인내심을 배양하는 것과 함께 집단에 공헌하는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로 체육활동, 교육캠프, 등산, 축제 등을 실시한다.

가. 淡海學園²⁰⁾

1901년 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淡海學園은 감화원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예 의해 아동자립시설로 변경되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양호시설과 상이한 점은 없으나 아동에 대한 모든 지도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교실에서 학교교육법에 의거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분교실이란 지역의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분교형태로 아동이 매일 숙사에서 분교실로 통학하게 되어 있다. 교사에는 보통의 교실 외에 조리실, 음악실, 미술실, 가정과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의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체육관에는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에 따라 각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도는 지역의 학교의 교사8명이 배치되어 있다.

淡海學園에는 가족형식의 숙사의 3개동이 설치되어 각 숙사에서는 부부인 직원이 아동과 함께 기숙하며 일상의 생활지도를 하는 ‘夫婦小舍制’로 운영되고 있다.

나. 成德學校²¹⁾

1888년 사립감화원으로 설치된 成德學校는 1998년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예 의해 아동자립지원시설로 개칭되었다. 成德學校는 직원 28명이 아동 90명에 대해 지도 및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에는 숙사와 교육시설 및 농장 등이 있어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成德學校에서의 생활지도는 정원 12~16명 수용의 가정사옥에서 부부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夫婦小舍制’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입소아동의 대부분이 의무교육 해당연령이기 때문에 문부성의 학습지도요강에 근거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며, 또한 각 아동의 학력 및 능력에 따라 개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 <http://www.pref.shiga.jp/e/tankai/index.html>

21) <http://www.pref.okayama.jp/hoken/seitoku/index.html>

(5)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가. BBS연맹²²⁾

BBS는 Big Brothers and Big Sisters의 약칭으로 BBS연맹은 BBS운동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BBS운동은 비행소년이나 사회부적응 소년을 도와 범죄나 비행 없는 밝은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BS연맹은 불행하게 범죄 및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좋은 형과 좋은 누나가 되어 그들의 갱생을 보조하거나 재범죄 및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청년협력조직을 말한다. 이 운동은 1904년 미국의 뉴욕소년재판소 서기관이던 Ernest K. Coulter가 제창한 것으로 15일본에 있어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종전후의 일본사회의 혼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종전후의 전쟁고아의 증가에 따른 소년범죄의 급증에 대처하고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생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BBS운동의 기원은 1947년 2월에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京都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京都少年保護學生連盟」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약 반세기에 걸쳐서 일본의 소년범죄자와 비행소년에 대한 갱생보호에 대한 지원 및 소년범죄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으로 조직된 유일한 민간청년단체로 현재 약 6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BS회의 참가자격으로는 제한이 없다. 즉 이 운동의 취지에 찬동하며, 적극적으로 참가협력하려는 의지와 열의가 있는 건전한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일반적인 입회자격으로는 (1)약 20대의 청년남녀일 것, (2)사회봉사의 정신이 있을 것, (3)비행소년의 갱생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소년에게 애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3)활동에 필요한 여가가 있을 것 등이 입회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22) <http://www3.ocn.ne.jp/~bbsjapan/index2.htm>

일본의 BBS 조직은 다음과 같다. 市村(市村)지역²³⁾을 단위로 결성되어 지역 중심의 활동을 담당하는 지구BBS회(600개소), 보호관찰소단위의 도부현(都府縣)BBS연맹(50개소), 지방위원회 단위의 지방BBS연맹(8개소: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전국조직으로서의 일본BBS연맹이 있다. 이와 같은 조직들 가운데 실질적인 실천 활동의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구BBS회이다.

BBS외의 중심활동으로는 (1)토모다찌활동, (2)비행방지활동, (3)연구활동 및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에의 참가 등이 있다.

(가) 토모다찌활동(친구활동)

토모다찌활동이란 BBS운동의 중심활동으로서 소위 One Man One Boy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BBS회원이 소년의 형과 누나가 되어 소년의 상담대상이 되어 대상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및 그 외의 고민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토모다찌활동의 대부분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가정재판소의 시험관찰, 아동상담소, 청소년센터, 학교 및 일반가정 등으로부터 지구BBS회에 의뢰를 함으로서 지구BBS회의 회원이 추천됨으로 토모다찌활동이 시작된다. 여기에 있어서의 토모다찌활동은 자연발생적인 관계와는 달리 청소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뢰자에 의하여 강제되어지는 만큼 청소년과 담당BBS회원과의 적합성이 중요시된다. 토모다찌활동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담당BBS회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살리어 그것을 청소년에게 정보로서 전달하거나 또는 함께 실시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활동기록표로 작성되어 지정된 기일에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관에 의한 의뢰의 경우, 의뢰에 있어서 보호관찰관은 대상소년과 BBS회원과의 공통점, BBS

23) 예외적으로 직장단위의 조직이 있다.

회원이 제공 가능한 갱생보호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과 BBS회원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관이 동석하여 소년과 BBS회원과의 상황을 판단하며, 이에 의하여 BBS회원은 소년에 대한 친구활동이 시작되며, 소년을 위한 행사 등을 기획하여 함께 참가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BBS회원은 정기적으로 소년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中村金彦, 1985: 145)

(나) 비행방지와 사회계몽운동으로서의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BBS조직의 활동의 하나로 중요한 활동은 매년 실시되는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에의 참가 및 협력이다.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은 모든 국민이 범죄 및 비행은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대한 이해를 넓혀 범죄 및 비행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전국적인 국민운동이다.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은 1949년의 ‘범죄자예방갱생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동경의 銀座연합회원에 의해 실시된 ‘범죄자예방갱생법기념페어’와, 1952년 7월의 ‘범죄자예방갱생법’시행 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교정보호캠페인’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다.

일본 법무성은 ‘銀座페어’와 ‘교정보호캠페인’을 통하여 범죄의 방지 및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일반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51년부터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을 전국적인 범죄예방 행사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운동의 중점목표는 범죄자 및 비행소년도 언젠가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지역의 일원으로써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 그들의 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함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의 이해와 협력은 불가결한 것으로 범죄 및 비행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이 결국은 범죄 및 비행의 방지에 연결된다고 하는데 있다.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의 실행조직으로서는 ‘중앙실시위원회’ 및 都府縣

및 市區村 등을 단위로 하는 ‘실시위원회’ 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다) 연구활동

연구활동은 BBS운동의 실천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활동이다. 즉 연구활동은 토모다찌활동, 비행방지활동과 함께 BBS활동의 중심활동으로 토모다찌활동과 비행방지활동이 BBS활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려 하는 활동인 것에 대하여 연구활동은 이것들의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활동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체적인 연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은 주로 BBS회원 중앙연수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가 그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것과는 별도로 각 지역의 보호사회 및 갱생보호부인회와 공동으로 실시되는 연구활동이 있다. 이와 같은 다른 민간협력단체와의 공동연구에서는 소년비행방지 등에 관한 의견교환과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비행방지활동의 공동실시 등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 외의 BBS회원에 의한 활동으로서는 보호관찰소에 의해 실시되는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을 노인 홈이나 복지시설 등에 있어서의 개호활동, 청소활동, 체험학습 등의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것에 의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참가활동’이 보호관찰처우의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대상소년의 사회참가활동에 있어서 BBS회원에 의한 공동참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BBS회원의 공동사회참가는 대상소년에 대한 처우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 갱생보호여성회

갱생보호여성회란 어머니의 입장으로 지역사회에 범죄 및 비행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방지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증진시키고 비행소년의 개선갱생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갱생보호여성회의 활동으로는 범죄예방 활동,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활동, 보호사조직 및 BBS회에 대한 협력 등을 중심적인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갱생보호여성회의 역사는 태평양전쟁 전 소년보호활동을 목적으로 부인소년보호사 등에 의해 조직된 ‘소년보호부인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은 1964년에 전국조직인 ‘갱생보호부인협의회’의 결성에 의해 전국적인 활동망을 구축하게 되었다(安形靜雄, 1998: 32).

갱생보호여성회의 참가자격으로는 그들의 취지에 찬성하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이다. 회원으로서의 특별히 규정된 자격제한이 없고, 다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만을 요구함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열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갱생보호여성회의 활동조직으로는 ‘일본갱생보호여성연맹’에 ‘지방갱생보호여성연맹’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갱생보호여성회가 실시하는 활동의 주요사항을 처리하며 각 지방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총회)에 있어서는 갱생보호여성회의 사업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갱생보호여성회의 지역회의 수는 1958년에 일본전국에 428개의 지구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에는 약1,000개를 넘는 지구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1999년에는 1,296개까지 증가하였다.

회원수는 1958년에 약30만 명이었던 회원이 1966년에는 50만 명을 돌파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로는 점차 감소경향을 보여 1987년에는 17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여 현재에는 약2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갱생보호여성회의 활동으로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 및 비행방지 활동, 시설에의 협력, 지원활동 등이다. 또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에의 참가도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갱생보호여성회에 의한 범죄 및 비행예방 활동은 보호사회에 대한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활동이었으나, 이후부터는 갱생보호부인회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범죄 및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도서의 판매규제운동 및 미니집회의 개최 등은 각지의 지역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니집회의 내용으로는 범죄, 비행, 이지메 문제, 교육, 지역환경문제 등 광범위한 지역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미니집회의 실시에 의해 지역적 연대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 및 비행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년약물범죄의 방지를 위한 'Stop the Thinner'운동 등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유해도서의 판매규제운동은 유해도서 자동판매기의 철거 및 유해도서의 판매규제를 목적으로 실시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지역의 갱생보호여성회가 중심이 되어 유해도서의 판매실태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규제신청 등을 실시하여 1978년에는 일본 총리부에 의한 '잡지 등 자동판매기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갱생보호여성회가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전국소년보도원협회²⁴⁾

전국소년보도원협회(全国少年輔導員協會)는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평성5년에 공인법인의 자격을 갖게 된 소년 관련 민간자원봉사자단체의 총연합회이다. 소년보도원, 소년경찰협조원, 소년지도위원 등이 소속되어 있고 감독관청은 경찰청 소년과이다.

조직은 전국 44개 道都府縣에 각 지부가 있고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24) <http://zenshokyo.ecs.or.jp>

있는데, 현재 전국협회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사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6만 여명의 별런티어가 있고 도쿄지부에만 1,7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전국협회이다.

전국소년보도원협회는 매년 ‘소년문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학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별런티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소년보도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심야에 배회하거나 길에서 음주·흡연하는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훈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소년경찰협조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폭력단에 있는 청소년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소년지도위원은 공안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풍속영업을 단속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민간자원봉사자는 모두 앞에서 소개한 경찰의 소년지원센터를 돕고 있다.

(6) 시사점

일본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단체에서의 명확한 목표설정은 활동의 적정성과 지역 특성에 합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각각의 활동의 공통점으로서 민간자원봉사자에 의한 협력의 활발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참가는 경제적인 측면 및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헌신과 사명감이 결여된 민간자원봉사자의 위축은 조직의 거대화를 불러일으킬 뿐, 그 실효성도 거의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통제기관으로써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민간의 협조는 그 목적달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활동의 의지와 그에 대한 통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일본의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비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사례분석

1. 조사방법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현황과 개선방안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현황과 개선방안
4.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

Ⅲ.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사례분석

1. 조사방법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현황 뿐 아니라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심층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다.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관한 현장전문가 면접조사의 문항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첫 번째 영역은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소속기관과 재직기간, 담당업무, 직책, 성별, 연령 등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영역은 조사대상 시설과 단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시설, 인력, 예산, 대상청소년, 생활보호서비스, 비행예방 사업, 홍보·협력활동, 프로그램 개발·평가,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 등 시설과 단체의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과 사업내용에 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각 시설과 단체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 영역은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나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이 역시 현황을 알아보는 문항과 동일하게 시설, 인력, 예산, 대상청소년, 생활보호 서비스, 비행예방 사업, 홍보·협력활동, 프로그램 개발·평가,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로 영역을 나누어 질문하면서 각 영역별로 치중해야 하

25) 문항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연구진이 임의로 구성하였다.

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네 번째 영역은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역할 구분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해 알아보는 문항이다. 청소년 시설과 단체의 유형화, 청소년보호 시설의 특성화, one-stop service, 중앙기구로서의 지역사회센터, 시설과 단체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청소년보호 시설에 관한 청소년 면접조사의 문항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조사대상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연령, 가정환경, 가출 경험, 문제행동 경험, 현재 상태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 영역은 시설 경험에 관한 문항이다. 현재 시설에 오게 된 경로와 현재 시설의 장·단점, 유관 시설 경험에 관해 알아보았다.

세 번째 영역은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나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시설, 인력, 대상청소년, 생활보호 서비스, 홍보·협력활동으로 영역을 나누어 질문하면서 각 영역별로 치중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수요도를 알아보았다.

네 번째 영역에서는 중앙기구로서의 지역사회센터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은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이중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전문가가 10명,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전문가가 10명이다. 시설의 특성은 쉼터 3개소,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3개소, 그룹홈 2개소, 일시보호 시설(긴급보호소, 드롭인센터) 2개소이다. 시설의 보호대상 청소년 성별은 여성 3개소, 남성 1개소, 혼성 2개소이다. 보호기간은 일시 2개소, 단기 3개소, 장기 5개소이다. 단체의 특성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된 곳이 7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청소년보호단체의 주된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치우쳐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소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2명, 남성이 8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37.7세이고, 최고연령은 53세, 최저연령은 23세이다. 재직기간은 평균 4.8년이고, 최장기간은 14년, 최단기간은 6개월이다. 직책은 시설장·센터장 등 책임자급이 5명, 국장·실장·부장·팀장 등 중간책임자급이 6명, 실무자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소속 시설과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9개소, 인천시·경기도 3개소, 강원도 2개소, 대대전시 2개소, 전라도 2개소, 부산시·경상도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

구분	사례 번호	소속 시설 단체 특성			성별	연령	재직 기간	직책	지역
		시설구분	보호성별	보호기간					
시설	1	쉼터	여성	단기	여성	35세	8년	실장	서울시
	2	쉼터	남성	단기	여성	23세	9월	실무	서울시
	3	쉼터	여성	단기	여성	42세	11월	실장	대전시
	4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여성	1년 (연장)	여성	46세	8년	시설장	서울시
	5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여성	장기	여성	43세	4년	실무	경상도
	6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여성	1년 (연장)	남성	41세	14년	실무	전라도
	7	그룹홈	혼성	4년	남성	46세	13년	시설장	경기도
	8	그룹홈	여성	장기	남성	39세	7년	시설장	강원도
	9	긴급보호소	여성	일시	여성	35세	2년	실무	서울시
	10	드롭인센터	혼성	일시	여성	53세	1년	실장	인천시
단체	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성	34세	4년	팀장	서울시
	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성	31세	5년	부장	서울시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성	36세	4년	실무	인천시
	1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성	25세	3년	실무	강원도
	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성	51세	7년	국장	대전시
	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성	27세	6월	실무	부산시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성	31세	5년	실무	전라도
	18	청소년센터			여성	45세	2년	센터장	서울시
	19	청소년센터			여성	32세	3년	실무	서울시
	20	청소년센터			여성	39세	4년	센터장	서울시

〈표 III-2〉 조사대상 보호시설 청소년의 특성

구분	사례 번호	성별	연령	가정환경	가출경험	문제행동 경험	현재 상태
쉼터	21	여성	15세	부모이혼 후 모와 생활	중1때 처음 모 애인의 강간 때문에	음주 흡연 뺑뜨기 꺾치기 폭주 등	시설 생활
	22	여성	17세	부모와 생활 부 폭행 심각	고1때 처음 부의 폭행으로	없음	시설 생활
	23	여성	14세	부모이혼 후 부와 생활 부 알코올중독 여자관계 복잡	중1때 처음 별 이유없이	음주 흡연	시설 생활
여성 지원 시설	24	여성	16세	부·계모 계모와 갈등	계모와의 갈등으로	티켓다방 원조교제	미용 학원
	25	여성	17세	모·오빠 가정 복귀 희망	가정빈곤으로	티켓다방 원조교제	미용 학원
	26	여성	15세	모·계부 가정불화	가정불화로	티켓다방 원조교제	아르 마이트
	27	여성	17세	부·계모 부 폭행 심각	부의 폭행으로	티켓다방 원조교제	자취 중학 3학년
그룹 홈	28	남성	17세	모 사망 후 부 폭행 심각	없음	없음	고교 2학년
	29	남성	14세	빈곤으로 인해 부와 별거	없음	없음	중학 2학년
	30	남성	12세	부의 알코올중독으로 모자 폭행 심각	없음	없음	초등 6학년

조사대상 보호시설 청소년의 특성은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15명이었으나 5명은 응답에 소극적이어서 최종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10명이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3명,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4명,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쉼터와 여성지원시설의 청소년 8명은 모두 여성청소년이고, 그룹홈의 청소년 3명을 모두 남성청소년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4세이고, 최고연령은 17세, 최저연령은 12세이다. 이들 중 그룹홈 생활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출과 문제행동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한편 쉼

터의 청소년은 모두 단기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반면, 여성 지원시설의 청소년은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2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1명, 시설을 퇴소한 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이 청소년은 이미 시설을 퇴소하였으나 시설장의 주선으로 이 면접조사에 특별히 참여해 주었다가 1명이며, 그룹홈의 청소년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

2. 청소년보호 시설의 역할 현황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보호시설로 규정지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과 드롭인센터(긴급, 일시보호소 포함), 그룹홈 등이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0군데 시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앞의 <표 III-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0군데 시설은 3개의 쉼터, 3개의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2개의 그룹홈과 1개의 드롭인센터, 1개의 일시보호소이다.

1) 청소년보호 시설의 역할 현황

(1) 기초정보

가. 보호시설의 일반적 특징

가) 운영목표

먼저 시설들의 운영목표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와 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은 성매매에 관련된 10대 소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앞날을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사례1>.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사례2>.

10대 성매매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사례 5>.

또 그룹홈은 특정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빈곤이나 기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원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사례7>.

“자신의 자립 준비”를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원 가정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례8>.

한편 드롭인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특정 문제 청소년들 뿐 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및 일반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지원 서비스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사례10>.

마지막으로 긴급보호소는 그 기능에 있어 짧은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는 드롭인센터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드롭인센터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들은 긴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위험 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기관의 목표는 위험 노출 청소년의 1차 보호를 통하여 2차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쉼터나 그룹홈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갖지 않게 도와주고, 보호시설에 연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사례9>.

위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시설들의 설립 시기를 보면 1990년 이후로 청소년보호 시설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1>과 <사례6>의 설립연도가 1992년이고, <사례7>은 1993년에 만들어졌다. 이때는 우리사회나 정부가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시설들의 설립연도를 보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설치되고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는 맥락과 거의 일치한다. 10개의 시설 중 70%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설립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이 시설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인가여부, 감독관청 및 위탁기관

10개의 보호시설의 인가여부와 감독관청, 그리고 위탁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가 및 신고시설이 8개, 미인가 시설이 2개였으며, 8개의 인가 및 신고시설의 감독관청은 중앙부처가 3군데였고, 나머지 5개 시설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구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보건복지부를 감독관청으로 두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여주시, 창원시, 강서구청 등이었다. 보호시설의 위탁여부를 보면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8군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군데 시설은 직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 보호업무의 비중

여기서 말하는 보호업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출과 비행 예방하고 가출과 비행청소년의 치료 재발을 돕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제시된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보호”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과 상담 등은 협의의 보호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10개 시설 중 8개)은 전체 업무 중 보호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데 반해 그룹홈 1개와 드롭인센터 1개에서는 보호 활동이 30% 정도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개 시설 중 그룹홈은 위험노출 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와 구호가 필요하지만 비행이나 문제의 정도는 약한 빈곤청소년들(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을 위한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협의적 의미에서의 보호 업무라기보다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보호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호업무의 낮은 비중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드롭인센터는 청소년이 모이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당면문제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

원기관이나 치료기관을 찾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주된 임무이므로 그 대상은 전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문제청소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호업무의 낮은 비중을 설명할 수 있겠다.

나. 물적 자원 및 주변 환경

물적 자원은 시설의 규모와 설비를 말한다.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활동공간의 확보와 함께 교육이나 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는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도 반영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쉼터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시설설치기준으로 숙식시설과 단체활동실, 그리고 상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소유상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8곳은 주택형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2곳은 상가형태의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인 경우 5곳은 소유를 하고 있었고, 두 곳은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1곳은 주택 한 채는 소유하고 한 채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상가인 경우는 두 군데 모두 임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시설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보면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4군데이었고, 복합지역, 즉 주택가와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곳이라고 응답한 곳이 4군데이었으며, 1군데는 상업지역에, 1군데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평수로 알아보았는데, 작게는 17.5평에서 크게는 1600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가 산재해 있었다. 조사대상 시설 중 가장 작은 곳은 드롭인센터였는데, 이 센터는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잠깐 들려서 정보를 얻고, 리플릿을 받아가거나 하는 등의 업무가 중점이고, 숙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설을 보면, 쉼터와 성매매청소년 보호시설, 긴급보호소, 그룹홈 등은 일

반적으로 침실과 거실, 식당(부엌), 그리고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드롭인센터는 침실이나 취사시설은 없이 상담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매매소녀 보호시설 중 상당히 규모가 큰 곳에서는 노래방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기자재는 주로 TV, 컴퓨터와 오디오가 주종을 이루었다.

다. 인적 자원

청소년 보호시설의 인적자원의 규모와 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력규모를 전임과 파트타임, 그리고 자원봉사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자격증의 소유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임인력의 인원과 구성을 살펴보면,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는 전임 직원이 단 1명 있는 곳도 있었으며, 많은 곳은 9명에 이르고 있었다. 구성은 주로 시설의 장과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인력,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과 접촉하며 같이 생활하고 도와주는 인력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 미용사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 등의 자격증을 가진 가지고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파트타임 인력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에서는 파트타임 인력이 그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곳의 시설 중 파트타임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3곳이 있었고, 취사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였으며,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비교적 많은 수의 파트타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두 군데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

자원봉사자 활용정도를 보면 파트타임 인력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삼성이나 한화·LG그룹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자원봉사를 하는 곳도 있었고, 프로그램 진행이나 멘터링을 위해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습지도나 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미술치료나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영역에서도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눈에 띈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다면 시설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탁기관에 계신 부모교육 강사 분들, 열다섯 분이 하루에 한명씩 나오세요. 이 분들은 모두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돈 일천 한푼 안 받고 봉사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미술치료나 장기상담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구요. 이 분들은 차비 정도 드리고 있어요. 두 분보다 더 많으면 좋을 텐데<사례10>.

라. 예산

청소년보호시설이 보호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풍족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시설의 활동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산의 출처를 보면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위탁기관으로부터의 보조비나 후원금 등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였으며, 활동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수익사업²⁶⁾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것으로 활동

26) 허브차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여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다른 수익사업 없이 지원 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개인의 후원금이나 단체의 후원금이죠. 하지만 개개인들의 액수가 더 커요. 그리고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재정이 매우 부족한 이유는 국비지원이 프로그램비로 총 예산의 10%정도만 지원되거든요. 국가 보조는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후원금도 끊기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국가지원이 더 많아지지 않는 이상 재원 확충방안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감독 관청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윗분이 계시면 지원도 없거든요.

마. 대상청소년의 특성과 탈락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설에 따라 대상청소년을 특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대상청소년이 같은 경우가 많다. 즉 대상으로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쉼터의 대상청소년과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의 대상청소년, 나아가 긴급보호소의 대상청소년이 유사하다. 또 그룹홈의 청소년들이 쉼터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의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드롭인센터는 특정 문제유형의 청소년에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시설들과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청소년은 드롭인센터를 통해 쉼터나 그룹홈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시설의 명칭이나 감독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 시설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

<표 III-3> 조사대상 보호시설의 특성

사례 번호	시설 구분	대상청소년의 특성	대상청소년의 성별	연령 범위	보호 기간	충원방법	중간 탈락율
1	쉼터	가출과 성매매	여성	12세 - 20세	1개월 - 6개월	80%는 자발적 20%는 학교나 경찰의뢰	10%
2	쉼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남성	평균 17살	1개월 - 6개월	아웃리치 자발적, 경찰, 학교가 의뢰	10%
3	쉼터	가출소녀	여성	9세 - 24세	6개월	아웃리치 드롭인센터에서 인계하거나 관련기관 인계	40%
4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여성	13세 - 19세	1년	경찰 및 성매매상담소의뢰	20%
5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여성	13세 - 20세	본인이 원할 때까지	경찰 및 학교에서 의뢰	6 - 7%
6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여성	19세 까지	1년 (연장가)	상담소나 경찰에서 의뢰	10%
7	그룹홈	학대나 가출, 빈곤청소년	여성과 남성	10세 - 21세	4년	시군구기관 의뢰	5%
8	그룹홈	보호처분 종료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소녀	여성	14세 - 19세	1개월 - 3년	위탁기관에서 의뢰	70%
9	긴급 보호소	성매매 피해자	여성	13세 - 20세	가출청소년: 1-2일 성매매피해자: 7일	긴급전화나 경찰의뢰	0%
10	드롭인 센터	다양한 청소년(문제청소년은 약10%)	여성과 남성	14세 - 19세	1-2일	입소문	0%

대부분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3군데에 불과하다.²⁷⁾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문제에 덜

27) 세군데 중 오직 남자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은 단 하나이다. 물론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청소년보호”가 여성청소년의 “성문제”에 기울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보호시설이 여성청소년에게 쏠려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현상파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범위는 대부분이 평균 17세 정도라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상, 또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호기간을 보면 시설별로 어느 정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수 있다. 먼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보호대상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는 시설은 긴급보호소와 드롭인센터로 이 시설들은 보호기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청소년쉼터는 보호기간이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이고 여성청소년 시설은 1년 정도이며, 그룹 홈이 가장 길어 3~4년까지도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기간을 보면 일시(긴급)보호, 단기보호, 중장기 보호 시설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즉 가출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긴급보호소나 드롭인센터에서 쉼터로 연계되거나 여성청소년시설로 연계되고, 다시 더 장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룹 홈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호대상 청소년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계속 “보호”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문제점을 지적할 때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그 다음 시설들이 어떻게 보호대상 청소년들을 발굴해 내는가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쉼터들은 주로 아웃리치(outreach)로 현장에 나가 직접 대상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받고 있다. 물론 드롭인센터에서 연계받기도 하고 경찰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져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성찰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쉼터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이 여자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자청소년의 성매매와 가출이 최근 우리사회의 지배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자청소년이 성매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의 보호문제는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버리거나 없을까 염려가 된다.

성매매피해 소녀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의해 의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청소년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소녀들은 처벌하지 않고 훈방하거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의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룹 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시군구기관에서 의뢰하거나 <사례8>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이 그룹 홈에 해당 청소년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긴급보호소의 경우는 긴급전화, 또는 경찰에 의해 인계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고, 드롭인센터는 현장에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각 시설의 탈락률을 보면 긴급 또는 단기보호활동을 하는 시설에서는 탈락률이 없고 쉼터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은 10%에서 높게는 40%정도의 중간 탈락률을 보인다. 중간탈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게 되겠지만, 일단 규율이 엄하고 대상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할수록 탈락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다. 시설들이 탈락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대상청소년들이 “보호”를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한 중간탈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사업내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실적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 시설들의 중점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10개의 시설을 쉼터, 여성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그리고 일시 및 긴급보호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업내용은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보호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둘째가 비행예방사업, 셋째가 홍보 및 협력사업, 넷째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평가, 다섯째가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내용,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이 외의 사업이 그것이다.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기본목표가 가출 및 문제청소년을 수용하여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도 수용보호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례1>은 가출청소년을 일시 또는 단기로 보호하면서 숙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해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귀중함을 알게 하고, 나아가 수입의 50%를 저축하게 하고, 선생님이 재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관념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직업훈련기관 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과 전화상담, 내원 상담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놀이 치료와 미술치료 등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고,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정보검색과 이메일 수신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채팅은 금지하고 있다(부록의 청소년쉼터 생활규칙 참조). 수용보호를 위주로 사업을 하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등 비행예방사업은 가출예방활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잠재적인 대상청소년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고, 쉼터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심야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거리상담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여성학자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쉼터에서 시행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시행 후 만족도와 참여자의 수로 평가를 하고 있다.

<사례2>도 가출청소년보호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로 연인원 약 150명 정도의 청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있다. 미술을 통한 교육, 자아 찾기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학교에 보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쉼터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또 거리상담을 통해 대상청소년을 물색하는 동시에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9월에서 12월까지 강서구 22개동에서 아웃리치를 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업소가 많은 곳들이죠. 게임방,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들이 밀집된 곳에서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쉼터를 소개하구요, 업소 분들이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발견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소개하고 본부로 데려가서 상담을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낼 건지, 어디 다른 쉼터로 보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관이나 상담소와의 공동사업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복지관으로부터 전문가 자문과 협력은 받고 있다.

<사례3>의 경우 연인원 2,500명 정도를 수용 보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와 종합병원에 보통으로 입원한 경우도 있죠. 한번은 심한 보통으로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경성이라고 하더라구요. 정신병원의 낮병동 같은 곳에 있기도 했지요. 쉼터같은 데서는 서로 견디지 못해서 병이 낫기도 어려워요. 아이들이 심하게 괴롭히구요. 정신적 쉼터가 필요해요. 여기는 집단수용형태가 아니고 개별실이 꼭 필요한 곳이죠. 자기방은 인격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단기는 공통으로 하더라도 장기의 경우에는 특별화가 필요하죠. 개별방이 있고, 치료실과 간호사와 심리치료가 있는... 낮병동이 병행되면 좋겠죠.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가 필요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 보호시설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때 특히 정신적 치료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용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미용학원이나 여성센터 등을 이용해 직업훈련과 자립지원 등 재활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 야외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예방사업은 특별히 시행된 것이 없고, 시설홍보는 메스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상담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TV에서 와서 우리를 홍보했죠. 거리상담을 한 달에 2번 하고 있구요. 주말에 해요. 야간 강의도 하죠. 아웃리치는 해변아웃리치를 말해요. 주말을 이용해서 한 달에 2번 하고 있죠. 전단지와 리플릿도 배포가 되고 벽보와 스티커도 상가나 대학가, 터미널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 홍보를 병행하고 있어요.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조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쉼터 간 의뢰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

그룹홈, 여성직업보도원, 다른 쉼터에 의뢰하죠. 안동쉼터라고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가정적인 분위기로 안정된 곳이에요. 대전에서는 남자쉼터와 여자쉼터, 드롭인센터, 위기지원, 아웃리치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연계가 잘 되고 있고 역할 중복도 피하기 쉽지요. 저 선생님도 남자쉼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가 더 잘되죠.

청소년쉼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쉼터의 목표가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수용보호이다 보니 대상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재활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예방 사업, 예를 들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쉼터 간 청소년의 의뢰는 자주 일어나는 데, 쉼터마다 특성이 있어 대상청소년이 더 잘 적응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쉼터의 큰 역할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쉼터마다 다르므로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미술치료와 문화 활동이고, 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통한 가치관 정립과 예절교육 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의 설립목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다. 성매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사례4>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수용보호서비스의 면에서는 지난 한해 105명의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였고, 성교육과 약물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또 직업훈련과 자립지원을 도왔으며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시행하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과 사회기술훈련도 시행하였다. 비행예방사업의 면에서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홍보활동으로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잡지에 시설홍보를 게재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룹 홈이나 다른 쉼터, 직업훈련학교 등 유관기관에 청소년을 의뢰하고 있으며, 여성지원시설협의회와 한소리회에 소속되어 네트워킹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늘푸른여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호사, 목회상담학 교수 등으로부터 자문과 협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 상을 탈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쉼터는 타 시설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Care하기 힘든 친구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쉼터보다 규율이 엄하지 않고 거주자 자율성에 맡겨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자는 힘

이 들지만 거주자들에게는 컴퓨터생활을 편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점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나 거주자 욕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개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컴퓨터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이 타 기관에 의뢰 했을 시 수척이 엄격하여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으면 어디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실무자들이 우리컴퓨터의 자랑입니다.

<사례5>는 성매매청소년의 지원시설로 매우 유명한 시설이다. 시설의 물리적 규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만 설비와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도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보호서비스 뿐 아니라 비행예방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시설의 수용보호서비스 중 특이한 것으로 답변한 것은 하우스미팅제도와 용돈지급, 생일잔치이다.

하우스미팅 : 매주 월요일, 한 집에 식구들의 생활 속의 얘기 나눔의 시간. 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금주에 논의 할 사항, 공지사항, 건의사항, 소녀들의 성장부분을 함께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 갈등상황 발생 시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문제창고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녀들 각자의 의견을 내고 논의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용돈지급 : 2회, 15일 단위로 용돈지급. 소녀 자신들에게 필요한 약세 사리 및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용돈 기입장을 적도록 하여 용돈을 계획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이끌어 준다.

생일잔치 : 소녀들의 생일날 아침에는 식구들과 미역국을 함께 먹고, 저녁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일축하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

간을 보낸다.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입소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신경정신과, 산부인과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 이색적인 것은 『테마여행』이라고 이름 붙여진 활동으로 계절마다 식구들이 모두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다. 대안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을 통한 『가출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결혼가정과 실업가정의 증가, 성개방 풍조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청소년들의 가출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서 체계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대표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통해 보다 나은 성매매 피해 소녀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드는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⁸⁾

<사례6>의 활동은 수용보호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비행예방사업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공동사업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없다. 수용보호 대상 중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나 미용기술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성교육, 사물놀이, 탁구, 재즈 등을 교육활동으로 시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13년 정도 직업재활시설로 사업을 해 오다가 올해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로 전환한 시설로 이러한 사정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약

28) 이 시설은 여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될 만큼 선도적인 여성지원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의 사업을 보면 쉼터와 마찬가지로 수용보호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생활과 교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생활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성매매피해소녀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있는 반면에 나타난 사업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로 특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알맞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되는 시설도 있는 듯하다.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 그리고 상담이나 교육활동의 내용에서도 청소년쉼터와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소녀 지원시설로서 ○○○쉼터라는 시설 명을 쓰고 있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쉼터와 여성청소년지원시설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룹홈

<사례7>과 <사례8>은 그룹홈으로 유형화되었지만 그 대상청소년의 특성은 좀 다르다. <사례7>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빈곤과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 된 시설이지만, <사례8>은 비행청소년들의 집단생활 공간이다.²⁹⁾

<사례7>의 활동내용을 보면 학대 및 빈곤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신경정신과, 피부과, 치과치료를 제공하며,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지도 등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비행예방사업은 활동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설홍보도 별개로 진행한 것은 없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군구청, 쉼터 등에서 지원의뢰가 행해진다. 유관기관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민간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9) <사례7>의 시설을 방문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제기되었다. “기서 보호, 양육중인 청소년들은 가출, 비행청소년 이라기보다는 가정해체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그룹 홈에 위탁의뢰를 하는 경우, 그룹 홈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해 주었다.

현재 그룹홈은 법정 시설이에요. 상담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보호자가 있고 이들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면 아동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학대사유가 없는 한 입소가 어렵습니다. 특히, 적응상의 문제일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입소가 어려운 형편이다.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입소를 의뢰한다면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없었기 때문입니다.

쉼터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입소 요인이 되지만, 그룹홈은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미아를 부모 허락 없이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또한, 학교의 전학과 취업, 주민등록 이전에 어려움이 있구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입소정원이 됐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쉼터와 그룹홈의 차이가 확연히 부각되는데 쉼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소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그룹홈은 보호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쉼터가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도 이 두 시설간의 큰 차이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일단 청소년을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점으로 간주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틀을 깨드리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견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사례8>은 보호처분 시설에서 6개월의 위탁기간이 종료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소녀들을 위한 집단생활 공간으로 설립된 곳이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생활과 교육이 함께 병행되는 생활지도를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일반적 특성에서 중간 탈락률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다음의 자체평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소했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지 못했다. 2004년 입소했던 10명의 평균 생활기간이 약 68일 정도이다. 1개월 미만이 5명, 1~2개월이 2명, 3개월~4개월이 1명, 6개월 이상이 2명이었다. 그룹홈에 상주하는 전담 선생님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결국 인건비 예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예산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입소자들의 관리체제나 훈련방안, 교육프로그램이 미진하다. 즉,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미진한 상태다.

그룹홈도 집단생활 공간으로 앞서 소개된 쉼터나 여성청소년지원시설과 공통적으로 생활지도(수용보호와 상담, 교육 등)에 힘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은 그룹 홈은 다른 시설에 비해 비행예방사업이나 홍보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라. 긴급보호소

긴급보호소는 중장기 보호시설로 인계되기 위해 적절한 시설을 찾아내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 등의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긴급보호소에 일단 입소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긴급보호소에 오는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등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이들 중 일부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나, 장기 가출 청소년들이 긴급구조에 의해 이곳에 오면, 임신문제가 걸린 친구들(청소년)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애를 낳으라고도 할 수 없고, 낙태를 하라고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선택에 맡기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낙태를 원해요. 그래서 한번은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진료비를 지출을 했더니, 걸렸어요. 낙태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데 왜 해주냐,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운영경비에서 낙태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계속 발생이 되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시설에 가서 애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본인들이 안 낳겠다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안도와주면 분명히 나가서 조건만납해요. 한 두 번만 하면 낙태비용 별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실에 부탁해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도 성폭력에 크게는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낙태비용에 한해서는 거기서 지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끔 저희에게 긴급구조가 폭주해서 과부하에 걸리면 내일여성센터에다 몇몇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긴급보호소의 역할에 대해서 시설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저희 시설 자체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단체와 달리 ‘위기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상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면 서비스의 주 대상이 위기청소년인 관계로 사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관리하는 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사례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쉼터와 같은 시설로 입소를 할 경우 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가정으로 귀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례관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언제든지 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나 사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한번 긴급구조 되었던 청소년들이 두 번, 세 번 까지도 긴급구조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 드롭인센터

드롭인센터도 긴급보호소와 유사하게 위기청소년 및 일반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간의 수용보호는 없으나 원하는 청소년들이 잠자거나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미술작업을 통한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우선 갖가지 구급약을 비치해 놓고 있어요. 생리대까지 항시 보유하고 있고요. 상습가출아이, 이런 아이들은 주로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다쳐서 오면 병원에 데려가서 무료로 치료를 다 해주고 있어요. 주로 팔 같은 곳이 부러져서 오곤 하죠.

미술기법을 통한 심리치료도 제공된다.

미술작업 치료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죠. 그냥 미술치료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면을 오픈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오픈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오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미술작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 속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요.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정보와 도구의 제공도 성교육의 연장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성교육, 저희는 많이 시키고 있어요. 사실, 여기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 접촉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희는 콘돔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밖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하루에 30~40개 정도가 나가요.

또, 밖에 써 붙여 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신테스트 약을 받아갈 사람은 들어오라고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주로 콘돔이나 임신테스트 약을 주면서 꼭 성교육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주지를 않죠.

시설홍보는 거리에서 리플릿을 배포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홍보 없이도 많이 청소년들이 오고 있다고 한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도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에 천막을 설치해서 간단한 심리검사를 7가지 정도 마련해서 실시하구요. 리플렛도 비치하구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설문조사도 하면서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쉼터, 아동학대센터,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쉼터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쉼터로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기가 싫데요. 쉼터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규율이 심하죠.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자유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출을 한 아이들이니까요. 쉼터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친구끼리는 같이 받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공동체적인 느낌을 받기도 무척 힘들구요. 또, 쉼터에 가보면 분위기 자체도 침침...해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단지 잠자리만을 제공해주

는 “노숙쉼터”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네트워킹을 잘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설들이 청소년들의 외면을 받지 않는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2) 청소년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보호 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와 문제점들은 보호시설의 성격(쉼터나 성매매여성지원시설이나 그룹 홈이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별로 역할수행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살펴볼 도록 하겠다.

(1) 청소년쉼터

가. 인가의 필요성

먼저 사례조사와 심층면접의 대상이 되었던 3군데의 쉼터 모두 청소년보호시설의 인가여부에 대해서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비인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다.

만드시 인가가 필요해요, 인가시설은 행정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미인가의 경우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사례1>.

인가되지 않은 곳 중에도 좋은데도 많아요. 하지만, 감시가 안 들어가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면, 구타나 학대 사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독관청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줄여줘야 제대로 청소년 보호 시설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사례2>.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재정의 사용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이라도 받아야 한다<사례3>.

물론 세 개 시설이 모두 이미 인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인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비인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시설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선입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가를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닌 가 싶다. 다만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지나쳐서 실제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감독관청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나. 대상청소년의 특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청소년을 분류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대상청소년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성별, 보호기간별, 또 문제유형별로 대상청소년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정신질환자를 위한 쉼터와 동성애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보호기간별로는 드롭인센터에서 단기시설을 거쳐 중장기 시설로 이어지는 보호기간별 시설분류를 통해 보호대상 청소년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물 흐르듯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쉼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가출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문제유형별 시설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문제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어느 한 유형에 전문화(specialize)되

어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그 기저에는 공통적인 문제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발현되는 행위양식에 따라 쉼터를 구분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쉼터에 머물고 있는 한 소녀의 얘기를 통해, 이들의 문제행동이 전문화되어 있기 보다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골고루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해봤어요. 뺑뺑기, 아리랑 치기, 술 취한 사람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구요, 오빠들이 하고 나는 기다렸어요. 오빠들이 보고만 있으래요. 그리고 차비 없다고 사람들에게 차비 달라고 하기, 별거 다해봤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폭주 하는 것, 술 먹는 것, 많이 먹을 때는 소주 8병도 먹었어요. 그리고 담배, 아! 헌팅, 번개탕. 남자애들 만나서 술 마시고 여관 가서 놀다가요, 섹스도 해요. 맨 처음엔 중학교 2학년였어요. 친구들, 오빠들이랑. 콘돔사용해요. 임신했던 적은 없어요. 참, 펌치기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사례21>.

다. 중간탈락자의 문제와 방지방안

시설이 당면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중간탈락자의 문제일 것이다.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문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을 집단생활이라는 틀 안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중간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간탈락자 문제를 청소년 개인의 비행적이고 일탈적인 성향이라고만 간주하지 않고 그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탈락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지를 끊임없이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운영자의 다음의 말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심리지원을 하는 가족형을 추구해서 아이들이 지지를 해주는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면 탈락률이 낮아지겠죠. 혜택도 좋아야 하고 부대시설도 좋아야 해요. 빈곤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기고 일어났지만, 물리적인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예요. 그래서 쾌적한 공간과 문화시설 제공이 필요하죠. 공부는 잘 못하지만 끼는 많은 친구들이예요. 노래방 시설, 댄스연습실, PC사용실 등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자유로운 것은 인정하지만, 방중은 안돼요.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설 내에서 작은 친구에게 뺨을 뜨기도 했어요. 성인의 경우 이렇게 하는 건 위법이에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재했어요. 반성문 쓰고 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받는 벌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어요. 사랑은 하되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죠.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면 따라와요. 하지만 신경질 적으로 하면 반항을 하겠죠<사례3>.

사실 중간탈락자의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충실성일 것이다. 물론 쉼터라는 곳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중간탈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중간탈락 방지방안은 시설의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는 애들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싸우는 게 많아요,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면 퇴소당하니까. 규칙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구타도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21>.

생활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외박, 외출 어유! 전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혼자 생활하다가보니까 전화, 저는 전화 없이는 못살거든

요, 불안증이라고 해야 되나, 전화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전화도 없고 핸드폰이 없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외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일을 하다가 일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일을 그만두고 여기 온거거든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밤늦게까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못하고 그게 좀 답답해요. 그리고 외박 받으면 늦게까지 놀고 싶어요, 아니 여행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답답한 거 풀려고요<사례22>.

외박은 다른 데는 되는데도 있는데 집밖에 외박이 안돼요. 담배는 밖에서는요 하루에 2갑이나 3갑 정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4대밖에 못핀다는 그 사실이 좀 그래요. 저는 그래도 몇 달 있어서 적응이 되긴 되는데요. 힘들어요. 그리고 외출은 너무 짧아요. 시간이. 9시까지 들어와야 하는 시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사례21>.

시설을 떠나거나 옮기는 데에는 시설의 규모나 규칙의 엄격함도 있지만 시설여건이 좋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도 있어봤어요. 00쉼터랑요, XX쉼터랑, 이름은 모르겠는데 인천에 있는 쉼터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이 두 번째예요. 00쉼터는 짱 좋아요. 거기에는 용돈도 줘요. 일주일에 3000원 씩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벌어야 되요. 벼룩시장에서 벌어서 그걸 똑같이 또 나눠요. 그리고 00쉼터는요 핸드폰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노래방 기기도 있고요, 당구장도 있어요. 거기가 짱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원이 30명이나 돼서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타가 있어요.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그거 알면서도 신경도 안 써요. 말로만 때리지 말라고 해요. 거기에는 노는 언니들이 많거든요. 남자들 만나고.... 그 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노는 언니들이라서 같이 있다가 나도 같이 놀러 다닐까봐서요<사례21>.

시설 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구타나 갈취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도 청소년들을 시설에서 내모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담당자들의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

라. 프로그램의 문제

시설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부족이 시설운영자뿐 아니라 청소년으로부터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직업훈련의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심리검사 등에 있어 청소년상담실과의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준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특히 상담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자체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순회전문가 제도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는 의견 등 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되었다.

청소년 보호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사, 집단 상담사, 왕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치료를 하는 행동치료사 등을 보충해 주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전에는 정신적 치료를 하는 곳도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정신과 프로그램도 필요하구요<사례3>.

문화 활동이나 체육 활동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예산이 확충이 되면, 놀이기구를 타러간다거나, 레프팅을 하러간다거나, 연극을 배우러 다닌다든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사례2>.

청소년들도 프로그램의 부재와 그로인한 무료함을 불만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 시설의 단점을 묻자)

여기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거려요. 그래서 살만 더 썩어요. 애들 취미 같은 것 십자수라든가, 뭐 만들기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용기술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미용기술 프로그램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21>.

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로쉼터는 30명이나 돼서요. 너무 많아요. 여기도 지금은 8명이라서 괜찮은데요, 이 집 크기에서 더 애들이 많아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애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취미가 뭔지를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음식 만들거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종이접기, 십자수,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기라든가 뭐 그런거요. 그리고 미용실습 프로그램요. 또 음악 프로그램요. 노래라든지 악기다루는 프로그램이든지요. 저는 가야금도 배우고 싶거든요, 드럼도요. 운동프로그램은 지금은 택견을 하고 있는데요, 발로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구, 발야구, 배구, 피구, 배드민턴 뭐 이런 종류들이죠. 너무나 심심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텔레비만 하루 종일 보니까요, 여기(쉼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23>.

청소년의 지적, 감성적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의견들이다.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네트워킹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들어보더라도 유사한 청소년 보호시설사에 이동하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쉼터 운영자 측에서 더 맞는 쉼터를 골라 청소년을 의뢰하기도 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입소문을 통해 다른

컴터를 물색하고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컴퓨터간의 이동이 자발적, 반(半)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컴퓨터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기관 간 협조와 네트워킹은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성에는 운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예산이 부족 할수록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의료비지원은 지방비에만 있는데 저희 컴퓨터는 국비만 지원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매매여성청소년을 치료해야 할 경우에는 내일여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식이죠<사례1>.

대전에서는 남자컴터와 여자컴터, 드롭인센터, 위기지원, 아웃리치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연계가 잘 되고 있고 역할 중복도 피하기 쉽지요. 저 선생님도 남자컴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가 더 잘되죠<사례3>.

<사례1>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III-4> 유관기관 협력사례

영역	연계기관
상담	아하! 성문화센터, 진로진학상담실,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의료서비스	글로벌케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서정신보건센터
범죄관련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교육, 재활	마포자활후견기관, 마포야학
컴터간 연계협력	한국청소년컴터협의회

이 표를 보면 사안별로 담당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비교적 잘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례3>의 경우도 지역 내에서 여러 시설 간에 역할에 대한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연계와 협력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성매매여성청소년지원시설

가. 시설여건

앞서 컴퓨터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시설여건은 보호대상 청소년의 적응과 만족에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시설에 적정 인원 이상이 생활하게 되면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관리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설운영자들이 호소하는 시설상의 문제는 방의 부족이다. <사례5>의 경우 현재는 한 방에 3명씩 기거하지만 가급적이면 2명씩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일 것이라고 원한다. 이러한 의견은 <사례4>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력하였다. 적절한 시설여건으로 <사례4>는 안락한 상담실, 2명 이하 사용하는 숙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혼자서 방을 쓰는 거는 그렇고 2명이 1방을 썼으면 좋겠어요<사례 25>.

나. 아웃리치 서비스

현재는 시설별로 아웃리치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성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중앙기관의 주관하에 공동 아웃리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 대상청소년 유형구분 필요성

대상 청소년을 성별이나 연령이나 문제행동 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게 유형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관리를 위한 것이지 아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이나 “지나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 등 유형구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유형분류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한 친구 끼리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모여서 다시 나가고 하기도 해요<사례27>.

청소년이 친구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함께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새로 입소한 두 명의 친구를 보며) 저렇게 친구가 같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요. 나는 전번에 의정부 쉼터에서 둘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친구랑 따로 들어갔었는데, 둘이서 오면 둘이서만 다니고 안 좋아요. 그러다 둘이서 나가기도 해요<사례24, 25>.

이처럼 유형구분에 대해 굳이 분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시설들이 “성매매의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청소년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분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대상에 대해 다시 세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라. 유관기관과의 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구조적인 틀을 잡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협력구축은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관 시설과 기관들이 공통의 관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중앙의 센터가 많은 기관들을 연결하고 지원하고 기관들 간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단위에서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시설들의 유관기관 협력정도를 보면 협조와 연계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듯 보인다. 잘 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보호단체와 보호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각자의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원여성의 집과 청소년상담실, 창원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 의뢰하고 있어요<사례5>.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도시와 지방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연계만으로는 대상 청소년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에 관한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인식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성매매가 노골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성매매 업주간의 유찰의 문제도 있으며, 고발이 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으로 어려운 점이 이 때문입니다<사례4>.

한편 청소년의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제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경찰서, 병원, 학교와 연계가 필요해요. 서울은 안 그렇지만, 지방의 경우는 쉽지가 않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

우도 많아요<사례26>.

청소년의 진술에서도 도시와 지방간의 차이가 부각된다. 이 점은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기타

성매매여성청소년지원시설이 당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시설이 그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갖게 되는 문제이다. <사례4>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선도보호 시설에서 여성부 관할의 성매매소녀 지원시설로 시설변경을 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즉 시설변경을 함으로써 성매매의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성매매 행위를 완성하지 않은 소녀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선도보호에서는 가출만 하는 시설이었으나, 성매매 청소년쉼터로 전환되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달라 성매매 가능성 있는 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관의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 기관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이 바뀌도록 중용을 받기도 하였다. 케어기술이 성인과 청소년은 접근 방법부터 다르며 성매매 청소년은 또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사례4>.

(3) 그룹홈³⁰⁾

“그룹홈의 경우 쉼터나 시설에 비해 시설병이 낮게 나타난다”는 표현은 그룹홈은 그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미 시설수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생활

30) 조사대상인 그룹 홈들로 부터는 현행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경우라서 시설병, 즉 집단생활이 가져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적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룹홈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집단생활에 상당히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체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개인생활을 하면... 제약이 있고 예절이 필요하지만,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놀이도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학교 관련된 문제들도 여기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사례28>.

유관기관 내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시도하는 노력도 하는 과정에 있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차 지역사회 민간안전망 구축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상담실과, 보호관찰소, 그룹홈 등 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이를 발전시켜 시와 경찰, 법원, 청소년 위원회와 상의하여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위기가정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사례7>.

(4) 긴급보호소

긴급보호소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세 가지 정도이다. 먼저 긴급보호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어 청소년들이 긴급보호소나 다른 보호시설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 잘못 유포된 정보들, 과장된 정보들이 이것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벽을 쌓아 버리는 거죠. 쉼터 안에서의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길이에요.

둘째, 시설 설비의 문제이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을 모아두면 물리적 밀도뿐 아니라 사회적 밀도도 높아지고, 공격성이 증가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더구나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이며, 이러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여러 명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등의 환경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

꼭 필요한 시설구성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한방에 5명 내지 그 이상의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인 1실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대 4인 1실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실, 4인 1실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집이라는 느낌이 우리 집에 가면 방에 한두명 밖에 안 쓰잖아요. 아직까지 시설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방에 적으면 네다섯명 많은 곳은 일곱여덟명 할 때도 있어요. 이미 그 자체는 수용이에요. 집이라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 혼자 가서 풀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집에서는 가능해요. 화장실가서 있어도 되고. 짐식구들은 얼마 안 많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30분씩 있어요. 누가 뭐라 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이 사는 데는 10분마다 한명씩은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삭히지도 못하고, 삭힐 공간이 없어요. 수용이라는 느낌 안들게, 단체생활이라는 느낌 안들게 좀 그런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셋째,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일단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정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

는 지에 대한 방법론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적 치료 부분은 정신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므로 굳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육체적 치료부분은 치과 부분이 고비용인 관계로 너무 취약합니다. 다른 분야는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 치과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고비용적인 부분이 문제이며, 청소년들 중 위생불량으로 인해 치과부분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원 시설들과 같이 쉼터 입소만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중의 문제이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을 살펴볼 때 지적인 바와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도 마땅히 의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설의 편중은 긴급보호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시설 전체의 문제로 보인다.

지역 별로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찾아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지역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한곳 밖에 없다거나, 여자청소년 시설만 있어서 남자 청소년 발생 시 대처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적응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일반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게 두면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입소를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증 정신장애 등과 같은 특성화 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경증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측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호를 꺼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5) 드롭인센터

드롭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드롭인센터에서 다른 보호시설로 청소년들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센터에서 특정 쉼터로 의뢰를 해도 청소년들이 중간에 그곳을 나와 버리는 문제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 볼 때 물론 청소년들의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도 있겠으나 시설들이 청소년들의 욕구와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관점에서 설정된 규칙과 일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센터 구성원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쉼터로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기가 싫어요. 쉼터는 아이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규율이 심하죠.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자유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출을 한 아이들이니까요. 쉼터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친구끼리는 같이 받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공동체적인 느낌을 받기도 무척 힘들구요. 또, 쉼터에 가보면 분위기 자체고 침침...해요.

필요할 때 시설에 의뢰하고 연계하는 것은 수월하다.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과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들의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도 드롭인센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모든 보호시설들이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점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종합평가와 시사점

지금까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보호시설의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의 상태와 활동영역, 그리고 활동의 한계점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 물적 자원의 충실도의 면에서 평가해보면,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방 1개 당 밀도가 높거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점은 여러 시설의 담당자나 청소년들에게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설에 따라 입소 청소년들의 탈락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의 중도포기는 시설의 규칙의 엄격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락률이 높은 시설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혹시 ‘보호’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제한과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10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10개 시설 중 7개는 여성청소년 전용시설, 2개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공용시설이며, 남성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단 1개에 그치고 있다.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성비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들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하는 염려가 생긴다. 이러한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출이나 성매매를 한 여성청소년들은 ‘보호’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의도하지 않게 여성청소년들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보호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추세 아래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남성청소년들은 소외될 우려도 생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을 유형화하고 찾아서 나설 때 남성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 시설들의 활동실적을 알아 본 결과, 수용보호하면서 생활지도의 맥락에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예상보다 적었다.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들도 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여행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것들이 많았다. 시설들의 여러 차원의 역량으로 볼 때 전문적 프로그램을 일일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쉼터나 성매매지원시설, 그리고 그룹홈 등은 수용보호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면서, 전문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협의체나 중앙센터 등에서 함께 모여 시행하던지, 아니면 중앙센터나 지역협의체에서 전문가가 순회파견이 되어 시설마다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예산부족을 꼽을 수 있다. 10개의 시설 중 예산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1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인가를 받고 있고,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운영이 아주 어려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현재는 쉼터는 가출과 비행청소년, 성매매지원시설과 긴급보호소는 가출과 성매매 청소년, 그룹 홈은 빈곤가정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등으로 유형이

포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류에 속하면서도 특별한 처우와 치료가 필요한, 예를 들어 경증 정신장애자나 장애청소년, 초등생 등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 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단체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시설은 수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체에서는 집합적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한다면 시설들이 자체 내 프로그램 부재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요청된다고 하겠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의 문제에서 지적된 점으로, 시설이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성매매위험 청소년(장기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보호의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매매 경험을 이미 가진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지원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시설의 정체성에 공식적으로 성매매경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낙인효과를 가지게 되고 성매매청소년 스스로가 그런 레이블(label)을 달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성매매경험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그냥 청소년보호시설로 하는 것이 보호의 대상 면에서나, 대상청소년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나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시설들의 설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골고루 시설들이 설치되어 그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현황과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현황과 이들 단체가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수행해야할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단체 역할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청소년기본법 제28조 3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 모두에서도 ‘청소년보호단체’란 ‘청소년보호를 위해 구성된 회원과 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보호단체로 규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보호단체들이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0곳의 청소년보호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연구의 대상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7곳과 청소년센터 3곳이었다. 이 중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1곳), 여성지원센터(1곳), 성문화센터(1곳)이며, 사례연구의 대상은 <사례 11-20>까지로 표기하였다.

1)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현황

(1)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한 기초정보

가. 보호단체의 일반적 특성

가) 운영목표 및 설립시기

먼저 사례에서 보고된 보호단체들의 운영목표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추구한다하더라도, 실행목표에 있어서는 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운영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 하여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청소년육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적인 가치의 전달이 운영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청소년육성단체인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이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7곳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4곳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사례14>.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맑고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기관의 운영 목표이지요<사례16>.

반면, 청소년지도 혹은 육성단체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행예방과 선도에 목적을 두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성숙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었다.

우리기관은 청소년제반문제연구 및 사회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성숙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사례12>.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 청소년 주체가 된 창조적인 문화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사례13>.

이곳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 하고 비행청소년들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어요<사례15>.

한편, 청소년지원단체의 경우,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위 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CYS-net)안에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One-Stop서비스를 통해 위험노출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험노출 청소년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사례18>.

또한 여성지원단체인 경우는, 십대여자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위한 보호단체의 경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형성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었다.

가출·성매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자율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서 십대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사례19>.

우리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및 성상담, 문화 활동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예요<사례 20>.

위와 같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1922년부터 2003년까지 그 시기가 아주 다르다. 1920년대<사례12>, 1940년대<사례16>, 1960년대<사례11, 14>, 1980년대<사례17>, 1990년대<사례13, 15, 20>, 2000년대<사례19, 18>등 그 범위가 다양하나, 이것은 운영단체의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활동감시단과 같은 보호활동을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 유

해활동감시단이 출범된 1997년 이후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여성 지원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 및 성문화센터의 경우도, 청소년위원회의 전신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1990년대 말기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만들어진 단체들이다. 청소년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 인가여부, 감독관청, 및 위탁기관

10개의 보호단체의 인가여부와 감독관청, 그리고 위탁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개의 보호단체 모두 인가를 받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경우였다. 10개의 보호단체들의 인가 및 신고시설의 감독관청은 중앙부처(문화관광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법무부)가 5군데였고, 5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춘천시)였다. 보호단체의 경우, 위탁여부를 보면 10개의 단체 중 5개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위탁을 준 곳은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 한국소년보호협회, YMCA(2개 위탁), 춘천시이며, 나머지 5개의 보호단체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보호단체의 경우, 사례11과 13은 위탁기관과 밀접한 관계 속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사례11은 주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에서, 사례13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사업을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었다.

다) 보호업무의 비중

여기서 말하는 보호업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청소년기본법 제3조5항)”을 말한다. 이는 협의의 보호개념으로서, 우리가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과 상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호업무에 대한 비중을 물어본 결과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비록 기관별로 ‘보호업무의 비중’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기관의 업무 중 보호업무의 비중에 대해 응답한 반면, 센터의 경우는 두 곳<사례18, 20>에서 보호업무 비중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협의의 개념이 청소년기관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원활동이나, 상담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를 청소년보호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모두 보호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개의 단체에서 5%<사례16>, 10%<사례14>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체 업무의 50%-100%가 보호업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업무 중 보호업무의 비중이 10% 이하라고 응답한 단체는 지역 YWCA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고, 나머지는 50%<사례12, 17>, 70%<사례11>이었으며, 보호업무가 100% 전부 라고 응답한 단체들<사례13, 15>도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토대로 할 때, 유해환경감시단이 보호업무의 비중을 단체별로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업무’에 대한 개념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저희기관에서 보호업무는 유해환경감시단 업무뿐인데, 전체 23명 직원 중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서 비중은 1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업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타의 기관에 위임하는 정도로 보호업무 중에서도 다시 5%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16>.

한편, 지원센터의 경우, 한 곳<사례19>만이 보호업무에 대한 비중을 50%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두 곳은 보호업무의 비중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 단체들은 보호업무의 범위가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단체의 경우,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단체별로 매우 다르며, 청소년단체의 기능이 ‘보호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자신들의 기관이 보호단체인지’ 인식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청소년보호 관련기관에서도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물적 자원 및 주변 환경

물적 자원은 시설의 규모와 설비를 말한다.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활동공간의 확보와 함께 교육이나 상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는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단체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 기준이 제도적으로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권장 설치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는 청소년보호시설과는 달리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은 현재 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점검하거나, 이러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몽, 예방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 상담활동이나 관련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단체의 시설은 대부분 해당단체의 행정적 업무를 주로 보기 위한 시설이며, 다만 센터의 경우는 상담이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의 경우, 먼저, 이들 단체가 상주하는 건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한 곳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었고<사례11, 사례20

>, 한 곳은 국제 청소년센터 안에 영구 임대 형태로 상주하고 있었으며<사례12>, 주택형태의 건물을 소유한 곳<사례17, 19>, 상가형태의 건물을 소유한 곳<사례16>, 상가 또는 빌딩 형태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곳<사례13, 14, 15, 18> 등이 있었다.

시설의 위치를 살펴보면 5곳<사례11, 12, 18, 19, 20>은 서울에, 나머지 5곳은 지방(인천, 대전, 춘천, 부산, 익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의 주변 환경은 주택가가 4곳<사례12, 15, 17, 19>이고, 복합지역, 즉 주택가와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곳이 1곳<사례11>이며, 상업지역이 1곳<사례14>, 사무용빌딩이나,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사례13, 사례16, 사례18, 사례20>가 4곳이었다.

건물의 규모는 평수로 알아보았는데,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례11>과 <사례20>의 경우는 각각 연건평이 2,090평과 200평 이었고, 나머지는 18평에서 230평까지 규모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육성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속기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해환경감시단이 사용하는 건물의 규모는 전체 건평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무실이나 회의실 및 교육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엔 소비자 상담실, 동아리 활동 공간, 식당, 신문사, 어린이집, 여학생 기숙사 등이 있었다. 한편 센터인 경우에는 주로 상담실과 관련된 시설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례 18의 경우는 건물 내 약 43평정도(방5개)의 긴급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위기청소년 20여명을 일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들 보호단체에서 갖고 있는 교육기자재는 주로 TV, 컴퓨터, 빔 프로젝트, 비디오, 스크린, 음향시설 등이었다.

다. 인적자원

청소년 보호 단체의 인적 자원의 규모와 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력규모를 전임과 파트타임, 그리고 자원봉사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자격증의 소유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호단체 중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소속기관의 인적자원은 규모가 크더라도 유해환경감시단의 인원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먼저 전임인력의 인원과 구성을 살펴보면,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1명에서 5명이고(소속 기관의 전임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8명에서 60명까지 이름), 센터의 경우 8명에서 15명까지였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모두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위기구로 조직되어있어, 전임인력이 모두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의 경우는 기관의 장과 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력 및 사업팀, 행정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18>의 경우는 긴급구조활동을 펼치는 인력도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간제 인력이 있는 곳은 3곳이며, 이중 <사례15>는 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16명)하고, <사례16>은 유해환경감시담당보조 업무(1명)를 하며, 사례 19는 공공근로(심야거리, 거리상담업무 및 사업별 업무지원: 15명)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7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었으며, 단체별로 20명에서 250명에 이르는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관련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 부모, 대학생, 중 고등학교 청소년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감시하며 고발하는 등의 감시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사업기획과 행정적 업무처리는 전임인력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희단체에서는 시민감시단원을 이렇게 모집해요. 먼저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30대 이상 성인들을 위주로 모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YMCA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역사회의 부녀회 같은 단체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 함께 활동을 하게 돼요. 특별히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시단이 구성되는거지요. 또한 청소년1318세 열창클럽이 있는데요, YP 활동을 해요<사례13>.

저희 단체는 11개의 위원회의 위원들과 30여명의 이사들이 무급실무자로 활동 중이에요. 그 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는 13명의 위원들은 물론, 25명의 어머니 현장순찰단, 10여명의 대학생 모니터 요원, 그밖에 매체모니터요원, 청소년부의 Y턴과 대학 Y에서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요원들까지 50~60여명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유해업소 및 학교정화구역 순찰, 인터넷 방송, 스포츠 신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사례16>.

한편 보호단체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사, 등의 국가 자격증과 소년보호사, 사회체육지도사, 상담심리전문가, 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등 민간자격증이 있으며, 사서자격증도 있었다. 이 중 청소년보호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는 8곳에서, 사회복지사는 7곳에서, 그리고 청소년상담사는 2곳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은 모두 보호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예산

청소년보호단체가 보호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풍족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보호단체에서는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예산의 출처를 보면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중앙부처(4곳)와 지방자치단체(7곳)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체재원조달을 하는 곳(2곳)도 있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예산은 주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교부를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어요<사례15>.

청소년위원회에서 100%로 지원을 받는데요, 사후정산형태로 50%를 지원받고 있어요. 총 예산의 50%를 미리 받고 매월 총 정산액의 50%를 사후에 지원받는 거죠<사례18>.

또한 위탁기관으로부터의 보조비나 후원금 등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보호단체들은 예산의 규모는 단체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였으나,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비였고, 그 다음 인건비, 운영비 순이었다. 사례 10곳 모두 예산지원이 주로 사업비에 해당되어, 인건비나 단체의 운영비를 조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임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보호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건비와 시설이 노후하여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이직률이 높아요. 당연히 사업내용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요<사례14>.

한편 보호단체들은 센터를 제외한 청소년단체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중요한 재원이었으며, 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외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센터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 사업내용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10개의 보호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실적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업내용은 크게 6가

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가출비행청소년수용보호서비스, 둘째가 비행 예방사업, 셋째가 홍보 및 협력사업, 넷째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다섯째가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 마지막으로 보호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 사업 등 이다. 보호단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단체 유형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여성 지원 센터)로 나누어 사업내용을 비교하였다.

가. 가출비행청소년수용보호서비스

가출청소년수용보호서비스에는 수용보호, 육체적 정신적 치료,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 재활, 교육활동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 퇴소 후 전환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의 사업내용 중에서 가출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 다만, 청소년지원센터<사례18>의 경우 CYS-net 체계 안에서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한 해 동안 328회의 긴급구조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긴급구조, 시설연계, 귀가지원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센터 내에서 일시적으로 긴급보호를 하기도 한다 (232회/2004년). 지원센터의 대상청소년은 주로 가출청소년과 성매매청소년이었다. 성문화센터<사례20>의 경우도, 일시보호, 단기보호, 중장기 보호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 보호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수용보호서비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용보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육체적, 심리적 치료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혹은 재활 및 직업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만,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 소속단체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사례12, 15>, 센터의 경우는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한 해 동안 총 108건의 의료지원과 190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였고, 여성지원센터는 40

여개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10,500명의 십대여성에게 심리 및 교육 상담을 지원,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퇴소 후 전환서비스의 경우도 보호단체의 주요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소속단체가 실시하거나<사례15>,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형태<사례19>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비행예방 사업

비행예방사업에는 캠페인, 유해환경 감시단원 교육, 유해매체/유해업소 및 지역/유해 약물 및 물건/유해행위 등의 감시 고발 활동이 포함되는데,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 중 유해환경감시단은 비행예방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나, 센터의 경우는 비행예방사업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유해환경캠페인은 24회에서 99회까지 실시하였는데, <사례14>의 경우는 동아리친구들과 거리에서 리플렛을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주로 하였으며, <사례16>의 경우는 유해환경 추방캠페인(사진자료, 기사 등을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여 홍보)과 e-clean Korea 캠페인(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유도) 및 유원지 집중 감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편 <사례16>의 경우는 청소년성문화축제나 청소년 성이야기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해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용시설을 건전하게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한곳도 있었다.

2004년도의 경우, 청소년 이용시설을 건전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주로 진행했어요. PC방, 노래방, 등 학교 주변의 이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PC방의 경우는 흡연,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청소년실이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어 이 내용이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 되었지요.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달에 2번 전철역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사례13>.

한편 감시단원 교육은 단체에 따라 년 2회에서 18회까지 실시하였는데, 주로 청소년보호법, 모니터링에 관한 교육, 성교육, 성격에 대한 이론 등을 교육하였으며, 성문화센터의 경우는 성교육지도자교육을 하고 있었다. 사례 13의 경우는 청소년1318세 열창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선정되고 교육받고 있었다.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유연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지요. 또한 유해 업소를 다니는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순찰 중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는, 주로 자원봉사의 가치성과 의미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유해업소를 다니는 활동이나 만화모니터 활동 등을 직접 함께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지요. 전체적으로 단체들이 모였을 때에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구요 (중략). 저희단체에는 또 청소년1318세 열창클럽이 있는데요, YP활동을 해요. 2003년 청소년 YP활동이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로 시작되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6개로 늘려 활동을 계속해 왔구요. YP활동은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청소년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유해매체와 같은 것을 청소년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개선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 1318클럽을 조직했어요. 주로 YP 졸업생들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데요, 1318클럽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개월에 한 번씩 이에 대한 기사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요<사례13>.

한편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의 경우, 유해환경 감시단은 모두 감시활

동은 활발히 하고 있지만, 고발 활동은 단체에 따라 그 비중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의 경우는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유해매체의 경우, 매체전문요원을 두고 인쇄, 정보, 사이버 매체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청소년위원회에 신고조치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사례13, 사례16>,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사례14>도 있었다. 유해매체의 경우, 보호단체들은 주로 인터넷 폭력, 음란카페 등을 고발하고, 스포츠 신문 등을 모니터링하여 고발하며, TV 드라마나 쇼프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유해업소와 지역에 대한 감시고발활동은 유해매체와 더불어 유해환경감시단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활동이며, 주로 학교 주변이나 전철역 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 활동 또한 고발보다는, 감시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청소년출입가능여부표지 부착, 담배 음주 판매 여부, 학교 정화 구역 내 담배 판매, 불법오락기 설치여부 등을 감시하였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해업소나 지역 감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고발을 하게 되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지요. 경찰과 함께 진행을 할 때는 거의 단체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사례14>.

한편, 유해약물이나 물건에 대한 감시 고발 및, 유해행위에 대한 감시 고발 등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전자의 경우, 5곳, 후자의 경우 4곳의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학교주변 유해물건 비치 판매 실태조사나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중대사건이 있을 때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만 하고 있었다.

다. 홍보 및 협력활동

홍보 및 협력활동에는 단체 홍보, 청소년아웃리치 서비스, 유관기관청소

년의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 및 전문가 자문 협력활동 등이 포함된다. 먼저 단체 홍보의 경우,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 중, 4곳만이 단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스티커 혹은 전단지,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아웃리치 서비스의 경우, 거리상담, 이동상담, 해변가나 학교를 찾아가 설문조사나, 상담을 하고 있었으며, 여의도 동대문 노원역에서 심야거리 상담사업인 ‘브리짓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쉼터나 의료관련단체에 위탁한 단체도 있었다<사례19>.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은 대체로 청소년아웃리치서비스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또한 서비스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보호단체들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보호단체들은 진로, 직업, 가출 문제 등 대상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이들을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체에 따라 연 12회에서 110회까지 실적이 다양하였다. <사례14>의 경우는 주로 부적응청소년들을 유관기관에 의뢰하고(20건/2004년), <사례16, 18, 19>는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쉼터나 기타 유관기관에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간단치가 않으며, 특히 부모의 반대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청소년을 상담실과 치료센터 병원 쉼터에 의뢰를 해요. 이때에도 부모의 반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요<사례14>.

신고 접수 때에는 각 구청 담당자나 경찰청에 이첩하거나 대상자 발견이나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해오면 쉼터나 상담자에게 위임하지요 <사례16>.

한편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는 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센터의 경우는 단체 내에서 상담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보호시설

에 주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출청소년 연계시설(서울YMCA쉼터 외 22기관)과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시설(한국여성의집 외 12기관)을 통해 입소를 의뢰하고 기관을 연계해 주었습니다<사례18>.

또한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구성내용은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즉,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상담기관이나 수련기관 및 쉼터 등의 보호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성격인 다른 지역의 유해환경 감시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및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 반면, 센터의 경우는 1388청소년지원단 네트워크 8000여 개 업소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와 성교육지도자 집단과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및 심야거리 상담사업이나 자립지원 사업별로 위탁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나 국제교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구성은 동일한 성격의 보호단체 내에서도 주력사업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보호단체들은 이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펼치거나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유관기관과의 공동 캠페인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이나 야간순찰 활동,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유해 업소 특별계도 활동, 청소년보호주간 연합행사 등을 함께 하지요. 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무자 위주의 연합간담회를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합간담회를 통해 단체별로 차이가 있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개념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각 단체별 특화사업과 연합캠페인과 같은 공동사업을 병행하게 되구요. 2005년도에는 5월, 10월에 연합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연합캠페인은 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a단체는 흡연예방캠페

인을 주로 하고, b단체는 성폭력예방캠페인을 주로 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의 연합캠페인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봐요<사례13>.

1388청소년지원단 네트워크 8000여개업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데요,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PC방, 약국, 택시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청소년 보호역량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단초를 마련하였지요. 향후 구조지원 외에도 홍보, 신고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한 지역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과 함께하는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단체 및 경찰기관 등이 연계된 구조 및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시설 간 네트워크도 구축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시설과의 연계사업, 지원사업 등으로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긴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설 간 네트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사례18>.

또한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어서, 상담이나 법률 및 의료적인 문제에서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주로 대학이나 청소년위원회 및 학교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있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및 법률지원단이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법률지원 64회)하고 있어요. 법률지원네트워크, 정신건강의료지원단, 방문심리치료지원단 등 전문가 지원단 구축으로 청소년보호사업에 전문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여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확대 보완하는 성과를 거

두었지요. 앞으로 지원단 운용의 활성화와 다양한 전문가지원단의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사례18>.

이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지원체계는 유해환경감시단보다 센터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시행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상담프로그램 보다는 감시단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CA 와 연계하여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사례16>의 경우, ‘네눈박이 아이들’이라는 YP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YP동아리가 소재한 학교 등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유해환경 감시단에 비해 센터의 경우,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이 보다 큰 비중을 갖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시설 실무자들을 전문화시키는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설 실무자 전문화 지원교육으로 경증장애 청소년 대책, 자활사업(My Way Project), MMPI(다면적인성검사)의 이해와 교육, 학교폭력관련 법률 이해, 상담치료 슈퍼비전, 행정실무 교육, 상담능력강화 교육, 미술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노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여, 참여자의 전문역량 제고를 통해 청소년 보호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또 이것이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구요. 앞으로 보호시설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상담프로그램 등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요. 작년에 집단프로그

램 자료집, 진로지도프로그램 자료집, 1388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만들었지요<사례18>.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했구요(2005.6), 현재 거리상담 운영 매뉴얼 을 개발 중이에요<사례19>.

성상담 교육과 조사연구를 하고 있어요. 성상담 전문가웍샵, 성상담 사례연구회, 사이버상담원양성, 상담봉사자웍샵, 성문화연구조사, 성상담 인턴훈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했구요, 성교육리포트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사례20>.

한편 보호단체들 중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자체 평가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6곳이었는데, 사례14와 19를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연중행사로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하고 있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자립지원사업은 모니터링 분야를 별도로 두어서 각 운영기관별 프로그램들에 대해 기획부터 평가단계까지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사례19>.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를 한 단체들은 대부분 사업목표가 중·상 이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단체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평가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일반청소년대상 서비스 및 기타사업

보호단체들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는 극히 드문 것

으로 보인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금연프로그램이나 아르바이트 및 상담 등이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전화상담도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센터의 경우는 현재,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를 전혀 제공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들은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센터들이 모두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물론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는 감시단 자체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감시단이 속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호단체 중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서바이벌 게임장(연 80회), 한국청소년충효단,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리더십센터 및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거나<사례12>, 청소년1318세 열창클럽 운영<사례13>, 학교성교육지원프로그램, 성교육장 운영<사례19>, 청소년 성교육활동(성교육체험관, 어린이 성교육인형극, 부모와 함께하는 사춘기로의 여행, 찾아가는 성교육, 청소년성교육, 또래지기 캠프, 청소년 춤 영상 캠프) 및 조직 활동(성문화또래지기, 청소년 몸 이야기, 기독교소년)<사례20>들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부에서 Y틴 동아리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적 교육프로그램이나 방학기간 중 수련회 등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보통신윤리교육, YP교육, 각종 캠페인 실시 등을 실행하고 있고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니터 요원들의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사례16>.

그 외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속한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사례14>, 센터에서 보호시설 실무자 혹은 입소자를 위해 도서 및 영상물을 직접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사례19>.

이런 활동들이지요 -고용촉진 훈련/전업주부재취업활동/사외적일자리

창출/중소기업취업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춘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e-Clean korea 2005/청소년 사회체험 활동/청소년 육성 프로젝트/노인전문 생활관리사 양성/사랑의 업서쓰기 공모전/환경사랑가족 신문 공모전/공명선거를 위한 총선연대 캠페인 활동/폐형광등·폐건 전지 분리수거 촉구 캠페인-〈사례14〉

지금까지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의 사업내용을 살펴 본 결과, 보호단체들은 가출 및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수용보호는 하지 않고, 비행 예방 사업에 더 주력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발생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유관기관으로 이송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충분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단체 중에서도 유해환경감시단은 주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센터의 경우는,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도와주고 유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었다.

2) 청소년보호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장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보호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청소년보호단체들의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보완되어야하는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청소년보호를 위해 보호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를 위

해 청소년보호단체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가. 청소년보호활동역할 수행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된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그들이 속한 청소년보호단체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가장 잘하고 있는 역할로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꼽았다<사례12, 14>.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예방활동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감시고발, 유해 매체 모니터링, pc방 노래방 등 실태조사 활동, 청소년 토론회 활동, 인천지하철 전동차 홍보 및 행복한 청소년사회 만들기, 디카 콘테스트,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활동,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 활동, 시민감시단원 교육 활동, 청소년 지킴이 YP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었다<사례13>. 또한 사례16의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장순찰활동이나 각종 유해환경에 관한 모니터링은 물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정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원활히 잘 수행하고 있었다. <사례16> 역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단체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그 동안 역할수행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개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시청이나 교육청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여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매체에 보도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다. <단체18>의 경우도 보호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위기를 알리는 최초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자원들의 네트워킹과 허브역할 및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근 2년 동안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역할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경우에 더

욱 효과가 있는데<사례17>, 보호단체들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와 그 업소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양방향 교육과 캠페인을 잘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단체들은 단속위주 혹은 적발위주의 활동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꾸준한 캠페인(공원단속활동 등)과 대화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 보호단체들은 대개 청소년과 직접적인 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를 위한 역할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사례19>의 경우, 이 기관은 십대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을 性認知的 관점으로 접근하는 운영방침을 세우고, 십대 여성이 성인여성들이나 또래 십대 남성과는 다른 욕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또한 이 단체는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실무자 지원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시설간의 협력체계 및 대상자(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청소년보호활동 역할에서의 부족한 부분

청소년보호단체들이 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중 원활한 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개의 청소년보호단체들은 청소년보호활동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문제나 아웃리치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13>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위탁사업으로 인해 지정된 인력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간적 제약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부하가 많이 걸려, 한 가지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보호단체의 업무가 사업위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청소년보호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상담을 하고 사업계획 이외의 일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며, 조직내부의 구조 역시 오랜 역사로 인해 창조적인 일에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사례17>.

한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 단속 혹은 적발위주의 활동도 요구되나, 대개의 보호단체들은 역할수행에서 단속이나 적발위주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비록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체의 역사가 짧은 기관인 경우<단체 18>, 단체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련시설이나 타기관과의 네트워킹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단체가 위기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에 초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보호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발견되었다<사례19>.

또한 기관종사자들이 청소년보호단체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 기관의 성격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었다<사례20>. <사례20>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고, 그 설립 목적이 청소년보호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부족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쉼터는 숙박을 제공하는 기능은 있으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의 측면은 부족하죠. 아하!의 경우도 성문제 상담과 예방 기능은 충분하나...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은 부족하죠<사례 20>.

(2) 청소년보호활동 역할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보호단체의 현장 전문가들이 청소년보호활동에 제시한 문제점들과 이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가 및 감독관청에 관한 문제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의 경우 인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단체는 4곳이었고, 이들은 예산이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서 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밖에 안되는데요. 연구 자료로 사용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보호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설 인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서울시와 같이 큰 도시의 경우에 구청 단위가 적절할 것 같구요.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 산하 인가시설이 전체 시설 숫자에 비해 아주 적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간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가에 따른 지원내용이나 수준은 이미 사전에 기관의 종류나 특성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작업이 충분히 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사례 19>.

또한 감독관청의 경우, 특별히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많지 않았으나(5곳), 감독관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로 하는 것과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비슷하였다. 청소년위원회로 감독관청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은 지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담당자의 전근이 잦아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담당공무원의 전근이 잦으며,

너무 관료적이라서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각 청소년단체나 시설마다 소속관청이 달라서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하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예요 <사례16>.

나. 접근성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청소년들이 보호단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단체들이 제시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하였는데, 대중교통이 용이한 장소나,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단체 건물을 이전하거나,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보호단체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거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시설을 갖추어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거나, 청소년 회의모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가급적이면 전철역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 가깝고, 주택가였으면 좋겠어요<사례19>.

또한 주변 환경도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생활권과 격리되지 않으며, 유흥가 등의 유해환경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유해환경 감시단들은 가장 좋은 입지조건으로 일반주거지를 꼽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편 센터의 경우, 보호단체의 운영기관이 종교기관인 경우, 종교시설과 보호단체 건물이 격리되고, 활동 또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사례18>을 내기도 하였다.

다. 시설과 설비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

하였다. 또한 내 집과 같이 아늑하면서도, 청소년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유해환경감시단들은 특정기관에 소속되어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는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제반 청소년문화시설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도, 청소년들이 편안함과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여기엔 휴식공간, 오락공간, 게시판, 문화공간, 상담실, 회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 룸, 숙소, 도서관, 식당 및 주방, 편의실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18>. 한편 시설 보다는 무엇보다 운영자나 시설관계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17>. 시설과 설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유해환경감시단과 센터의 의견은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라. 인력구성에 관한 문제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직원 수에 관한 문제는 단체의 규모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단체들은 대체로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다.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에는 특수교육전문가나 심리치료사 등이 있다. 이들의 인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한가의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체마다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 힘들다. 사례 16은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일의 업무상 최소한 5명 정도의 전문 인력은 상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호단체들은 보호단체가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현재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이러한 접근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유해환경 감시활동에서 야간 활동이 많고,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친 업소나 사람들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감시단원들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청소년들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 성비, 다양한 직업(경찰, 변호사, 학자, 심리학 전공자 등 포함)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경우는 현재 업무상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센터 관계자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한다면, 앞으로 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센터의 경우를 말해볼까요? 딱히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원장, 중간매니저, 그리고 실무자들은 5명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설에 7명 정도의 인원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은 관내·외 총괄업무와 외부환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중간매니저에 대한 슈퍼비전도 해야겠죠. 중간매니저는 주로 내부 운영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또 실무자에 대한 슈퍼비전과 펀드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주 업무로 행해지구요. 실무자들은 케이스 워크(case work)와 그룹 워크(group work) 같은 실질적인 보호업무를 담당해야죠<사례19>.

마. 예산에 관한 문제

현재 보호단체들이 사용하는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비이다. 그 다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보호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문 인력의 작은 이직률이다. 이것은 낮은 인건비로 인하여 직업에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단체의 경우, 무엇보다도 인건비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센터의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보호단체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건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최소한 월 200~300만원의 급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바. 사업내용에 대한 문제

사업내용은 보호업무 영역인 수용보호, 비행예방사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상담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수용보호에 관한 사업은 현재 보호단체들의 업무영역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보호단체 현장 전문가들 중 센터 종사자들은 보호단체에서도 수용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치료 및 전환서비스가 보호단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시설을 찾는 청소년은 저소득, 무직 미진학 청소년,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등 다양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현재의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며 적절한 상담조차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문가나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몇 개의 단체를 전담하여 순회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식의 구조라도 서비스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리라 보구요,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 규모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자활을 위한 공간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문가의 정기적 상담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심리극을 통한 각자의 인식증대, 싸이코 드라마, 각종 캠페인을 통한 홍보,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들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해주구요. 우리의 청소년 기본계획에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예산과 운영비 지원 등 계획자체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여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실적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서 캠프 몇 건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호업무는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프보다는 상담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사례16>.

현재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쉼터/그룹홈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보호시설과 보호단체 각각의 업무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단 전환서비스의 경우 자립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예:아동복지법의 자립관) 그 곳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19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출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립관에서 3년 정도 학업 및 취업과정을 거친 뒤 최소한의 자립금을 준비한 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사례19>.

한편 비행예방 사업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캠페인과 감시고발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센터의 경우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센터의 경우, 이 사업은 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센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현재 비행예방사업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비행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 학교와의 연계활동, 멘토링 활동, 지역주민과의 연계활동, 감시단별 특화활동(예, 학교폭력, 흡연예방 등), 유해환경감시고발과정에서의 사법권 부여(사법기관과의 연계활동), 감시단원들에 대한 교육,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 활동 등이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청소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데, 지역단체의 성인들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완전히 혼쭐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강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때 참 어렵습니

다. 그럴 땐, ‘이 학생들이 우리에게서도 벗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겠 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구요. 담배를 피는 문제에 있어서는 담배가 유통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이들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감시단 조장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데요, 이 때 이러한 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교육부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이해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사례13>.

비행 예방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활동 및 방과 후 학습지도 활동과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PC방 만화방 노래방 업주와의 가출청소년 임시 보호 방안 마련, 청소년 지킴이 YP활동의 연구 및 보급 등이 보완되어야한다고 봅니다<사례14>.

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문제

현재 보호단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홍보활동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보호단체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홈페이지 활용, 학교와의 연계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사항들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청소년아웃리치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호단체들도 현장으로 청소년들을 찾아가 만나는 활동들을 많이 개발해야한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중앙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호단체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는 형식적인 협력체제에 불과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관기관 실무자들 간의 협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같은

지역에서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동일한 활동을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면 지역사회에서 연중으로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단체와의 유대관계는 물론, 다양한 기능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업무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업의 계획과 진행과정 및 평가는 물론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보호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호단체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협력 체제를 재검토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단체의 특성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학과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그 학과와 시설 간에 일대일 연계를 맺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학과 교수와 잘 연계하면 자원봉사 관리나 사례 슈퍼비전도 해결되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컨설팅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기관별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담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청소년쉼터들의 경우 아웃리치를 통해서 기관 홍보와 대상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쉼터의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무자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웃리치 프로그램 자체적인 발전적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웃리치를 기획도하고 운영도 해본 결과 아웃리치 전문기관과 드롭인센터를 두어서 이곳들을 통해서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쉼터에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사례19>.

한편 네트워크의 구성은 각 단체별로하기보다는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의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보호단체들은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나 감시단원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들은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청소년들이나, 유해환경 관련 어른들을 대할 때, 상담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감시단 실무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과, 감시단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유해환경 관련 어른들과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들의 경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원과 같은 상담 지원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담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육 및 슈퍼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유해매체의 범위가 날로 다양해져감에 따라 인터넷 관련 지식 및 사용능력도 보호단체 실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윤리교육 및 지속적인 슈퍼비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가장 큰 수혜자임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YP교육을 통한 초기적 학생들의 자발적 매체모니터 활동에 그치고 있는데, 인터넷 관련 교육 및 중독 게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가장 손쉽게 접촉하는 매체가 인터넷이고 청소년의 접촉시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용률과 접촉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캠페인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란물을 접촉한 청소년이 90%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접촉이 매우 용이하고 또 스스로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실무자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사례16>.

3) 종합평가와 시사점

지금까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보호단체의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의 상태와 활동영역, 그리고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10곳의 청소년보호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 물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보면,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소한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대개 소속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해환경 감시단의 규모와 인적 물적 여건이 달랐으며, 센터의 경우는 중앙부서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자원을 갖고 있었다.

보호단체의 경우 청소년들을 수용 보호하는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그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의 부담이 없었고, 따라서, 유해환경감시단은 작은 규모의 공간과 시설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또한 소속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공간과 시설들이 연계되어 활용되므로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할 때 공간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의 경우, 위기청소년들을 대할 때, 때로는 일시적인 시설보호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시설과 설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은 보호단체의 시설과 주변 환경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이며, 모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있기를 바라는 반면, 보호단체의 시설과 설비 상태는 단체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 소속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여건이 열악한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터인 경우,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센터들은 비교적 인적 물적 자원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모든 센터들이 이와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센터들도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인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실무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건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보호단체들의 보호업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모두 자신들의 업무가 보호업무임을 인식하고 보호단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센터의 경우는 자신들의 사업내용이 보호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기관이 보호단체라는 인식도 낮게 갖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관련기관에서조차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아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보호업무의 범위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센터를 ‘청소년단체’로 지칭하는 것도 센터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청소년관련 법률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 청소년들은 계속 존재하며, 우리사회에 보호대상 현상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모두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청소년보호단체들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유해환경감시단과 센터의 사업내용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종류의 기관 모두 보호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수용보호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비행예방사업을, 센터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주된 사업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유해환경감시단에 상담전문가가 실무자로 배치되거나,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기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로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보호단체는 전체예산에서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인건비의 순이며, 단체 운영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단체들이 사업비는 지자체나 중앙부서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건비가 열악하여 실무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은 비교적 지역사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 스스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활동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력체계는 보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요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끼리의 수평적 협력체계, 중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일원적 협력체계, 보호사업에 관여하는 성격이 다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학교와의 연계, 지역사회주민과의 연계, 전문가 집단 및 사법체계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보호업무가 수행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보호단체의 성격이 아직 모호하고, 보호 단체들 간에도 다루어지는 내용이 너무 달라, 과연 이것이 서비스 행정면에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단체는 독립적으로 존립하기보다 청소년육성단체나 종교 기관 등에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수행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보호업무의 기능을 주로 관장하는 곳에서 보호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며, 혹은 보호업무의 개념을 새롭게 다시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

1) 청소년보호시설 현장전문가 의견분석

청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시설의 유형 분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위상, 시설과 단체의 업무의 특성화, 시설과 단체의 기능 구분,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의 통합, 지역사회 센터의 필요성, 청소년보호시설을 관장하는 법체계,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바람직한 업무분장 등 10개의 진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았으며 찬성과 반대의 이유도 함께 알아보았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구분에 따라 청소년 시설과 단체는 청소년활동 시설·단체, 청소년복지 시설·단체,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6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명(40%)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명(60%)이었다.

위의 진술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전문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그냥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복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별로 중복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 중복되어 보여도 그 안에서의 일은 다 고유의 장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통합하려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부 쉼터와 여성부 쉼터가 있을 때 지원규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하는 것 보다는 지원규정 부분에서는 획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고유의 전문 영역이 각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통합이 정책의 일관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일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면, 규모 적으로 통합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역할분담은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에 반해 반대의견은 이렇게 활동, 복지, 보호로 시설과 단체를 구분하는

것이 관리를 위한 분류이지 수용자 중심적 사고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복지와 보호의 개념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보호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이 모호함 같은 대상을 지원법에 따라 분류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보호와 복지는 같은 대상으로 구분하여 긴급 보호에서 중장기 보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법해석의 혼돈이 예상됩니다.

청소년보호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따로 보호시설을 구분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보호라는 것이 복지의 개념에 포함되어진다고 보아서 복지시설·단체의 영역으로 흡수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복지와 보호로 분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이 개념상의 혼돈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쉼터와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같은 유형의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지원되는 시설이고,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해 지원되는 시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두 시설의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문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로 양분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재활센터와 청소년쉼터가 같은 법률의 관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두 시설의 업무가 유사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두 시설이 같은 법률의 관장을 받아야 한다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쪽에서는 보호재활센터와 쉼터의 기능은 중복되지 않으며,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같은 유형의 시설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

쉼터는 비행 등의 사전예방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보호·재활 등의 사업은 사후조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모두 청소년복지 분야의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같은 유형의 시설로 분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영역이 너무 크다면 분리시켜야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반면에 두 시설은 각자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시설로 굳이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쪽의 의견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분됩니다. 센터는 이용시설이고, 쉼터는 생활시설이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재활센터와 쉼터와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쉼터는 가출예방 및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가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활센터와 쉼터와 기능은 중복되지 않음 쉼터는 가출예방 및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입니다.

보호재활센터와 쉼터를 같이 묶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기능이 차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는 보호시설로,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혼돈을 가져온 근본문제는 개념적으로 보호와 복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의 부재하고 생각한다. 일단 ‘보호’라는 개념이 사용된 법이 제정되고 보니, 법에서 말하는 보호가 상당히 협의의 개념으로 보호를 축소시킨 결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협의의 보호를 넘어선 보호의

대상을 복지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의 현장에서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의 관장을 받아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싶다.

셋째, 개별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는 활동, 복지, 보호 업무 중 한가지만을 전담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의견이 60%, 반대의견이 40%로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한 가지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전문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단체에서 활동을 담당하고 청소년시설에서 복지와 보호를 담당하는 것이 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업무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한가지 만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1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상호협조체제하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형식상의 분리이지 현장에서는 활동과 보호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대상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수요자 중심적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루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업무는 모든 사업이 함께 가야 할 부분이다. 보호사업도 복지는 기본입니다.

활동, 복지, 보호 업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특수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요구 사이의 해결점은 위의 인용에서 나온 바와 같이 활동과 복지와 보호적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한 가지를 특수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넷째,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는 그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0%,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0%를 보이고 있다. 시설과 단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보면, 주로 시설은 생활지도를 주로 하고, 단체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전문화되어 왔으며 따라서 역할은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화가 필요성 때문이며, 시설이용자들도 단체와 시설의 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 저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아니에요. 청소년을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시설이 늘어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보호단체에서 시설을 하든 기존시설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단체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안되지요.

개별시설에서는 보호를 단체에서는 활동 복지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보호시설은 미시적이라면 보호단체에서는 거시적,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보조적 사업으로서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협조, 공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시설과 단체의 구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수용보호와 활동, 사업, 프로그램 시행은 별도로 진행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설과 단체 모두 수용, 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수용보호와 사업,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시설과 단체 모두 프로그램 및 수용보호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개별 청소년보호 시설이나 단체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성화, 전문화해야 한다(예 : 약물치료시설, 폭력치료시설, 학교부적응치료시설 등)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문항 중 시설이나 단체의 특화, 전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현장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특화된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까? 시설단체의 특화, 전문화에 대해서는 대다수(80%)가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문화와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벽, 거짓말 등을 일삼는 청소년, 정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호치료 시설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측면에서 특성이 통일되어야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시설에서의 보호와 치료와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시설도 세분화 분업화 되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룹홈은 전문화 보다는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화의 정도도 낮지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단순 가정 해체형 생활 그룹홈과 치료형 그룹홈, 비진학 청소년 그룹홈 등으로 유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화의 부정적 효과나 청소년 문제행동의 종합성에 비추어 볼 때 시설 단체의 전문화와 특화에 대해 염려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특성화 전문화 되어 나누어질 경우 낙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 서로의 고통을 보며 스스로 행동을 삼가게 되는 등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설 전문가들의 역량이 된다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복합적인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 상담, 구조, 치료, 자활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one-stop care service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70%의 현장전문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반대 하는 의견은 두 기관이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이 상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통합에는 동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모든 관련 청소년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브레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자립은 말 그대로 홀로 살아가며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필

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다 알아서 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쉼터의 관계가 그리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청소년상담실이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쉼터 간에도 역할 구분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의 통합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으로 보이고, 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힘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여러 군데 하게 해서는 안되죠. 한 번에 전화 해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구조화는 우리의 몫입니다.

일곱째,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나 단체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중앙기구로서의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사회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의 현장전문가가 중앙기구로서의 지역사회 센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의견을 생생히 들어보자.

지역사회에 센터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서울, 광주의 경우 기존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일반 청소년들도 잠재적 가출자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축제 등을 통해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이 있었으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내가 불편할 때 한곳에 전화를 하면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112, 119처럼 중앙기구를 가지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청소년에 대한 초기의 정확한 사정과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적합한 시설에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 적응이 안되어 또 다른 시설들을 반복해서 재위탁 된다면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기구로서의 지역사회센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역사회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해 단순히 연계만을 위한 중앙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담당하고 그것을 각각의 시설이나 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기능이 추가될 때에만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통합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정과 연계기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개발 등 각 센터들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 내 10대청소년 보호시설을 지원합니다.

위의 진술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미 중앙기구에 대한 role model(늘푸

른여성지원센터)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구를 지역단위별로 설치해서 그 지역의 보호시설과 단체들의 hub역할을 하면서 개별 시설이나 단체가 할 수 없는 역할, 효율적인 연계기능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개별 시설, 단체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장에서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요구가 높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도 거의 모두(90%)가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단체 간의 협력이란 시설 간 협력, 단체 간 협력과 함께 시설과 단체의 협력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시설은 수용중심, 단체는 활동중심이라는 역할분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보호라는 것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의 역할과 단체의 역할이 조화롭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시설관계자들도 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설·단체 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보면, 청소년상담실과 보호시설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담실과 시설 간에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필요해요. 궁극적 목표에 대한 논의와 지원도 필요하구요. 경제적 문제 등이 결부되어서 서로 간에 눈치 보기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을 위한 것에 알맞은 활동이 중요한 것을 기관이 인정해야 되요.

시설과 단체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제의도 있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해요. 몇 개의 단체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개의 시설에서보다 여러 시설이나 단체에서 지원할 경우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고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되죠.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네요. 청소년 단체나 시설을 한곳에 모이도록 한 street가 있어야

해요. 현실적이지 않지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 간 협력이 기대만큼 잘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이 있어 시설 단체 간 협력이 말만큼 용이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서로 협력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단체와 시설들 간의 협력은 잘 모르겠는데 시설들 간에도 협력이 잘 안돼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원칙적으로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따라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시설과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 단체의 역할과 수행과제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의 역할 등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실무자들 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홉째, 청소년보호시설은 그 성격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묶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 80%가 동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같은 역할의 시설을 두고, 두 가지 다른 법률이 관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많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와 복지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다. 그런 사실과는 상관없이 법률이 보호법과 복지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유사한 시설도

어떤 시설은 보호법에, 또 다른 시설은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현장실무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여간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현장전문가들이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복지지원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런데 생활시설이면 생활 시설들 간에는 같은 지원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규정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애들이 어느 시설에 가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룹홈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시설들의 소속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그룹홈이 청소년을 수용하느냐, 노인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소속이 바뀌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그룹홈이 가지는 지위 상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³¹⁾

그룹홈은 보호방식으로 보건복지부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노인 등에 관련된 보호도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보면 청소년 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룹홈이라는 것이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어느 한 법령이나 기관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애우 그룹홈, 성매매청소년 그룹홈, 가출청소년 그룹홈이 다 가능한 것이다. 다 같은 그룹홈이라도 그 특성에 따라 소속과 적용법령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중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이 쉼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 쉼터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시설로 복지지원법의 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31)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의 성격은 이런 혼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것과 같은 것이다.

요약하자면 청소년보호시설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소속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실제 수용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관이 소속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관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열 번째, 청소년단체는 보호를 전담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보호업무와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 문항은 청소년단체의 역할에서 보호업무를 어느 만큼의 비중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가 시설과 같은 수용보호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면 시설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단체를 시설과 별개로 두어야 하는 존립기반도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단체는 활동중심 보호, 시설은 수용중심 보호로 분업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단체의 업무범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진술인데, 80%가 단체는 보호만을 전담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여러 번 언급된 전문화에 대한 기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단체는 보호시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 홍보 사업이나 각종 대형 이벤트, 교육 연수 사업 등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정책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사업을 보호단체에서 맡아주시고 보호시설에서는 요보호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는 시설보다는 규모의 면에서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도 더 많고 일회적인 프로그램 수행도 많으므로 청소년과의 긴밀한 교류와 친밀감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보호는 전문적으로 시설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체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업무만으로도 바쁘지요. 그리고 단체의 경우 직

장의 개념이 강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약하죠.

대다수의 의견이 단체는 소규모의 시설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해 주기를 보호시설 관련자들은 많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단체 현장전문가 의견분석

청소년보호단체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시설/단체의 유형분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위상, 시설과 단체의 업무의 특성화, 시설과 단체의 기능구분,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의 통합, 지역사회센터의 필요성, 청소년보호시설/단체를 관장하는 법체계,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바람직한 업무분장 등 10개의 문항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10곳의 청소년보호단체 현장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보호시설과 보호단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두 유형의 기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구분에 따라 청소년 시설과 단체는 청소년활동 시설·단체, 청소년복지 시설·단체,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6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10곳의 단체 중 4곳의 현장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며, 6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먼저 동의를 한 현장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이들은 대체로 구별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운영되어지는 시설, 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사례11>.

법상의 구분이라서, 그러나 청소년의 활동 구분보다는 행정상의 단체 구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사례13>.

일반화된 유형으로서 구분이 용이합니다<사례15>.

기본적인 사안에는 동의합니다. 프로그램의 단체와 수련장운영을 위한 복지시설과 수용과 상담을 위한 보호시설은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사례16>.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구별이 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복지시설단체와 청소년보호시설 단체는 보호와 복지 간, 또한 보호시설과 보호단체 간의 구별이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 청소년단체들이 대부분 수련활동과 보호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유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12>.

청소년 시설과 단체, 청소년 활동 시설과 단체가 중복되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사례14>.

청소년들은 획일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단체는 복지시설로 규정 후 다시 영역을 나누어야 합니다<사례17>.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시설 및 단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각 지역 내에 통합된 기관 또는 시설(지역의 지리적 면적, 청소년 인구에 따라 기관의 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두어 기능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되, 공간적 배치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무성의하고 턱없이 부족하며 위기지원에 대한 실무자의 마인드도 다르므로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기지원서비스 체계가 어느 기간까지는 지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단계적 통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례18>.

청소년활동시설/단체와의 구분은 기능의 특성상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기능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례19>.

시설은 그런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청소년활동 단체, 청소년복지단체, 청소년보호단체는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아하!센터의 경우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서 어느 한 영역으로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사례20>.

둘째,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쉼터와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같은 유형의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에서 5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를, 5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의견에 동의한 단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이들은 복지와 보호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현재의 기능을 고려할 때 동일한 성격의 기관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쉼터기능과 일부 중복되므로<사례12>.

성격이 비슷하니까, 쉼터에서 중복된 기능을 하는 것이 문제죠. 두시설이 독립적으로 전문화가 되기에는 아직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사례14>.

통합하는 것이 합니다<단체15>.

복지시설과 보호시설은 같은 것으로 묶어야...<단체19>

청소년보호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단체20>.

동의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며, 어느 경우 에나 명확한 분리는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 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역할과 기능의 중복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단체11>.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이 기거하면서 상담 및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성향을 보면 보편적인 청소년들이 가출(?)의 개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도 드롭인센터와 같은 기능들이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13>.

보호, 재활센터와 쉼터는 역할 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사례14>.

복지시설로 하되 각각의 유형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례17>.

다른 유형의 시설로 구분된 것으로 인한 문제는 실무적인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쉼터와 센터의 역할과 중복 역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복적 기능은 청소년에 대한 기본 서비스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유형시설 구분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업무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무적인 면에서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필요하며 업무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유형의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이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유형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례18>.

셋째, 개별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는 활동, 복지, 보호 업무 중 한 가지만을 전담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4곳의 현장전문가들이 동의를, 6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먼저 동의를 한 현장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업무수행에서는 협조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첨가하였다.

일차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업무 협조와 업무공유는 필요합니다
<사례13>.

전문화 시킨다면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사례14>.

업무성격 상이하므로 당연합니다<사례15>.

복지, 보호 등으로 나누어 효율적 서비스체계, 질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진행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을 임의로 구분하여 편의대로 구분했을 뿐, 질적 보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되, 이들 기관간의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필요합니다<사례18>.

동의를 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보호시설과 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안에는 활동과, 보호와 복지의 내용이 함께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영역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영역에 대한 평균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사례11>.

보호와 복지서비스는 업무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12>.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을 기질에 따라 임의로 분류해서 한 기관에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사례16>.

한가지만을 담당한다고 해도 그곳을 이용 및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활동, 복지, 보호적 개념이 들어갑니다<사례17>.

각 시설/단체의 업무 내용을 정하기 이전에 해당시설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업무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러한 명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사례19>.

1차 기관에서는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와 보호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사례20>.

넷째,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는 그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1곳의 현장전문가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7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였으며, 2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먼저 동의를 한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이들은 주로 '시설'과 '단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원론적인 구별을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보호업무에서의 경계가 보호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시설과 단체는 구분됩니다<사례12>.

업무성격이 상이하므로 당연합니다<사례15>.

청소년 보호시설과 단체는 업무의 고유성에서 생각해 볼 때 구분되어야 하며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통합 운영하는 식의 방법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 의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은 생활보호를 담당하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사례16>.

예시에 언급한 것처럼 보호시설이나 단체를 찾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만큼 이들을 다루는 시설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실무자들 역시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보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로 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고, 단체는 청소년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례17>.

시설은 청소년 수용과 보호, 양육(건강관리, 심리·정서적 지지, 청소년기 성장발달과제 지원 등)중심, 단체는 사업·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18>.

외견상 시설과 단체는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될 정도로 역할의 중복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역할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사례19>.

단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자율적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시설은 기본적인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자원이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사례20>.

동의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시설’과 ‘단체’라는 측면보다는 청소년보호업무에 초점을 두고 경계선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설과 단체의 차이점은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사례13>.

둘 다 비슷비슷 하므로 역할 구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YMCA에서 는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사례14>.

다섯째, 개별 청소년보호 시설이나 단체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성화, 전문화해야 한다(예 : 약물치료시설, 폭력치료시설, 학교부적응치료시설 등)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1곳<사례18>을 제외한 9곳의 현장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보호대상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치료나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전문화된 단체가 연계해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사례11>.

프로그램의 독특한 개발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사례12>.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사례 13>.³²⁾

전문화 시킨다면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친구에게는 학교 사회사업, 약물은 치료로 분리되는 추세입니다. 전체를 보고 지도 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 등 서비스는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죠<사

32) 질문자 : 개별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 특성화 되고 전문화된다는 것에 “적극동의”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동기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응답자 :어떤 단체든 설립목적과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돈을 찾아서 벗어나 버린다면 전문영역이 퇴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목적 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 필요한 공부도 하는 등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례14>.

상담, 보호, 근로, 복지, 교육, 취업알선 등으로 전문화해야 합니다<사례15>.

상담실과 센터는 업무가 중첩됩니다. 청소년 단체나 시설 상담 업무를 하는 곳이 산재해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필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대응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사례16>.

전문화는 필요하며 전문화 단체는 주변 인접단체의 서포팅이 되어야 합니다<사례17>.

각 시설/단체별로 주요대상 및 이슈에 대한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사례19>.

시설은 전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시설로서 1차 시설- 예- 청소년 수련관은 종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시설이며, 상담센터→지원센터→쉼터→전문 문제영역별 센터→장기 자립지원센터 등, 전문 문제영역별 센터는 수요에 따라 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성문제 영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하!센터의 경우 성문제 예방기능과 보호, 치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 예방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6개 광역시도 단위 1개소씩은 필요합니다 <사례20>.

그러나 <사례18>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증의 문제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시설 내에 공간적 배치를 분리하여 시설 내에서 특성화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 상담, 구조, 치료, 자활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one-stop care service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6곳의 현장전문가가 동의를, 4곳의 현장전문가가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먼저 이 의견에 동의를 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실이 종합지원센터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

종합적 업무통합에 전문화된 구분이 필요합니다<사례12>.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실시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미스가 나므로, 예를 들어, 1층 상담, 2층과 3층 치료실이고 아이들이 모이는 거리에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거리를 만들어도 아이들이 꺼리고 안 다닐 수 있을 것이니까요<사례14>.

모든 창구를 일원화하여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사례15>.

상담실과 센터는 업무가 중첩됩니다. 청소년 단체나 시설, 상담 업무 등을 하는 곳이 산재해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필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대응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사례16>.

매우 필요하며 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보호의 호스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사례17>.

필요하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화된 청소년시설 인프라

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사례20>.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종합지원센터와 상담실의 고유기능이 다름을 지적하고 인력 구성면에서도 상담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이 상호 협력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사례 11>.

흐름으로 보면 상담 기능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상담기능보다는 지역연계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사례13>.

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기반을 가진 기존 상담실을 지원센터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상담실의 활동방향이나 내용은 위기지원, 허브 역할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 상담실의 기능에 긴급구조 활동만 없어가면 된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고한 규정을 확립하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상담실은 위탁을 종료하고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공모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 18>.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련 민간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센터가 종합적으로 모든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다른 민간기관의 업무와 중복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상담실이 지향하는 점, 인력구성을 고려해본다면 원스톱 케어 서비스나 지원업무를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례19>.

일급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나 단체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중앙기구로서의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사회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는 모든 청소년보호단체의 현장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당연한 소리 아닌가, 단체별 이익에 따라 반대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사례11>.

필요하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화된 청소년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사례12>.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청소년을 의뢰받았을 때 그에 맞는 시설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사례13>.

지방 별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되고 있는 편이지만 지방은 어렵습니다<사례14>.

통제기구가 있어 조정과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사례15>.

매우 필요하며 상담실과 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보호의 호스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위 문항이랑 유사한 사안으로 같은 연유에서 동의를 표합니다<사례16>.

연대조직이 되던 개별조직이 되던 필요한 조치입니다<사례17>.

종합지원센터가 중심허브기능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담실이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를 새롭게 공모하여 출발을 지원센터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과정이 필요합니다<사례18>.

이 명제에 동의하나 연계서비스를 잘 하려면 intake를 비롯한 사례관리에 매우 숙련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수여야 합니다<사례19>.

의견6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유관기능으로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사례20>.

여덟째, 현장에서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요구가 높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도 10곳의 청소년 보호단체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소단체별 협력은 요구하나, 시설과 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지는 않으려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유해환경 감시단 간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시청, 구청, 청소년위원회에서 동일 사안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단체활동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사례11>.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사례12>.

인천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연합 모임을 통해 긍정적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꼭 필요합니다<사례13>.

요구가 높고 그 만큼 필요로 합니다. 기관들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성을 버려야 됩니다<사례15>.

협의체를 특성화별로 조직해서 구성해야 합니다<사례16>.

청소년 단체나 시설이 많지만 실제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서로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것이 민간단체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사례 17>.

꼭 필요합니다<사례14>.

성매매 청소년은 여지협, 가출 등은 쉼터로 되어 있고 또 그룹홈이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어 비슷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긴밀하게 협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협의체와 함께 수양 부모회 등 민간의 보호단체들 간의 업무연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대 활동을 종합지원센터가 해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청소년관련기관, 시설간의 협의회가 결성되어 반드시 정례적 모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둔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중복, 또는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18>.

요구도는 높으나 체계구축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헌신 등이 갖추어진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단체의 협의회와 학계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연구,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등 거시적인 관점과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가 거의 없다 <사례19>.

지역단위의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 협의회, 청소년상담센터 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등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별 네트워크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지역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형태로(복지관, 수련시설, 쉼터, 성폭력상담소, 정신보건센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도력 훈련이 필요하고, 전국단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례20>.

아홉째, 청소년보호시설은 그 성격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묶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 두 곳의 현장전문가<사례18, 20>는 입장을 유보하였고, 두 곳의 현장전문가<사례15, 19>는 이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6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먼저 이 의견에 동의를 한 현장전문가의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복지와 보호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복지를 상위의 개념으로, 보호를 하위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의 체계도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 제도권에서 지원과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합당합니다<사례15>.

청소년복지와 보호의 개념을 굳이 다르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법률상으로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의 설치를 규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예산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 한다면, 이는 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보호업무를 복지업무의 하위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사례 19>.

동의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이나 접근태도가 달라야 합니다<사례11>.

보호시설과 복지시설은 차이가 있습니다<사례12>.

통합되고 묶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목적이 부합되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사례13>.

보호시설이므로 보호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는 잘사는 것이지만 보호는 생존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호는 보호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사례14>.

복지시설과 보호시설은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복지시설은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보호시설은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들을 함께 생활하게 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례16>.

시설적인 면은 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나 활동 등은 포괄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례17>.

열 번째, 청소년단체는 보호를 전담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보호업무와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에서 3곳의 현장전문가들 <사례11, 18, 20>이 입장을 유보하였고, 4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3곳의 현장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먼저, 동의를 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단체를 청소년단체의 한 영역으로 보고 그 동안 청소년단체의 역할에서 보호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청소년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보호사업만 하는 청소년단체가 몇 개가 될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12>.

청소년 단체를 규정짓는 것은 단체의 특성화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업무 전반의 수행과 이를 특성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사례13>.

one-stop care service이 바람직합니다. 보호 하면서 제공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사례14>.

청소년보호전담단체로 하기에는 감시와 단속,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사례17>.

반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단체를 일반적인 청소년 단체와 구별하여 보호업무만 관장하는 단체로 특수화시키고, 이러한 단체가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업무성격과 시설 등 전반적으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사례15>.

청소년들의 문제가 다양하고 그들의 요구나 상황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례16>.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하면서 보호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각 단체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단체는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하여 거시적 관점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해야 할 것입니다<사례19>.

3) 종합평가와 시사점

청소년관련 활동과 시설, 단체에 대한 의견에서 단체의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보호활동과 복지활동의 개념적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시설과 보호단체의 성격도 불분명하며, 청소년단체

와 청소년보호단체, 청소년관련센터와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현재 개념상 명확한 구분을 법률이나 서비스전달 체계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위의 10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보호업무를 논하면서 이런 개념상의 구별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이견은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장 전문가들이 어떤 개념을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가 어떤 성격의 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청소년육성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맥락에서 보호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하였고, 청소년지원업무나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주로 일을 해온 단체에서는 보호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활동과 복지와 보호를 구별하고,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를 구별하며, 복지시설과 복지단체를 구별하는 등의 개념적 구분을 현실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적으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는 개념상으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단체의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와 복지를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체계를 다르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를 구별하는 것과, 특별한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는 특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부분 동의함으로써, 행정체계는 일원화하되, 그 안에서 역할 구분은 전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와 같은 의견 속에는 개념상의 정의나, 제도상의 분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전달하자는데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념상의 구별이나, 제도적인 구별은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념을 상위의 개념으로 들 것인지를, 그리고 시설이나 단체의 용어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기구와 역할이 법률적인 근거 하에 존립하고 행정체계가 마련되며, 그 행정체계 속에서 서비스기관들이 활동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 다만 급작스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청소년을 위한 마음이 일차적이면서도, 논의 끝에 굳이 법률적, 제도적인 구별이 필요하다면, 현장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입장에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때 각 영역별 이해관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도 주관부서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IV.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IV.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청소년보호시설이라는 용어는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 정의해 놓고, 청소년시설의 한 종류로서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보호시설이라 칭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라 정의해 놓고,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구분에 따라 이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규율하는 법률도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나뉘어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보호의 개념은 1997년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 파생된 것일 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은 청소년보호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이와 같이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보다는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이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된 출발점은 발달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제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것은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돌본다는 의미이다. 청소년보호의 의미를 이렇게 바라볼 때,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구분의 의미가 사라진다.

현재 법률상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센터는 청소년보호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청소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법적인 개념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들이 어떤 명칭을 갖든지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라면 이는 청소년보호시설이면서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념의 혼동이 있다면 이들 시설을 하나의 용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소년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년사법에서 소년원 등의 시설을 소년보호시설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의 수준으로 법적 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시설의 의미를 청소년복지시설까지 확장해 넓은 의미로 해석한 다 해도 현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쉼터 뿐이다. 게다가 이들 시설에 관한 규정도 매우 미비하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재활시설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1개 조문이 있을 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청소년쉼터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1개 조문과 시행령에 2개 조문, 시행규칙에 1개 조문이 있다. 반면에 같은 청소년 시설의 일종인 청소년활동시설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24개 조문, 시행령에 13개 조문, 시행규칙에 13개 조문이 있고, 각 조문에서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11개 종류로 세분하여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보호시설도 이러한 수준으로 시설의 종류를 세분화 하고, 이들 시설의 인력이나 운영, 지원수준 등의 법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과 비교해 양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활동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몇 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의무조항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도움이 꼭 필요한 소외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중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에게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보호시설의 현장전문가와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중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에게 낙인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도보호시설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시설로 바뀌었고, 그 중에서 청소년지원시설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지원이 늘어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은 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을 꺼리고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경험 여성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가출상태이고 작은 숙박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낙인효과로 인해 타인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생활은 견디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는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17개 청소년지원시설을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고 명칭도 청소년쉼터와 동일하게 개편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성매매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지금처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성매매 여성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빈곤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하고,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은 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위원회에서 담당해야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장기보호가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상의 공동생활가정인 소위 ‘그룹홈’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룹홈에서는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보호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이들의 수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청소년쉼터에서는 이들의 장기보호를 위한 시설을 섭외하기 위해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청소년쉼터와 그룹홈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고 소관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시설 간에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기보호가 가능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상의 보호시설 중 청소년시설을 분리·설치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에는 각 법률의 취지에 따른 보호시설이 규정되어 있고 이들 시설의 이용자에는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만 이용하는 전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청소년지원시설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써 규정하여 청소년쉼터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센터가 청소년위원회의 부서인지, 산하기구인지, 시설의 기능을 하는 곳인지, 단체의 기능을 하는 곳인지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절에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하나의 부서로서의 기능을 한 적도 있으나 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된 후에는 부서인 복지자활팀과 산하기구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이들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이들 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이들 센터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관한 규정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감시단의 증표교부와 감시단의 종류와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전부이다.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법률상 분명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에서는 간판만 새롭게 하나 내걸고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법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청소년쉼터, 성매매여자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긴급보호소, 드롭인센터 등의 청소년시설들의 역할과 문제점들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보호와 복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은 한 법률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 개념적으로 보호와 복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생각한다. 일단 ‘보호’라는 개념이 사용된 법-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보니,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상당히 협의의 개념으로 보호를 축소시킨 결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협의의 보호를 넘어선 보호의 대상을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될 때 보호라는 말을 재사용할 수는 없다 보니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복지’가 된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보호업무와 복지업무로 자꾸 분리하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보호와 복지는 원래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설이 보호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념적인 혼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시설은 보호법이나 복지법 중 하나에 일괄적으로 속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여성청소년지원시설은 여성부 소속에서 청소년위원회 소속의 청소년쉼터로 전환해야 한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의 문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설이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다 보니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성은 많지만, 아직 성매매를 실행하지는 않은 단계에 있는, 즉 성매매위험 노출 청소년(장기가출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보호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성매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위험노출 청소년들에게 사전 개입을 통해 성매매를 예방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로 지정이 되다 보면, 이러한 청소년들을 입소시킬 명분과 근거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는 점은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매매 경험을 이미 가진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지원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시설의 정체성에 공식적으로 성매매경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낙인효과를 가지게 되고 성매매청소년 스스로가 성매매지원시설에 살고 있다는 레이블(label)을 달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성매매경험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청소년보호시설로 하는 것이 보호의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나, 대상청소년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더 나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별 시설들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적 자원의 한계와 인적 자원의 한계로 생활지도와 상담 등을 제외하고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예상보다 적었다.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들도 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여행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것들이 많았다. 시설들의 여러 차원의 역량으로 볼 때 전문적 프로그램을 일일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쉼터나 성매매지원시설, 그리고 그룹홈 등은 수용보호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면서, 전문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협의체나 중앙센터 등에서 함께 모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중앙센터나 지역협의체에서 전문가가 순회파견이 되어 시설들마다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여건 하에서나마 시설과 시설, 시설과 단체 사이에서 이러한 분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과 단체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 사례발표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작업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임 등을 재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중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의 노력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에 따라 입소 청소년들의 탈락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의 중도포기는 청소년들의 성행이나 습성이 규율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려는 자기통제의 약화 등에서 그 1차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나치게 규제와 통제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탈락률은 어느 정도 시설규칙의 엄격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이었던 시설운영자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모두 규칙의 지나친 엄격성이 청소년들을 해당 시설에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탈락률이 높은 시설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혹시 ‘보호’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제한과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는 시설들의 탈락률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성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보호의 대상을 지나치게 여성청소년의 ‘성’에 두는 보호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10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10개 시설 중 7개는 여성청소년 전용시설, 2개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공용시설이며, 남성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단 1개에 그치고 있다.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성비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들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하는 염려가 생긴다. 이러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출이나 성매매를 한 여성청소년들은 ‘보호’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의도하지 않게 여성청소년들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보호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추세 아래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남성청소년들은 소외될 우려도 생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을 유형화하고 찾아 나설 때 남성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없애고 지역단위에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앙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시설 또는 시설과 다른 유관기관이 특성별로 잘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특성별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었다. 물론 전국의 시설별 분포와 지역별 실태를 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수도권과 특정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시설 수요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시설을 증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의 수가 170만 명이라는 보고를 볼 때, 시설의 주나 지역적 분포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위기청소년 중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설의 증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네트워킹을 책임지고 현실화 할 수 있는 기구가 지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지정, 또는 설립된다면 쉼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드롭인센터 등과 기

타 청소년단체들, 그리고 지역 복지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연계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단체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시설은 수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체에서는 집합적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한다면 시설들이 자체 내 프로그램 부재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설과 단체를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시설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보호시설의 보호대상은 청소년쉼터의 경우 가출과 비행 청소년, 성매매지원시설과 긴급보호소는 가출과 성매매 청소년, 그룹홈은 빈곤 가정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등으로 유형이 포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부류에 속하면서도 특별한 처우와 치료가 필요한, 예를 들어 경증 정신장애자나 장애청소년, 초등생 등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 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청된다.

조사대상 시설운영자들에게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여부와 평가의 방법 등을 알아 본 결과, 예상보다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적었으며, 평가의 방법도 단위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연간사업평가

를 통해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위원회의 차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시설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 데 그 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이 장에서는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규정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를 구별하는 것이 제도적, 실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많은 보호시설과 보호단체에서는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가 분장되지 않고, 따라서 전문적인 개입이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성격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역할이 규정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호시설은 위기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보호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고, 보호단체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이 역

할의 중심이 된다.

보호시설은 일정한 공간적 개념을 갖는다. 즉, 시설 내에서 청소년들을 수용함으로써 보호하는 개념을 갖는다. 이에 비해 보호단체는 기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거나 혹은 시설을 벗어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된다. 보호단체는 공간적인 개념에 벗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 드롭인센터와 같은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청소년보호시설이고,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나 이동청소년쉼터, 찾아가는 상담활동, 문제예방교육 등은 콘텐츠를 가지고 움직이는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시설은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그 안에 청소년이 와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비와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곳이라면, 보호단체는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장소의 구애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보호단체 현장전문가들도 대부분 보호시설은 청소년수용중심, 보호단체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역할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보호시설은 청소년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서 대상자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운영이 중심이 되고, 보호단체는 청소년 보호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파일럿 프로그램 중심) 개발과 보급, 연구 및 조사업무, 실무자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예방 및 치료 중개 등의 직, 간접적인 서비스 운영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시설과 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관련제도가 상호배타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보호시설과 보호단체에 대한 관련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중

심을 이루고 있는데(그 외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들은 많이 있다), 이들 법률 내에서도 보호시설과 보호단체에 대한 역할규정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를 관장하는 법률 간에도 보호시설이나 보호단체에 대한 제도의 역할개입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그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차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자원, 인적 요소, 활동내용들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단체 현장전문가들은 대부분, 보호단체의 보호활동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호단체들은 단체들 간의 네트워킹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호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들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호단체의 역할 중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적인 활동과 더불어,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시설과 보호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제는 하루 속히 구축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호단체는 모든 청소년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청소년관련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하며, 청소년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줄이고 공동협력 할 사업과 부족한 부분을 발견,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지역 내 자원들을 찾아내고 또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

인 보호활동을 기획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단체와 시설간의 중복되는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이양하는 과정을 통해, 보호단체와 시설간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구별되어, 보호단체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할 보호단체 협의회가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단체들이 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단체들 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일명 ‘청소년보호단체 협의회’와 같은 형식을 갖출 수 있으며, 단체의 역할이나 기능을 규정하고, 단체들 간의 협의할 사항이나, 대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 모델 제시 등, 보호단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단체가 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각 시설/단체별로 협의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의체가 위에서 제시한 제 역할들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존의 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검토와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제도적으로 혹은 소속 회원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는 학계와 연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목표설정 및 전문성,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경우, 실무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실무자들 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보호 활동이 지역 내 시설,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협의체에서도 단체장들이나,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호단체들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기능적으로 활동하게 되

면, 중앙에서 지역별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 장 혹은 실무자 간의 간담회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게 되어, 정보교환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달과정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각 단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단체들간에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활동을 전개하면, 비용은 반으로 줄고 그 효과는 배로 커지는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단체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활동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제기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별로 지역사회내의 사회내의 조직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기, 문제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단체가 있다는 정보가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지역사회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의 한 예로 현재 청소년지킴이 YP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학교에 긍정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보호단체의 활동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행할 때 효과적이다. 보호 단체의 건물이나 공간을 개방적인 형태로 건물을 개·보수 하고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추가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보호단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익한 사업에는 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며 모니터 활동 등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캠페인에 직접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브릿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노원구청소년쉼터의 경우 모녀(고등학생 딸)가 함께 참여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청소년보호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한다.

아웃리치 서비스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요이슈(폭력, 약물, 성 등)에 대한 캠페인을 해당지역으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해변가나, 유흥가, 우범지역 등에서 이동상담이나 보호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문제는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등 부정화법을 통해 캠페인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보다는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호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보호를 위한활동은 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도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보호단체는 지속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호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립시키려면,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과 유해업소 단속, 유해물질과 인터넷 유해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보호활동 들도 이끌어 내야한다. YP 활동 등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들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되려면, 재정적인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나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단체의 활동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보호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벤트성 보호활동과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병행하여, 홍보와 참여효과를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보호활동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호단체들은 부족한 예산과 기존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 하지 못하고 단기성 이벤트식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보호활동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비판의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성 사업이 모두 지양해야할 부분은 아니며, 그와 더불어 모니터활동이나 자원봉사자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지속사업과, 월별 사업 및, 행사성 특별사업들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병행해야 한다. 이벤트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속사업들과 함께 적절하게 구성한다면, 지역사회에 보호단체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보호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활동에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보호단체에서 중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야한다.

청소년보호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호활동을 하는 인적자원이다.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내일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사명의식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한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활동에 필요한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청소년보호단체는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한다.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학생들이 YP로 참여하거나, 교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도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생활 속에서 보호활동의 기능과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지역사회에도 보호단체의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어떤 일이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효율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보호시설이나, 보호단체는 다른 활동기관 들에 비해 제도적인 재정지원이나 실무자에 대한 처우가 낮아 실무자들이 심리적인 위축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보호단체 내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게 해야 하며, 지역 안에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먼저 보호단체의 재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보호단체의 활동이 보다 전문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나 보호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보호단체들은 시설이 소규모로 존재하고 비슷비슷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를 규모화하고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보호활동들이 중복되게 전개되는 비효율적이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보호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비용이나, 활동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호단체 종사자들의 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지원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청소년 보호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열악한 요건으로 인해 조직 내 인력의 전문성 및 임파워먼트 향상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보호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과정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발,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보호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보호활동의 역할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호단체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도 보다 명확

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단체와 지역사회 행정체계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전문창구가 마련되어야한다.

유해환경 감시와 같은 보호활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사회의 행정기관과의 매우 밀접한 협력을 요구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행정당국과 경찰서와 같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활동전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호단체의 활동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구청과 경찰서에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관련 업무 유관기관들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청소년보호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시설이든 단체 이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타 기관의 이해에 얽히지 않도록, 서비스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유관기관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V. 결론

1. 주요결과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와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보호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은 충실도 면에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방 1개 당 밀도가 높거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점은 여러 시설의 담당자나 청소년들에게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 10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10개 시설 중 7개는 여성청소년 전용시설, 2개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공용시설이며, 남성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단 1개에 그치고 있다.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성비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들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생긴다.

셋째, 청소년보호 시설들의 활동실적을 알아 본 결과, 수용보호하면서 생활지도의 맥락에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예상보다 적었다.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들도 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여행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것들이 많았다. 시설들의 여러 차원의 역량으로 볼 때 전문적 프로그램을 일일

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쉽거나 성매매지원시설, 그리고 그룹 홈 등은 수용보호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면서, 전문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협의체나 중앙센터 등에서 함께 모여 시행하든지, 아니면 중앙센터나 지역협의체에서 전문가가 순회파견이 되어 시설들마다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10개의 시설 중 예산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1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인가를 받고 있고,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운영이 아주 어려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단체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시설은 수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체에서는 집합적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한다면 시설들이 자체 내 프로그램 부재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보호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보면,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최소한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대개 소속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해환경감시단의 규모와 인적 물적 여건이 달랐으며, 센터의 경우는 중앙부서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자원을 갖고 있었다. 보호단체의 경우 청소년들을 수

용 보호하는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그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의 부담이 없었고, 따라서, 유해환경감시단은 작은 규모의 공간과 시설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센터의 경우 위기청소년들을 대할 때 때로는 일시적인 시설보호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시설과 설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호단체의 보호업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모두 자신들의 업무가 보호업무임을 인식하고 보호단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센터의 경우는 자신들의 사업내용이 보호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하는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기관이 보호단체라는 인식도 낮게 갖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관련기관에서 조차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아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보호업무의 범위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보호단체들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유해환경감시단과 센터의 사업내용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종류의 기관 모두 보호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수용보호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비행예방사업을, 센터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주된 사업내용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보호단체는 전체예산에서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인건비의 순이며, 단체 운영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단체들이 사업비는 지자체나 중앙부서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열악하여 실무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것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 포함된 보호단체들은 비교적 지역사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력체계는 보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요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끼리의 수평적 협력체계, 중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일원적 협력체계, 보호사업에 관여하는 성격이 다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학교와의 연계, 지역사회주민과의 연계, 전문가 집단 및 사법체계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보호업무가 수행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활동에 대한 의견에서 현장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보호활동과 복지활동의 개념적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청소년보호업무를 논하면서 이런 개념상의 구별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적으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업무는 개념상으로도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단체의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와 복지를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체계를 다르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를 구별하는 것과 특별한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는 특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부분 동의함으로써 행정체계는 일원화하되 그 안에서 역할 구분은 전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 속에는 개념상의 정의나 제도상의 분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정책제언

첫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청소년보호시설이라는 용어는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의 수준으로 법적 인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중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에게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장기보호가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상의 보호시설 중 청소년시설을 분리·설치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시설 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중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의 노력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보호의 대상을 지나치게 여자청소년의 ‘성’에 두는 보호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없애고 지역단위에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앙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보호시설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규정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할 보호단체 협의회가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다양한 방법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단체는 지속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호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벤트성 보호활동과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병행하여, 홍보와 참여효과를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보호활동이 이뤄지게 한다. 청소년보호활동에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보호단체에서 종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야한다. 청소년보호단체는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한다. 보호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호단체 종사자들의 보호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지원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 보호단체와 지역사회 행정체계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전문창구가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관련 업무 유관기관들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청소년보호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 외4인(2001).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설치 운영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공정원(2000). 약물중독 청소년의 효과적 치유 방안에 관한 연구-중간 거주시설 프로그램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장희(2001). 유해환경과 감시단의 역할.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2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권이중·권병진(1999). 청소년유해환경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현(2001). 감시단 조직강화에 대한 대책. 2001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4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문조(1997).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미희(1997).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대한성공회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강(2001). 비행청소년에 대한 수탁시설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2).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화(2001). 새로운 민감감시단의 확충방안.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1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진화(200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직체 협력방안. 2001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제3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진화 외(200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의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진화·김진호·조정하(2004). 2003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국고지원 사업 평가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진화·권장희(2001). 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모델링 실천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태현 외(2002).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향초 외3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개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현정(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현황-소년원 특성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

- 책마련을 위한 2차토론회 자료집.
- 노동익(1997).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충남지역 육아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늘푸른여성정보센터(2001). 청소년쉼터 전문프로그램 자료집. 서울: 늘푸른여성정보센터.
- 대구YWCA·청소년보호위원회·대구광역시(1999). 1999년도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종합보고서. 대구: 대구YWCA·청소년보호위원회·대구광역시.
- 도종수 외 3명(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맹영임·이광호·김민(2003). 청소년단체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성호(2001).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간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2001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제1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소은(2002). 성매매청소년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200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과제.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3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성희(1995). 청소년기관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변화순 외3인(2002).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구. 서울: 여성부.
- 변화순 외5인(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서울: 법무부·여성부.
- 보건복지부(1999). 선도보호시설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부산YWCA(1999). 부산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종합보고서. 부산: 부산YWCA·부산광역시·청소년보호위원회.
- 서울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1999). 서울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종합보고서. 서울: 서울YWCA.
- 성매매방지기획단(2004).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안). 서울: 성매매방지기획단.
- 신기숙(2001). 청소년성문화와 유해환경.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3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신민선(2001). 자원봉사자 조직과 과제-CIPS모델.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1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여성부(2001).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1). 성매매 관련 전문가의식 조사.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4).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5). 성매매 방지법 시행관련 국민의식 조사. 서울: 여성부.
- 오치선 외6인(2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오치선 외6인(2000).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우정자 외3인(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명숙(1997).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미경(2001). 청소년보호시설 강화와 사회복귀에 대한 대안. 2001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4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민희·이명숙·정희옥·이춘화(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단(2002). 가출청소년 현황 및 보호시설의 실천 프로그램 요소 제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자리(2002).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방안.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대구, 경북지역).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춘화·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택수 외3인(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및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혜심(2001). 가출여자청소년들의 특성과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선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2000). 2000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인천: 인천광역시.
- 임성택 외2인(2000).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응수(2000). 청소년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혜(2003).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 연구-원주시 지역육구조사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동현(200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의 활성화 방안.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3차 워크샵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경숙·민수홍·김은혜(2002). 범죄청소년의 사후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인숙(2003). 가출 매춘경험여성의 선도보호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흥식 외5인(2000).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전략.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주동범(2004). 청소년과 청소년환경: 그 의미와 영향. 부산의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의 환경. pp. 3-24. 부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 차광선(1997).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차정섭(2001).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1997). 청소년법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전략.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시설 현황 청소년보호활동 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보호관련법령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시민단체 감시단 실무책임자 워크샵 자료집.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비전과 운영계획.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가출청소년대책!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최인섭·원혜옥·강은영(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최현복(200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방안.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대구·경북지역).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환경론. 서울: 교육개발원.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편(2004). 2003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평가.
 서울: 청소년위원회.
 함병수(2002). 청소년유해환경의 의미와 대처방안.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대구·경북지역).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岐阜県警察(2001). 少年非行の概況.
 藤本哲也(1993). 刑事政策20講. 青林書院.
 藤本哲也(2000). 犯罪学の散歩道. 戸籍時報. pp. 78-79.
 仙台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1998). あゆみ.
 安形静雄(1998). 更生保護史における女性たち. 更生保護30—32.
 重松一義(1976). 少年懲戒教育史. 第一法規出版会社.
 中村金彦(1985). B B S運動とその周辺の諸問題. 犯罪社会学研究 10.
 内山絢子(1986). 警察研究 57-11. pp. 22.
 関力編(1998).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発見・調査・審判・処遇の実態—. 有信堂.

Bloom. B.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Bandura, A.(1973). "Social 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ion processes". in Davi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Publishing Co.
 Lerner. R.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Sage Publications. Inc.
 Bronfenbrenner, U. (1974). The origins of alienation. Scientific American, no, 231, pp. 53-61.

부 록

1. 청소년보호 시설 · 단체별 현황표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 청소년 면접조사지

부록 1 :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별 현황표

<부록표 1> 청소년쉼터시설별 현황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서울	서울특별시립 신림청소년쉼터	남	14-20	20	1-3개월	10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국비 지방비
서울	강남구 청소년쉼터	남	10-19	15	1일 -6개월	7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지방비
서울	서울특별시립 구로청소년쉼터	여	9-24	20	3개월	11	한국청소년연맹	국비 지방비
서울	노원구 청소년쉼터	여	9-19	13	일시1개월 단기3개월 장기6개월	4	평화 복지재단	지방비
서울	서울YMCA 청소년쉼터	여	9-19	12	1개월	5	서울 YMCA	국비
서울	강서(새날) 청소년 쉼터	남	9-19	10	6개월	5	새날을 여는 교회	자부담
서울	어울림	여	9-24	15	중장기	3	개인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산	부산 청소년쉼터	여	9-24	15	2주	4	재)불국도 청소년도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구	달서구 청소년쉼터	남	9-19	10	일시15일 단기3개월	3	대구 YWCA	국비 지방비
대구	대구 청소년쉼터	남/여	10-19	10	2주	4	대구 YMCA	국비 지방비
인천	남동 청소년쉼터	남	중등1 고등3	13	6개월	5	개인	지방비
인천	성산사랑의 집 청소년쉼터	여	중등1 고등3	7	장기	2	개인	지방비
인천	소망 청소년쉼터	여	중등1 고등3	10	6개월	4	소망교회	자부담
인천	인천 청소년쉼터	남	13-19	15	6개월	4	재)인천가톨릭 청소년회	국비 지방비
대전	대전 남자청소년쉼터	남	9-24	12	일시/중기	4	대전시동구 나눔의집	지방비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경기	용인 푸른꿈쉼터	남/여	12-19	15	일시15일 단기1개월 장기3개월	5	사) 푸른꿈청소년 상담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기	평택 청소년쉼터	여	9-24	15	6개월	4	사) 평택 홍사단	국비 지방비
경기	의왕시쉼터	남/여	9-19	15	6개월 (1회연장)	3	개인	국비 지방비
강원	강원도 쉼터	남	9-24	15	6개월	6	재) 춘천기독교청 년유지재단	지방비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충북	청주 청소년 쉼터	남/여	10-20	14	6개월	4	청주명성교회	국비 지방비
충북	청주 참사랑 청소년 쉼터	남/여	10-18	15	6개월	2	개인	자부담
충남	천안 청소년 쉼터	남/여	13-19	15	6개월	5	중부순복음교회	국비 지방비
충남	아산 청소년 쉼터	여	-20	10	3~6개월	4	아산가정 행복학교	자부담
충남	아산시 가출 청소년쉼터	남/여	-19	15	30일이내	6	사) 충남육련청소 년육성개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북	익산 청소년 쉼터	남/여	9-24	12	6개월	5	기독교성결교 평강교회	국비 지방비
전북	전주 푸른쉼터	여	9-24	15	일시	3	사) 기독교 청소년 협회	지방비 자부담
전북	전주 친구 청소년쉼터	남	9-24	8	장기	4	청소년문화공동 체 십대지기 전북지구	자부담
전남	목련 청소년쉼터	남/여	9-24	1	중장기	3	사) 청소년 좋은세상	자부담
전남	유달 청소년 쉼터	남/여	9-24	8	6개월	4	사) 청소년 좋은세상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북	경상북도쉼터 희망의샘 쉼자리	여	9-24	10	6개월 1회연장	4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국비 지방비
경북	포항 청소년쉼터	여	9-20	7	일시15일 단기3개월	3	복지세상 내일을 여는집	자부담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경남	김해YMCA 청소년 쉼터	남	9-24	15	15일	4	김해 YMCA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창원 하라쉼터	남	9-24	15	일시	4	한교회	국비 지방비
제주	제주청소년 쉼터	여	9-24	12	3개월	3	사) 제주 상담센터	국비 지방비

<부록표 2> 드롭인센터별 현황

지역	명칭	보호성 별	보호 연령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서울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긴급보호소	여	13-20	1-2일	3	사) 청소년을위한내 일여성센터	국비 지방비
부산	부산청소년종합지원 센터 드롭인센터	남여	9-24	오전10-오 후10	3	신라대학교	국비 지방비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드롭인센터 (한울다리)	남여	14-19	1-2일	2	인천지역사회 지역청소년보호위 원회	국비 지방비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드롭인센터	남여	초등-고 등	24시간	3	광주YWCA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드롭인센터 (우리자리)	남여	중등- 고등	24시간	4	성공회 나눔의집	국비 지방비

<부록표 3>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별 현황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서울	씨튼 해바라기의 집	여	중등- 고등	9	졸업 시까지	3	사랑쉼터 수녀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서울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여	중등- 고등	13	1년/연장	4-5	재)기독교 대한감리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서울	우리들쉼자리	여	중등- 고등	10	1년/연장 (20세)	3	미로원 성모수녀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직원	운영 주체	예산 구조
서울	평화의 샘	여	-19	12	졸업시 까지	4	천주교 사회복지 협의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서울	유프라시아의 집	여	15-19	12	장기	5	서울가톨릭 대교구수녀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산	신나는 디딤터	여	-19	50	장기	9	기독교 대한감리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산	구세군신애관	여	20	13	1년/ 연장2회	9	구세군 복지재단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구	가톨릭 여자기술원	여	13-19	21	1년/연장	10	서정길 대주교재단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구	수지의 집	여	14-19	14	장기	4	대구 가톨릭복지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전	우리 청소년쉼자리	여	12-19	13	졸업시 까지	5	예수수도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울산	성심새롬터	여	-19	17	1년/연장/ 장기	7	예수성심전교 수녀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강원	루치아쉼터	여	13-20	9	1년/연장 졸업시 까지	3	가톨릭 사회복지 협의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강원	선혜원	여	13-19	5	장기	3	자비복지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남	여수사랑의집	여	15-19	16	장기	8	여수시	국비 지방비
경북	우리들쉼터	여	-20	4	장기	4	사회복지법인자비 동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창원여성의 집	여	13-19	25	장기	8	사회 복지법인 범숙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로템의 집	여	13-18	22	-19/고졸	7	천주교 마산교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록표 4> 그룹홈시설별 현황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서울	물뎨동산	남	5-	2	자립시	1	개인(교회)
서울	우애의집	남	4-7	1	장기	1	
서울	등근나라	남/여	만1세- 취학전	6	6개월 -취학전	2	개인
서울	예닮의 집	남	5-13	7	자립시	2	개인(카톨릭 평신도)
서울	해솔의집	남/여	유치원생- 중등	9	2년	4	성령선교 수녀회
서울	살레시오나눔의집 (방화동)	남	초등 -고등	3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 살레시오
서울	선재동산	여	16-19	4	자립시	1	(사)우리는 선우
서울	마드레 나자레나의집	남	4세-초등	5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2	거룩한열정의 수녀회
서울	젬마의 집	여	5-20	21	자립시	2	개인
서울	효주 아네스의 집	여	14-21	13	중1 -고졸후 취업시까지	3	
서울	로템나무 집	여	-13	7	13세까지	5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서울	섬김의 집	남/여	7-19	9	자립시	1	
서울	샘물의 집	남/여	1-25	7	자립시	2	개인 (벤엘교회)
서울	슬기의 집			10		1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서울	대한성공회 행복한 우리집	여	14-19	5	1년이상 (최장20세 까지)	1	대한성공회
서울	민들레 쉼터	남/여	5-13	7	1주-1년 (연장가능)	3	(사)부스러기사랑 나눔회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서울	예수 그리스도의 집	남	8-13	8	고졸	2	천주교 성삼수도회
서울	느티나무 청소년 쉼터	남	14-19	5	6개월/자립	2	신양교회지역사회 선교관
서울	신림 우리집	남/여	8-19	8	고졸	2	개인
서울	다운이내집	남/여	6-17	8	고졸까지	1	글라렛 선교수도회
서울	하늘이네		3-18	11	자립시	2	개인
서울	개봉동 만남의집	남/여	6-19	4	자립시	1	수도회
서울	만남의 집	여	6-19	4	자립시	3	서울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e-좋은만남의집	남/여	5-	6	자립시	1	서울포교성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살레시오 나눔의 집(구로동)	여	초등 -고등	5	자립시	1	가톨릭 살레시오
서울	한양탁아소	남/여	없음	7	없음	2	개인
서울	또 하나의 집	여	14-19	7	무제한	1	전국여교역 자연합회
서울	나자렛 쉼자리	여	12-24	12	1년	4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 수녀회
서울	한울타리	남	7-17	7	자립시	1	개인
서울	살레시오나눔의집(석관동)	남	초등 -고등	4	고등학교 졸업	3	가톨릭 살레시오
서울	서울은총의집 (샹터)	여	19-자립	5	취업후 자립	1	작은자매회은총의집 이모들의모임
서울	정릉3통 은총의 집	여	7-15	8	자립시	1	작은자매회 (개인)
서울	정릉6통 은총의 집	여	12-19	8	자립시	1	작은자매회
서울	소년예수의 집	남	6-18	10	고졸	1	살뜰성바로오 수녀회
서울	별빛내리는 마을	남/여	0-10	11	장기	2	개인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서울	성심대건의집	남/여	4-	7	4-18세	3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서울	해뜨는집			0		1	
서울	살레시오 나눔의 집 (목동)	남/여	초등 -고등	5	고졸 후 자립시	1	가톨릭 살레시오
서울	살레시오 나눔의 집(신월연립)	남	초등 -고등	5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살레시오
서울	서울 나자렛집	여	13-20	13	7-8년	3	(재)한국 천주교살레시오수녀 회
서울	서울 살레시오 나눔의 집	남/여	9-18	63	20세	3	(재)한국 천주교살레시오 수녀회
서울	살레시오나눔의 집(신월동)	남	초등 -고등	7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 살레시오
서울	라우라의 집	여	20-22	12	2-3년	2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 수녀회
서울	마자렐로 센터	여	14-18	40	-18세	3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 수녀회
서울	아름다운 집	여	3-13	6	고졸후 자립시	1	개인
서울	보현 연꽃동산	남/여	1-13	4	대졸	3	(사)우리는 선우
서울	성모의 집	여	5-18	16	18세 (자립시)	2	개인
서울	요한의 집	남/여	3-18	13	고졸	3	개인
서울	어울림 청소년쉼터	여	9-24	6	중장기	3	개인
서울	테레사의 집	여	3-	17	18세 (자립시)	3	성모성심 수도회(재)
서울	리라 그룹홈	남/여	3-18	5	18세	4	사)리라 학원
서울	다비다의 집	여	8-19	11	자립시	2	(재)열린문 청소년재단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부산	보광의집	남/여	제한 없음	19	제한없음	2	사찰 (보광정사)
부산	부산 나자렛집	여	6-17	6		3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부산	부산 해피홈	남/여	7-18	9	고졸	2	개인
부산	안드레아 청소년의집	남	14-18	4	고졸	1	개인
부산	천사의집(부산)	여	8-18	6	19세	4	아씨시의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부산	성분도좋은친구 쉽자리	여	-18	6	단기보호 후 연장	3	부산올리베따노성베 네딕도수녀회
부산	이삭의 집	남/여	5-	19	자립시	3	개인
부산	맑은사랑	여	5-10	5	14세	2	삼위일체 수녀회
부산	안드레아의집	남	4-18	21	무기한	4	개인
부산	이삭청소년센터	남	16-24	0	사회복귀	2	개인
부산	우리들의 집	남/여	4-19	20	6개월-10 년	4	
대구	에덴그룹홈	남/여	5-14	5		2	우봉재단 에덴원
대구	소망의 울타리 청소년쉼터	남/여	제한 없음	8	자립시	2	대구 온누리교회
대구	희락의집	남/여	1-19	13		1	개인
대구	보리수 마을	남/여	4-18	13	장단기	3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법인 감천
대구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쉼터	남/여	초등 -자립	15	자립시	1	개인(교회)
대구	청소년 생활공동체 한몸	남	14-20	2	19세	2	개인
대구	백합누리	여	16-20	3	3~4년	1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인천	스위트홈	남/여	4-21	14	자립시	2	개인
인천	희망 그룹홈	남/여		0			
인천	너랑나랑	남	10-	8	초등3- 고3까지	1	천주교 아우구스띠노수도회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광주	광주 나자렛집	여	13-18	19	1-6년	3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광주	길상원-송광 종합사회복지관	남	10-20	4	18세	2	(재)불교중앙교원
광주	광주성빈여사 에스더집	여	0-19	10	18세	4	(사)광주여자기독교 복지 사업위원회
광주	우리집	여	17-26	9	6개월	3	사회복지법인대한사 회복지회 광주지부
광주	각화동나자렛집	여	7-18	8	1-6년	2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수녀회
광주	광주 돈보스코 나눔의집(두암동)	남	초등 -중등	3	중2,3	2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광주	광주 돈보스코 나눔의집 (사비오)	남	14-19	11	고졸	2	살레시오수도회 (정혜선)
광주	광주 로템나무	여	5-14	5	만18세	2	사회복지법인동명회 신애원
광주	비둘기 집	여	유아 -자립	4	자립시	1	개인
광주	광주 돈보스코 나눔의집(화정동)	남	초중	6	중2	1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대전	작은자의 집	여	10-12	2	2년	2	빈들교회
대전	신단진 그룹홈	남/여	중등 -자립	2	독립시	2	석봉장로교회
대전	희망나눔터 꽃담	여	10-20	2	장기	2	성남지역 아동센터
대전	대전 나자렛집	여	6-18	17	자립시	3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대전	장안교회	남/여	18-	8	2년 이상	3	교회
대전	대전 돈보스코집	남	10-17	15	고3	3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대전	그루터기	남/여	1-18	2	18세	3	기독교한국침례회새 날교회
대전	밝은 내일의 집	남/여	3-18	6	장,단기	2	좋은교회
울산	은총의 집(울산)	여	6-18	5	상황에따라 자립시	2	(재)예수성심 전교수녀회
울산	작은천사의 집	남/여	0-18	7	장기보호	2	사회복지법인요셉복 지재단
울산	천사의집(울산)	남/여	초등-	5	자립시	1	
경기	꿈둥지			0	자립시	2	광명 시민교회
경기	살레시오나눔의 집(철산동)	남	초등 -고등	5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 살레시오
경기	성요한의 집	남	15-21	15	3년 (독립준비기 간)	3	개인
경기	실로암의 집	남	16-25	4	자립시	1	개인(상도제일교회특 수선교사)
경기	새샘터 청소년공동체	남	13-18	7	2년	2	(재)한국 예수회
경기	살레시오 나눔의 집(여월동)	남	초등 -고등	13	고등학교 졸업	3	가톨릭 살레시오
경기	엠마오의 집	남/여	초등5 -고등3	5	1-2년	3	가톨릭 대학교
경기	살레시오 나눔의집(원미동)	남	초등 -고등	0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 살레시오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경기	성남 만남의집	여	5-18	10	상황에따라	3	포교성베네딕도수녀 회
경기	은행골우리집 (남자)	남	고등 -자립	7	자립시	2	사회복지법인은행골 우리집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경기	은행골우리집 (여자)	여	초등 -자립	7	자립시	2	사회복지법인은행골 우리집
경기	작은사랑의 집	남/여	5-18	7	고졸	1	개인
경기	새날우리집	여	12-19	8	중장기	3	사)청소년이아름다운 세상
경기	햇살가득한집	여	13-18	4	고졸/자립	3	영덕교회 (기장)부설지역선교 센터비치누스
경기	수원 나자렛집	여	8-18	12	중장기	3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 수녀회
경기	유두고선교회 나섬의 집	남/여	초등 학생	10	자립시	2	개인
경기	연꽃마을 행복한 집	남/여	제한 없음	6	고졸	1	연꽃마을
경기	시흥신나는 아동그룹홈	남	6-18	6	장기	3	시흥신나는 아동청소년 복지센터 (신현교회)
경기	들꽃피는 마을 백합가정	여	10-20	3	자립시 (20세)	1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마을 새밭토끼풀가정	남	13-20	5	자립시 (20세)	1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마을 아모텍진달래가정	여	13-20	6	자립시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경기	들꽃피는마을 야긴새벽이슬가정	여	13-20	5	자립시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마을이랜 드들국화가정	여	10-20	5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마을 인애해바라기가정	남/여	13-20	7	자립시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 마을 코스모스 가정	남	13-20	5	자립시 (20세)	1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 마을	남/여	초등 -20	51	장기	3	(사)들꽃 청소년세상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경기	들꽃피는 마을 한신예수가정	남	13-20	6	자립시 (20세)	1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해피하우스	남/여	5-18	4	2-7년	2	하나교회
경기	들꽃피는 마을 잔디네 가정	여	13-20	5	자립시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들꽃피는 마을 상록수가정	남	13-20	3	자립시 (20세)	2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벤엘의 집	남	14-20	6	개인차	1	교회
경기	들꽃피는 마을 한신쉼터	여	13-19	15	6개월-1년	1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	수산나네 집	남/여	5-16	12		1	개인
경기	굴암사		초등 -고등	7	고교졸업	2	개인
경기	어린이소망의 집	남/여	7-12	6	무제한	1	개인
경기	느티나무마을 (여럿이함께 만드는학교)	남/여	8-24	9	고졸 및 자립	3	여럿이함께 만드는학교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경기	자비동산	남/여	3-19	18		1	보현사
경기	살레시오 나눔의 집(안양)	남	초등 -고등	4	고등학교 졸업	1	가톨릭 살레시오
경기	나너우리집	남/여	5-13	22	자립시	4	(재)열린문 청소년재단
경기	일신우리집	남/여	7-자립	12	자립시	3	개인
경기	희년의 집	남/여	4-자립	32	자립시	3	개인
경기	민음의집 (소망.기쁨의집)	남/여	4-21	12	단기3개월 장기3년	3	개인
경기	소망천사원	남/여	0-자립	9	자립시	1	개인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강원	대건의집	남/여	6-14	5	고졸	1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회
강원	하늘바라기	남/여	7-10	5	자립시	2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강원	꿈동산	남/여	7-23	17	자립시	2	개인
강원	호수의집	남/여	2-대졸	20	대학졸업	2	개인
강원	섬골 어린이 시설	남/여	4-24	24	대학졸업	1	개인
충북	소년 예수의 작은집	남	5-18	13	자립시	3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충북	들꽃마을		제한 없음	8	제한없음	1	개인
충북	제천종합사회 복지관 그룹홈	여	8-13	5	6개월 (연장가능)	2	사랑의 씨튼 수녀회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충북	성환그룹홈	남/여	제한 없음	4	자립시	3	미래를여는 아이들(천안 방과후 교실 연합)
충북	청소년한돌회	남/여	0-18	9	자립시	2	
충북	파랑새 다윗가정	남/여	8-19	7	자립시	3	개인
충북	참 사랑의 집	남/여	-18	7	자립시	2	개인
충북	라파의집	남	8-19	14	자립시 (20세)	3	(재)열린문 청소년재단
충북	오은 셋별원	남/여	0-18	8	0-18세	2	종교단체
충남	어린이센터	여	5-13	13		2	개인
충남	그리스도의집	남/여	0-8	5	18세	1	교회
전북	참사랑등지	남/여	제한 없음	11	제한없음	1	

지역	명칭	보호 성별	보호 연령	보호 인원	보호 기간	실무 직원	운영주체
전북	우리집(전주)	여	9-24	5	중장기	2	개인
전북	임마누엘 청소년쉼터	남	15-25	12	2년	1	개인
전북	천사의집(전주)	남	13-20	13	장기	2	천주교 전주교구 내 법인 양지뜸
전북	청소년이 행복하게 노는세상(청노세)	남	9-24	6	중장기	1	
전북	사랑샘쉼터	남/여	5-12	4	자립시	2	개인
전남	평화로운 집 (성신원)	남	0-18	6	18세	3	사회 복지법인 순천성신원

<부록표 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별 현황

단체 종류	주무 부처	단 체 명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회원수)		설 립 목 적
사단 법인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65.12. 8	59개 청소년단체 2,961,553(2,086,400)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사단 법인	문화관광부	국제청소년문화협회	1980. 4.24	11,258	(10,752)	국제청소년과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국위선양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청소년불자 실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젊은 여성의 기독교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	"	대한불교청년회	1920. 6.20	1,880	(800)	
"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966. 4.16	47,577	(46,724)	
"	"	대한YWCA연합회	1922. 4.20	90,099	(12,770)	
"	"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929.12. 1	17,816	(17,104)	종교, 체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	"	무등청소년회	1993. 8.25	4,475	(3,473)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	"	삼동청소년회	1989. 1.18	8,178	(7,125)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1997. 8. 7	11,414	(7,472)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	"	파라미터청소년협회	1990. 2.12	16,066	(15,34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	"	한국질스카우트연맹	1946. 5.10	219,936	(200,240)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	"	한국라보	1973.12.31	5,266	(3,920)	각각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	"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1997. 7.15	85,974	(32,408)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	"	한국스카우트연맹	1922.10. 5	371,314	(338,278)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1967. 4.17	56,330	(26,199)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	"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1992.12.26	14,423	(8,866)	국제 친선교류 진흥과 청소년의 사회봉사 활동

단체 종류	주무 부처	단 체 명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회원수)		설 립 목 적
사단법인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2. 6. 1	1,503	(1,427)	국내·외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며 건전 청소년 육성
"	"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1994. 7.22	8,982	(7,936)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한 공동체적 삶의 실천
"	"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1991. 5. 4	35,380	(20,6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	"	한국청소년선도회	1981. 3. 6	12,687	(11,955)	청소년 탈선예방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한국청소년연맹	1981. 3.19	432,303	(349,659)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	"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1922. 4. 5	149,766	(142,868)	청소년의 제반문제 연구 및 인재양성
"	"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1989. 7.10	52,068	(44,159)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	"	한사랑청소년광장	1997.12.31	133,855	(126,000)	아동·청소년문제 해결과 상담·선도
재단법인	"	성산청소년육성재단	1994. 2.28	3,627	(2,67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	"	원불교청년회	1964. 7. 5	25,377	(24,799)	원불교 이념을 실천하며 청소년 도덕운동 전개
"	"	천운청소년육성회	1992. 6.29	744	(500)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견과
"	"	청소년과사람사랑	1992. 6.22	4,835	(4,135)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	"	한국불교청년회	1911. 6.15	35,230	(31,900)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육성
"	"	한국YMCA전국연맹	1903. 4. 3	117,537	(14,616)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사단법인	교육부	세계도덕재무장(MRA)	1948. 6. 4	79,097	(76,132)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 지도 육성
"	"	한국본부	1954. 1.30	9,710	(5,500)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5.21	9,940	(514)	어린이들을 장차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
"	"	한국어린이육영회	1913. 5.13	9,936	(3,228)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재단법인	"	홍사단 오운문화재단	1981.10.19	435	(413)	유능한 인재 양성과 건전 청소년 육성
사단법인	행정 자치부	한국BBS중앙연맹	1964. 9. 5	35,566	(17,495)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	"	한국시민자원봉사사회	1995.10.28	18,086	(0)	시민 자원봉사정신의 구현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단법인	경찰청	한국청소년육성회	1970.11.11	20,562	(2,769)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사단법인	보건 복지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961. 4. 1	46,210	(3,926)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특수법인	"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1953. 4. 5	162,431	(150,221)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사회복지 법인	"	한국복지재단	1948.10.15	150,738	(54,935)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사단법인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962.12. 7	224,369	(76,892)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사단법인	정보 통신부	한국우주정보소년단	1989. 3.11	49,089	(46,438)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와 신진과학입국 실현
사단법인	농촌 진흥청	한국4-H본부	1954.11. 9	74,461	(64,740)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사단법인	외교 통상부	유엔한국학생협회	1952. 5.11	540	(500)	UN의 목적 및 이념구현과 국제학생간의 우의증진
사단법인	환경부	그린웨일리·녹색소년단	1994.10.12	30,021	(17,850)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보호 정신 함양
재단법인	서울 특별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5.10.31	6,212	(1,071)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정화·복지증진
"	"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1994. 7. 1	4,182	(4,112)	심신단련과 봉사정신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재단법인	인천 광역시	인천가톨릭청소년회	1996.12.30	24,088	(22,800)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단체 종류	주무 부처	단 체 명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회원수)		설 립 목 적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연구원	1998. 7.30	1,347	(1,270)	청소년복지 분야 연구 및 다양한 활동 전개
지방공사	행정자치부	엑스포과학소년단	1995.12.19	1,685	(1,678)	청소년의 과학탐구 활동 및 미래정보사회의 창의력 함양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1977. 3.17	1,711	(400)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사단법인	충청북도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1997.12.30	18,146	(15,478)	충·효·애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임의단체 "		아이섹인코리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1962.11.26 1948. 4.25	514 114	(493) (11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참여된 인간세계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마을	1989. 9.12	4,714	(1,139)	체험위주의 활동을 제공하여 올바른 청소년육성
재단법인	문화관광부	21세기공동체개발원	1994. 6.28	664	(560)	수련거리연구 개발·보급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제시
의료법인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사랑회	1994. 8. 1	1,085	(1,026)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며 건전 청소년육성과 복지사회 건설
임의단체 "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1996. 3. 1 1998. 3. 5	14개 지역청소년단체 12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2004 : 234)

청소년보호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³³⁾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에서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고 회신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6.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이춘화(☎ 02-2188-8835 / FAX : 2188-8819)

(@ : spring@youhnet.re.kr)

33) 이 조사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현장전문가가 스스로 응답해 회신한 내용을 들고 연구진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지는 이메일조사에서 사용된 조사지이다.

※ 문항 중에서 귀하의 소속기관에 해당사항이 있는 질문에만 응답하시고, 응답 칸이 좁을 경우에는 늘려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네모 안의 설명을 읽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의

-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청소년의 가출·비행을 예방하고 가출·비행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는 이러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

질문문항	답변내용
소속기관명	
재직 기간	()년 ()개월
담당 업무	
직 책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세

2. 다음 질문은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시설이나 단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개관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기초사항	1-1. 기관의 운영목표	
	1-2. 설립연도	
	1-3. 인가여부	

	1-4. 감독관청	
	1-5. 위탁단체명	
	1-6. 위탁단체와의 협력정도 및 세부 협력내용	
	1-7. 전체업무 중 보호업무 비중	()%
2. 시설	2-1. 위치(주소, 전철역 등)	·주소 : ·전철 : ()호선 도보()분소요
	2-2. 건물성격	·주택 : ①소유 ②임대 ·상가 : ①소유 ②임대
	2-3. 주변환경(상업지역 등)	
	2-4. 평수/시설구성(상담실 등)	
	2-5. 설비(교육기자재 등)	
3. 인력	3-1. 조직구성과 각 구성원수	
	3-2. 전임직원수와 담당업무	
	3-3. 파트타임직원수와 담당업무	
	3-4. 자원봉사자수와 담당업무	
	3-5. 자격증소유 직원수와 자격종류	
4. 예산	4-1. 예산지원기관	
	4-2. 예산총액과 사용처별 금액 (인건비:운영비:사업비)	
	4-3. 지원예산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부족 ②부족 ③보통 ④충분 ⑤매우충분 → 부족한 경우 그 이유 :
	4-4. 향후 재원확충방안	
	4-5. 수익사업 여부/내용/금액	
5. 대상 청소년	5-1. 정원/현원	
	5-2. 성별/연령범위/평균연령	
	5-3. 보호기간	
	5-4. 대상자 특성	
	5-5. 대상자 확보방법 (아웃리치, 유관기관 위탁 등)	
	5-6. 중간탈락율(연평균)	
	5-7. 대상자 신분(학생 등)	

2) 사업내용(질문문항에 관한 전년도 사업실적을 직접 적어주시거나 자료 별첨)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가출·비행 청소년 수용보호 서비스	1-1. 수용보호	
	1-2. 육체적·정신적 치료	
	1-3. 직업훈련·자립지원 등 재활	
	1-4. 상담 서비스	
	1-5. 교육·활동 프로그램 실시	
	1-6.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	
	1-7. 퇴소 후 전환 서비스	
2. 비행 예방사업	2-1. 비행예방/유해환경 캠페인	
	2-2.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2-3. 유해매체 감시·고발	
	2-4. 유해업소/지역 감시·고발	
	2-5. 유해약물/물건 감시·고발	
	2-6. 유해행위 감시·고발	
3. 홍보·협력 활동	3-1. 시설홍보	
	3-2. 청소년 아웃리치 서비스	
	3-3. 유관기관 청소년 의뢰	
	3-4.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3-5. 유관기관과 공동사업	
	3-6. 전문가 자문·협력	
4. 프로그램 개발·평가	4-1.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4-2.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5.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	5-1. 상담 서비스	
	5-2. 교육·활동 프로그램 실시	
6. 기타 사업		

3) 귀하가 속해 있는 시설이나 단체는 현재 청소년보호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청소년보호 시설이나 단체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 또는 현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관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기초사항	1-1. 인가의 필수성 여부	
	1-2. 가장 적합한 감독관칭	
2. 시설	2-1.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2-2. 보호를 위한 적합한 주변환경	
	2-3. 적절한 시설	
	2-4. 꼭 필요한 시설구성과 설비	
3. 인력	3-1.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3-2. 적절한 직원수와 업무	
	3-3.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4. 예산	4-1. 적절한 최소예산	
	4-2. 시설청소년 1인당 1일 소요액	
	4-3. 전문가확보 위한 최소 인건비	
5. 대상청소년	5-1. 적절한 수용인원	
	5-2. 대상자 유형구분 필요성 (성별/연령/문제유형 등)	
	5-3. 적절한 보호기간	
	5-5. 대상자 확보방법 (아웃리치, 유관기관 위탁 등)	
	5-6. 중간탈락 방지방안	

2) 사업내용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가출·비행 청소년 수용보호 서비스	1-1. 수용보호	
	1-2. 육체적·정신적 치료	
	1-3. 직업훈련·자립지원 등 재활	
	1-4. 상담	
	1-5. 비행예방등 교육프로그램	
	1-6. 사회복귀 프로그램	
	1-7. 퇴소 후 전환 서비스	
	1-8.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서비스/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2. 비행 예방사업	2-1. 비행예방/유해환경 캠페인	
	2-2.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2-3. 유해매체 감시·고발	
	2-4. 유해업소/지역 감시·고발	
	2-5. 유해약물/물건 감시·고발	
	2-6. 유해행위 감시·고발	
	2-7.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활동/ 추가되어야 할 활동	
3. 홍보·협력 활동	3-1. 시설홍보	
	3-2. 청소년 아웃리치 서비스	
	3-3. 유관기관 청소년 의뢰	
	3-4.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3-5. 유관기관과 공동사업	
	3-6. 전문가 자문·협력	
	3-7.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사업/ 추가되어야 할 사업	
4. 프로그램 개발·평가	4-1.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4-2.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4-3.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활동/ 추가되어야 할 활동	

5. 일반청소년 대상 서비스	5-1. 상담 서비스	
	5-2. 교육·활동 프로그램 실시	
	5-3.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서비스/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5. 종합의견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분야/ 추가되어야 할 분야	

4. 다음은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모안의 설명을 읽고 다음 각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나누어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청소년복지시설이 되고,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보호시설이 됩니다.

질문문항	의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 청소년기본법의 구분에 따라 청소년 시설과 단체는 청소년활동 시설·단체, 청소년복지 시설·단체,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6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2.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쉼터와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같은 유형의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3. 개별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는 활동, 복지, 보호 업무 중 한가지만을 전담하는 것이 좋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4.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는 그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5. 개별 청소년보호 시설이나 단체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성화, 전문화해야 한다(예 : 약물치료시설, 폭력치료시설, 학교부적응치료시설 등)	① 동의	
	② 동의안함	
6.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 상담, 구조, 치료, 자활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one-stop care service가 필요하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7.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나 단체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중앙기구로서의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사회 센터가 있어야 한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8. 현장에서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요구가 높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9. 청소년보호시설은 그 성격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묶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10. 청소년단체는 보호를 전담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보호업무와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① 동의	
	② 동의안함	

- 1)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단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시설은 청소년 수용 중심, 단체는 사업·프로그램 중심

 - 2)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과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모색을 위한 귀하의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연구진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모색을 위한 청소년 면접조사

1.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질문

청소년	연령	가정환경	가출경험	문제행동경험	현재상태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2. 현재 시설에 오게 된 경로 : 알게 된 방법, 생활하게 된 과정

3. 현재 시설의 장단점 :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여부

4. 유관 시설 경험 : 경험 여부와 차이점, 장단점

5. 청소년보호 시설이 청소년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 또는 현

재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관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시설	1-1.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1-2. 보호를 위한 적합한 주변환경	
	1-3. 적절한 시설	
	1-4. 꼭 필요한 시설구성과 설비	
2. 인력	2-1.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2-2. 적절한 직원수와 업무	
	2-3.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3. 대상 청소년	3-1. 적절한 수용인원	
	3-2. 대상자 유형구분 필요성 (성별/연령/문제유형 등)	
	3-3. 적절한 보호기간	
	3-5. 대상자 확보방법 (아웃리치, 유관기관 위탁 등)	
	3-6. 중간탈락 방지방안	

2) 사업내용

구분	질문문항	답변내용
1. 청소년 생활보호 서비스	1-1. 생활보호 서비스	
	1-2. 육체적·정신적 치료	
	1-3. 직업훈련·자립지원 등 재할	
	1-4. 상담	
	1-5. 교육·활동 프로그램	
	1-6. 사회복귀 프로그램	
	1-7. 퇴소 후 전환 서비스	

	1-8.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서비스/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2. 홍보·협 력 활동	2-1. 시설홍보	
	2-2. 청소년 아웃리치 서비스	
	2-3. 유관기관 청소년 의뢰	
	2-7. 이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사업/ 추가되어야 할 사업	
3. 종합의견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분야/ 추가되어야 할 분야	

6. **중앙기구로서의 지역사회센터** :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나 단체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중앙기구로서의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사회 센터에 관한 의견
7. **지역사회와의 관계** :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계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방안
8.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시설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김영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 소장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문성호 중앙대학교 · 교수
박금혜 서울YMCA청소년쉼터 · 실장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센터장
조아미 명지대학교 · 교수

◆ 자 문 진 ◆

강경래 일본비교법연구소 · 촉탁연구원
김진화 동의대학교 · 교수

◆ 면접조사원 ◆

육지혜 명지대학교 · 학부생
이수경 경기대학교 · 박사과정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홍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해영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운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운숙 · 권기창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운숙 · 이수진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운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행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혜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홍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1

청소년보호 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73-7(93330)

청소년보호 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방은령 (한서대학교 · 교수)

윤옥경 (경기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정은경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들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해환경 규제나 청소년비행·아동학대 예방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정책의 실천적 장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가 사회 환경과 정책 방향의 변화에 부응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에 관한 법률과 현황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연구의 주제어인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보호 시설, 청소년보호단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유형과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전체적인 실태와 기관 유형·성격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유형에 따라 분석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현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으로부터 바람직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청소년보호 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청소년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관련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조사연구로서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먼저 사례조사로서 국내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과 직접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은 의견조사로서 바람직한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종류를 제한한 점이다. 청소년보호 시설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대상 시설·단체와 조사대상자의 수가 소수로 제한된 점이다. 면접조사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많은 시설·단체와 전문가, 청소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II.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제반 현황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시설 관련 법률과 청소년보호단체 관련 법률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청소년보호시설 관련 법률로는 청소년시설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보고, 대표적 청소년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보호시설, 그룹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청소년 전용 보호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포함하는 시설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단체 관련 법률 역시 청소년단체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본 후에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을 분석했다.

2.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현황

청소년보호시설의 현황으로는 47개의 청소년쉼터와 5개의 드롭인(drop-in) 센터, 17개의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2백개의 그룹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내용은 보호성별, 보호연령, 대상청소년과 직원의 인원수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 시설에 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였다. 청소년보호단체의 현황으로는 283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지역분석, 감시단원의 수, 활동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3.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

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로서 카사청소년쉼터, 시티하우스, 여성청소년개발센터, 허클베리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보호협회 등을 소개하였고, 캐나다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로서 데야스, 페이스, 플리, 피어 등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로서 소년지원센터, 소년보호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 BBS연맹, 갱생보호여성회, 전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소개하였다.

Ⅲ. 청소년보호시설·단체의 사례분석

1. 조사방법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 시설과 단체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현황 뿐 아니라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심층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다. 조사대상 현장전문가는 20명이고, 청소년은 10명이다.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현황과 개선방안

첫째, 청소년보호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은 충실도 면에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방 1개 당 밀도가 높거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점은 여러 시설의 담당자나 청소년들에게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 10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10개 시설 중 7개는 여성청소년 전용시설, 2개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공용시설이며, 남성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단 1개에 그치고 있다.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성비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들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생긴다.

셋째, 청소년보호 시설들의 활동실적을 알아 본 결과, 수용보호하면서 생활지도의 맥락에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예상보다 적었다.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들도 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여행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것들이 많았다. 시설들의 여러 차원의 역량으로 볼 때 전문적 프로그램을 일일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쉼터나 성매매지원시설, 그리고 그룹홈 등은 수용보호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면서,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협의체나 중앙센터 등에서 함께 모여 시행하던지, 아니면 중앙센터나 지역협의체에서 전문가가 순회파견이 되어 시설마다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10개의 시설 중 예산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1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인가를 받고 있고,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운영이 아주 어려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단체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시설은 수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체에서는 집합적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한다면 시설들이 자체 내 프로그램 부재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시설과 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요청된다고 하겠다.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현황과 개선방안

첫째, 청소년보호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보면,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소한 갖추고 있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대개 소속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해환경감시단의 규모와 인적 물적 여건이 달랐으며, 센터의 경우는 중앙부서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자원을 갖고 있었다. 보호단체의 경우 청소년들을 수용 보호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시설 부담이 없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은 작은 규모의 공간과 시설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센터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대할 때 때로는 일시적인 시설보호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시설과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호단체의 보호업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모두 자신들의 업무가 보호업무임을 인식하고 보호단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센터의 경우는 자신들의 사업내용이 보호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기관이 보호단체라는 인식도 낮게 갖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보호단체들의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유해환경감시단과 센터의 사업내용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종류의 기관 모두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용보호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는 비행예방사업을, 센터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주된 사업내용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보호단체는 전체예산에서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인건비의 순이며, 단체 운영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단체들이 사업비는 지자체나 중앙부서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열악하여 실무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호단체들은 비교적 지역사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력체계는 보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요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끼리의 수평적 협력체계, 중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일원적 협력체계, 보호사업에 관여하는 성격이 다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학교와의 연계, 지역사회주민과의 연계, 전문가 집단 및 사법체계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보호업무를 수행되게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활동에 대한 의견에서 현장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보호활동과 복지활동의 개념적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청소년보호업무를 논하면서 이런 개념상의 구별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적으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업무는 개념상으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활동과 복지와 보호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단체의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와 복지를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체계를 다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보호시설과 보호단체를 구별하는 것과 특별한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는 특화되어야한다는 의견 등에 대부분 동의함으로써 행정체계는 일원화하되 그 안에서 역할 구분은 전문적으로 구별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 속에는 개념상의 정의나 제도상의 분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IV.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청소년보호시설이라는 용어는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시설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의 수준으로 법적인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중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에게 낙인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장기보호가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상의 보호시설 중 청소년시설을 분리·설치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

터와 청소년재활센터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시설 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중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의 노력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없애고 지역단위에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앙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보호시설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규정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 시설·단체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할 보호단체 협의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단체는 지속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벤트성 보호활동과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병행하여, 홍보와 참여효과를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보호활동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활동에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보호단체에서 종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단체는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호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호

단체 종사자들의 보호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지원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 보호단체와 지역사회 행정체계간의 협력을 중개하는 전문창구가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보호관련 업무 유관기관들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청소년보호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4. 연구의 제한점	8
II.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제반 현황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11
1) 개관	11
2) 청소년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12
3) 청소년보호단체에 관한 법률	23
2.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현황	25
1)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25
2) 청소년보호단체 현황	37
3. 외국의 청소년보호 시설·단체 사례	52
1) 미국	52
2) 캐나다	78
3) 일본	93
III.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사례분석	
1. 조사방법	113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현황과 개선방안	117
1)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현황	117
2) 청소년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3) 종합평가와 시사점	156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현황과 개선방안	159
1)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현황	159

2) 청소년보호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9
3) 종합평가와 시사점	192
4.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과 협력	195
1) 청소년보호시설 현장전문가 의견분석	195
2) 청소년보호단체 현장전문가 의견분석	208
3) 종합평가와 시사점	224
IV.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1.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29
2. 청소년보호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234
3.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240
V. 결 론	
1. 주요결과	253
2. 정책제언	257
참고문헌	259
부 록	265

표 목차

<표 II-1> 청소년쉼터 시설현황	27
<표 II-2> 청소년쉼터 보호청소년 · 직원수	28
<표 II-3> 청소년쉼터 보호연령	28
<표 II-4> 드롭인센터 시설현황	30
<표 II-5> 드롭인센터 성별 · 연령 · 직원수	31
<표 II-6>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현황	33
<표 II-7>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보호청소년 · 직원수	33
<표 II-8>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 보호연령	34
<표 II-9> 그룹홈 시설현황	35
<표 II-10> 그룹홈 보호청소년 · 직원수	36
<표 II-11> 그룹홈 보호연령	36
<표 II-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수	44
<표 II-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수	44
<표 II-1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횟수	47
<표 II-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신고고발건수	48
<표 II-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횟수	48
<표 II-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홍보인원	49
<표 II-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횟수	49
<표 II-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교육인원	50
<표 II-2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모니터횟수	50
<표 III-1>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	115
<표 III-2> 조사대상 보호시설 청소년의 특성	116
<표 III-3> 조사대상 보호시설의 특성	125
<표 III-4> 유관기관 협력사례	147
<부록표 1> 청소년쉼터시설별 현황	267
<부록표 2> 드롭인센터별 현황	269
<부록표 3>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지원시설별 현황	269

<부록표 4> 그룹홈시설별 현황271
<부록표 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별 현황280